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

2010. 12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 복 희

목차

요 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선행연구	17
5. 연구의 범주 및 제한점	22
II.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관련 법·제도와 정책	23
1.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23
2.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정책	33
3. 다문화정책 주요 전달체계	49
III. 외국 사례	55
1. 프랑스	55
2. 독일	58
3. 스웨덴	61
4. 캐나다	64
5. 미국	68
6. 호주	70
7. 일본	73
8. 요약 및 정책시사점	75

IV.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77
1.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	77
2. 영유아 자녀 발달·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85
3. 취학아동 발달·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106
4. 중도입국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116
5. 정책시사점	123
V.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126
1. 다문화가족센터의 사업 개요	126
2. 영유아 관련 사업 실태와 요구	130
3. 취학아동 관련 사업 실태와 요구	141
4. 중도입국자녀 관련 사업 실태와 요구	145
5. 정책시사점	152
VI. 정책방안	154
1. 기본 고려 사항	154
2. 자녀 지원 정책방안	154
3. 부모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163
4. 맺는말	166
참고 문헌	168
부록	17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 설문지	175

표목차

〈표 I-3- 1〉 면접 대상자 특성	14
〈표 I-3- 2〉 면접 질문 내용: 공통 질문	15
〈표 I-3- 3〉 면접 질문 내용: 중도입국자녀	16
〈표 I-3- 4〉 간담회 내용	16
〈표 II-2- 1〉 제1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33
〈표 II-2- 2〉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35
〈표 II-2- 3〉 다문화가족 종합적 생활환경 사업	37
〈표 II-2- 4〉 결혼이민자 모의 한국어·한국 이해 지원	38
〈표 II-2- 5〉 시·도별 지자체 사업 중 부모 지원 사업내용	39
〈표 II-2- 6〉 결혼이민자 모의 부모역할 지원	40
〈표 II-2- 7〉 결혼이민자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41
〈표 II-2- 8〉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지원 사업	41
〈표 II-2- 9〉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42
〈표 II-2-10〉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43
〈표 II-2-11〉 다문화가족 유아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44
〈표 II-2-12〉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사업내용	45
〈표 II-2-13〉 지방정부 보육특별사업 중 다문화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45
〈표 II-2-14〉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학력 지원	46
〈표 II-2-15〉 지방정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지원 사업	46
〈표 II-2-16〉 지방정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수련활동 지원 사업	47
〈표 II-2-17〉 결혼이민자 가정 중도입국자녀 학습 지원 사업	48
〈표 II-2-18〉 '다문화가족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48
〈표 II-3- 1〉 무지개 청소년센터 주요사업: 2010	50
〈표 II-3- 2〉 이주여성인권센터 주요 활동	52
〈표 II-3- 3〉 이주민과 함께 주요 활동	53
〈표 II-3- 4〉 국경 없는 마을 주요 활동	53
〈표 II-3- 5〉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주요 활동	54
〈표 IV-1- 1〉 다문화가족의 자녀수 : 2010년 1월 기준	77

〈표 IV-1- 2〉 결혼이민자 자녀수 추계	78
〈표 IV-1- 3〉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2009	79
〈표 IV-1-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자 성 및 출신국 분포: 2009	80
〈표 IV-1- 5〉 시·도별 중도입국자녀 분포: 2009	81
〈표 IV-1- 6〉 시·도 및 결혼이민자 성별 중도입국자녀 연령 분포: 2009	82
〈표 IV-1- 7〉 출신국별 및 성별 중도입국자녀의 연령 분포: 2009	83
〈표 III-1-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파악한 중도입국 지역별 자녀수	84
〈표 III-1- 9〉 연령 특성별 센터가 파악한 중도입국자녀 규모 분포	85
〈표 IV-2- 1〉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89
〈표 IV-2- 2〉 결혼이민자 연령 및 학력별 기관 미이용 영유아 돌보는 사람	91
〈표 IV-2- 3〉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현황	92
〈표 IV-2- 4〉 지역 및 설립주체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93
〈표 IV-2- 5〉 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 현황	94
〈표 IV-2- 6〉 시·도별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 현황	95
〈표 IV-2- 7〉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이유	95
〈표 IV-2- 8〉 제 특성별 미취학 자녀 기관 미이용 이유	97
〈표 IV-2- 9〉 보육·교육 비용 및 지원 현황	98
〈표 IV-2-10〉 정부 보육료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99
〈표 IV-2-11〉 정부 지원정책 인지도	99
〈표 IV-2-12〉 양육수당 지급시 기관이용 여부	99
〈표 IV-2-13〉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	100
〈표 IV-2-14〉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	101
〈표 IV-2-15〉 다문화가족 특성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한 정도	102
〈표 IV-2-16〉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	103
〈표 IV-2-17〉 다문화가족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04
〈표 IV-3- 1〉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인원 및 전년 대비 증감	108
〈표 IV-3- 2〉 취학 자녀 부모 출신국 분포	109
〈표 IV-3- 3〉 결혼이민자 자녀의 미취학률 및 취학률	109
〈표 IV-3- 4〉 방과후 초등학생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111
〈표 IV-3- 5〉 결혼이민자 제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	113
〈표 IV-3- 6〉 결혼이민자 제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	114

〈표 IV-3- 7〉 다문화가족 제 특성별 자녀 학습지원 필요성 정도	115
〈표 V-1-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2010	126
〈표 V-1-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예산: 2010	128
〈표 V-1-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	128
〈표 V-1-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129
〈표 V-1- 5〉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창구	129
〈표 V-1-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사 소지 자격 및 배경	130
〈표 V-2-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대상별 사업 실시 여부	131
〈표 V-2-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아 대상 사업 내역 및 장소	131
〈표 V-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 대상 사업 내용 및 장소	132
〈표 V-2- 4〉 영아 대상 프로그램 실시 횟수	133
〈표 V-2- 5〉 영아 대상 프로그램 1회당 시간	134
〈표 V-2- 6〉 유아 대상 프로그램 실시 횟수	134
〈표 V-2- 7〉 유아 대상 프로그램 1회당 시간	135
〈표 V-2- 8〉 유치원 연계 프로그램	136
〈표 V-2- 9〉 보육시설 연계 프로그램	136
〈표 V-2-10〉 영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137
〈표 V-2-11〉 지역별 영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138
〈표 V-2-12〉 유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138
〈표 V-2-13〉 지역별 유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139
〈표 V-2-14〉 부모대상 양육지원 관련 사업 우선순위	139
〈표 V-2-15〉 지역별 부모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140
〈표 V-2-16〉 보육시설·유치원 대상 사업 우선순위	141
〈표 V-2-17〉 지역별 보육시설·유치원 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141
〈표 V-3- 1〉 지역별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 실시여부	142
〈표 V-3- 2〉 초등학생 대상 사업 내용 및 장소	142
〈표 V-3- 3〉 지역별 초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실시 횟수	143
〈표 V-3- 4〉 초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1회당 시간	143
〈표 V-3- 5〉 초등학생 연계 프로그램 현황	144
〈표 V-4- 1〉 지역별 중도입국자녀 대상 지원 사업 실시여부	145
〈표 V-4- 2〉 중도입국자녀 연계 사업 내용 및 기관	146

〈표 V-43〉 중도입국자녀 연계 사업 관리 현황	147
〈표 V-44〉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방법	148
〈표 V-45〉 학령기 재학 중도입국자녀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방법	149
〈표 V-46〉 비재학 중도입국자녀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방법	151

요 약

1. 서론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의 양육실태와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 기구·단체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분석함.
 - 외국의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의 양육, 양육 지원 수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양육 및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사업 관련 요구도를 파악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양육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세부 지원 사업 방안을 모색함.

3. 연구방법

-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 논문, 정책보고서, 부처 및 기관 사이트 웹 문서 등을 수집, 분석하였음.

- ☐ 전국 17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영유아 지원사업 실태 및 요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 ☐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총 24가정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 관계기관 담당자와 총 5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아동의 적응 및 문제,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 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 담당자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과 통합적 지원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II.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관련 법·제도와 정책

- ☐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검토
 - 관련법으로 헌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 관련법을 검토하였음.
 - 관련 국제협약으로 아동권리협약(1991 비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검토함.
-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정책
 -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살펴보았음.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0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안 중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 생활환경개선, 부모에 대한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 다문화정책 주요 전달체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민간단체 사업을 검토함.

III. 외국사례 요약 및 시사점

- 외국의 전반적 다문화 정책의 추진과 전달체계,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유입, 취업, 국적, 교육 및 복지의 권리,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 관련 법 기반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담당부처간의 구분과 역할분담이 요구되며, 필요시 해당위원회의 발족도 요구됨. 중장기적으로는 이주 및 다문화가족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전달체계 필요성이 제기됨.
 - 단기적으로는 입국 순간부터 일정기간동안 초기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는 통합지원프로그램 패키지 구성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음.
 -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일정 시간 이상의 한국어강좌를 제공한 후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안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정착,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취업과 근로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OECD 국가들과 같이 다문화가족 부모의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됨.
 - 다문화교사 및 다문화아동대상 사업 인력에 이주민들의 참여와 근로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와 같은 전국 및 지역단위 거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인 보상교육과 사회적 지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IV.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와 요구 시사점

- 결혼이민자 증가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은 현재는 상당수가 영유아기에 있으나 앞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들어갈게 됨.

- 결혼이민자자녀는 2015년에는 200,942명, 2020년에는 302,69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 다문화가족 자녀는 영유아, 초등학생 모두 국내 자녀와 비교하여 인지,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가 이들 대상의 정책을 강화하여야 하는 배경을 제공함.
- 자녀 양육에 가족과 아울러 이웃이나 결혼이민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시댁 식구가 48.1%, 이웃이라는 응답이 33.3%로 높게 나타났음.
- 영유아 사교육 이용이 일반아동보다 낮아서 이러한 교육수혜의 격차가 취학 전 학력의 차이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교육서비스 이용권등 부가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과정의 특화와 함께 맞춤형 개인교육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시기부터 언어 교육 지원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 초등학생의 학업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어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임.
-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양육비 지출의 가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임.
 -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원비 마련이 27.4%로 가장 높음.
- 일반 아동에 비하여 학원 등 사교육 비율은 13% 수준으로 낮은 편이므로 공부방 등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이 필요함.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에 혼자 지낸다는 아동이 14.0%이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13.3%임.
 -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은 학원비 다음으로 예습·복습지도, 숙제지도 등이며,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도 기초교과지도, 학교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등임.
- 중도입국자녀는 연령대가 다양한데, 특히 한국어와 학업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취학연령 자녀들의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을 힘들어 하였음. 그러나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V.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검토 시사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산만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은 정규사업에 포함하는 곳이 10%에 지나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보다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센터는 과반수에 못 미침.
- 아동 연령별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제시한 우선적으로 추진할 영아관련 사업은 신체 및 건강관리, 정서발달, 언어발달 지원의 순이었음.
 - 유아대상 사업은 언어발달 지원이 3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한국어 교육의 순이었음.
 -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학습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공부방·챗프 등 방학기간 활동, 방문교육 순임.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요구는 학습지원, 언어 교육, 직업교육,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하여, 센터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었음.
- 전문기관의 운영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대안학교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중도입국 자녀 전문 지원센터로 운영, 제도권 학교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 다문화청소년센터 및 다문화청소년 쉼터의 운영 필요성 등임.

VI. 정책방안

1. 기본 고려 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아동 연령별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함.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나 가장 요구가 많은 사업은 아동연령별로 차이가 나므로 이에 맞는 적절한 인력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산만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2. 자녀 지원 정책방안

가. 영유아 지원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 영유아 발달 단계별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강화함. 언어 이외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을 모두 검사하여 정상 범주내 발달인가를 파악, 적절하게 대응함.
 - 발달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은 센터와 아동 중심의 파견 방문사업으로 이루어

지도록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함. 전문인력 자격기준이나 교육은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결정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의 연계를 강화함.
- 영유아 대상 방문 학습지와 학습지 교사파견을 지원함.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녀와 부모의 관계 향상 및 정서 지원을 도움.

□ 기타 사업

- 다문화가족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자녀 학습력 제고의 수요가 높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과정을 특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중언어 등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맞춤형 개인교육서비스를 확대함.
- 다문화가족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여 순 보육료 이외 부가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초등학생 지원 방안

□ 초등학교 이외 정책방안

- 센터에서 초등학생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함. 이는 센터 내에서 실시하거나 방문지도로 함. 센터 내 교육은 집단교육이 될 것이나, 집단 안에서도 멘토 등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사실상 1:1 집중교육으로 실시함.
 - 한국어 교육은 센터내 교육이건 방문교육이건 교육 빈도를 확대함. 센터 내 교육은 주 4~5일 정도, 방문교육은 주 3회 정도로 현재보다는 주당 방문 횟수를 늘려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한국어 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자국어 강사가 한글을 교육하는 방법, 이중언어 교육 등의 방안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사업을 실시함. 대학생, 또래, 기관 전문가 등이 1:1로 멘토 역할을 하여 숙제지도 등을 담당하게 함. 방과 후나 주말에 센터에서 집합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도 강구함.

-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원비 마련, 예습·복습의 학습지도, 숙제지도 하기 등의 순으로 비용 문제와 학습지도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도 기초교과 지도, 학교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이 가장 비율이 높았음.
-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도 방문 학습지와 학습지 교사파견을 지원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방문인력 보다는 학습 지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파견이 효과적임.
-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학령기 아동이 있는 기관과 연계를 강화함. 특히 환경이나 여건이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과 인력 등을 파견하여 지원함.
- 멘토와 아동간의 유기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 및 관리기능을 강화함.

다. 중도입국자녀 지원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 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함. 한국어 교육은 센터 내에서 실시하거나 방문지도로 함. 센터 내 집단교육은 멘토 등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사실상 1:1 집중교육으로 실시함. 방문지도는 일반 방문지도사와는 다른 별도의 중도입국자녀 전담 인력이 담당함.
 - 한국어 교육은 센터 교육과 방문교육 모두 교육 빈도 및 시간을 확대함.
 - 한국어 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자국어 강사가 한글을 교육하는 방법, 이중언어 교육, 수준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방안, 사전 평가 등의 방안이 필요함.
- 학교에 다니는 입국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학습지원사업을 실시함. 대학생, 또래, 기관 전문가 등이 1:1로 멘토 역할을 하여 학습, 한국어 등을 배우도록 하자는 방안으로, 센터가 멘토를 적극 추진하고 관리함. 방과 후나 주말에 센터에서 집합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

구함.

- 중도입국자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라고 하여도 곧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이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활동을 실시함.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지원도 주요한 과제이므로, 멘토, 또래 동아리 모임 구성, 또래 적응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함.
- 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연계사업을 강화함. 학생 자원봉사단체, 청소년 기술교육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등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중도입국 자녀 전문 지원센터로 운영 하는 방안을 모색함. 시 단위나 센터 중 일정 아동을 규모 이상 지역센터를 사업 주체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기타 사업

- 중도입국자녀가 일정 규모 이상되는 학교 등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특별 학급을 만들어서 전반적 학습을 보충해 주는 방안을 모색함. 이때 멘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반학교 진학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중도입국자녀 전문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 이외 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 다문화청소년 쉼터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대안학교나 제도권 학교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음.
-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제도권 학교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습을 돕는 방법의 모형이 필요함. 국제학교 형태의 전문학교가 모형이 됨.

2. 부모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차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매우 광범위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별 우선순위 중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육아관련 정보제공,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정서지원의 순임. 이러한 사업은 대체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몇 가지 정책 건의를 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의 센터내 방문교육, 파견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부모의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충하도록 지원함.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여 사실상 개별 맞춤교육이 되도록 노력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육아정보 나눔터를 마련하여 어머니들이 영유아 자녀와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감.
-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가족 내 지원 강화와 친구 및 자조 모임과 같은 인적지원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동시에 이러한 오프라인 교류와 활동이 온라인상으로도 확대 되어 접촉 기회가 확대되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육아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친구 및 자조 모임과 같은 활동도 온라인상으로 확대되도록 함.
- 행사 및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참여 및 교류를 돕고 정서지원을 도모하고, 일반 부모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기관 중심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자녀 양육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월 기준, 결혼이민자는 181,671명으로 2009년 167,090명에 비해 8.7% 증가하였으며(행정안전부, 2010),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총 105,502명인데 이들의 연령 분포는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수가 68,069명으로 64.5%를 차지한다. 특히 0~2세 영아가 44,217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의 43.7%이다. 앞으로 결혼이민자가 증가가 예상되므로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고,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령기 아동수도 크게 증가될 것이므로 미래에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보면 입국초기에는 초기 사회 적응, 자녀양육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정책 중 한 부분으로서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

영유아기는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이 이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어머니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김이선·정해숙·이미화, 2009) 자녀양육을 전담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아동은 우리말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비율이 높고(서현·이승은, 2007, 전해정, 2008, 조영달, 2006), 사회성도 낮은 것으로(전해정, 2008)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발달 상태는 학업 부진이나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언어, 양육 관련 포괄적 지원 정책이 결과적으로 역량 강

화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특성별로 세분화된 정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기관 이용률이 낮은 영아의 경우 영아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이 중요하다. 유아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기관을 통하여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서 체계성이나 통일성이 부족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지원이나 기관간의 연계는 미미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초등학생 지원 역할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이전 결혼에서 출산하여 입양 형식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는 그 규모가 약 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양육 실태는 물론 분포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정도이다. 특히 이들의 연령은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의 양육 실태와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줄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의 양육실태와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지원 정책을 분석한다. 민간기구 및 단체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실태와 양육지원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 요구를 파악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중 중도입국자녀의 규모, 법적 위상 등의 실태와 자녀 양육, 양육지원 수혜, 및 자녀양육 지원 요구

를 파악한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사업 관련 요구도를 파악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양육지원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세부적 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 논문, 정책보고서, 부처 및 기관 사이트 웹 문서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나. 기관 조사

전국 17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영유아 지원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자료 수집은 관련 사이트 검색 및 행정기관 지원으로 실시하고,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 다문화가족 방문 관찰 및 면접 사례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영유아 부모 12명, 초등학생 부모 5명, 중도입국자녀 부모 7명 등 총 24가정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중 3가정은 부모가 함께 면접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를 설문으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가정 양육 및 교육실태, 어려움, 지원 요구 등으로 기존의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표 I-3-2 참조).

면담지역은 임의로 서울, 경기도 안산시, 울산, 충청남도 홍성시에서 실시하였다(표 I-3-1 참조).

〈표 1-3-1〉 면접 대상자 특성

사례	지역	연령	학력	자녀수	출신 국적	한국 국적	거주 기간	남편직업	지원 여부
영유아부모									
1	울산	31	대학 원졸	1명	중국	미취득	2년	사업	-
2	울산	29	대학 교졸	1명	중국	미취득	22 개월	영어강사	-
3	울산	28	고졸	1명	중국	미취득	2년	자영업	-
4	울산	34	중졸	1명	캄보디아	미취득	3년	택배업	받음
5	울산	25	중졸	1명	베트남	미취득	1년반	근로자 식당 종업원	-
6	서울	30	중졸	1명	중국	미취득	7년	건설근로 슈퍼직원	받음
7	서울	43	중졸	1명	태국	미취득	10년	일용직	받음
8	서울	34	고졸	2명	베트남	미취득	5년	회사원	받음
9	서울	30	중졸	2명	베트남	미취득	5년	신문배달	받음
10	경기	33	대졸	1명	우즈베키스탄	미취득	4년	세탁업	-
11	경기	36	고졸	2명	우즈베키스탄	미취득	5년		
12	경기	30	고졸	1명	중국	취득	6년		
초등학생 부모									
13	울산	36	고졸	2명	필리핀	취득	8년	회사원	-
14	울산	47	대졸	2명	필리핀	취득	10년	회사원	-
15	울산	40	고졸	3명	몽골	취득	9년	택배직원	-
16	경기	33	대졸	3명	필리핀	취득	10년	주유소 직원	받음
17	경기	28	고졸	1명	몽골	취득	6년	크레인 기사	-
중도입국자녀부모									
18	울산	32	고졸	2명(9살)	중국	미취득	1년	회사 (통신부품)	받음
19	울산	45	중졸	2명(16살, 13살)	베트남	미취득	3년	결혼중개, 도장가게	받음
20	충남	50	초졸	3명(5살, 3살)	한국	-		양봉업	
		25	중졸	3명(5살, 3살)	필리핀	미취득	2년	주부	받음
21	충남	51	고졸	3명(15세)	한국	-		일용직	
		39	중졸	3명(15세)	중국	미취득	3년	주부	
22	경기	43	대졸	3명(18세)	중국	미취득	3년 6개월	일용직	
23	경기	35	초졸	2명(15세)	중국	미취득	2년	자영업	
24	경기	39	중졸	2명(16세)	중국	미취득	3년	자영업	

주: 중도입국자녀 부모의 자녀수는 총자녀수를 의미하고, ()는 중도입국자녀 연령을 의미함.

〈표 1-3-2〉 면접 질문 내용: 공통 질문

항목	내용
자녀특성	- 자녀 성별,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 또래에 비하여 자녀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 상태는 어떠합니까? - 또래에 비하여 자녀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합니까?
자녀와 남편관계	- 남편과 자녀와의 친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남편이 양육비 부담, 자녀교육 등 아버지로서 역할은 잘하고 계십니까?
자녀와 본인관계	- 본인과 자녀와의 애착이나 친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자녀 학습지도나 정서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계십니까? - 자녀와 대화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기관이용	- 현재 자녀는 육아지원기관(학교)를 다닌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자녀를 육아지원기관(학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가 육아지원기관(학교)에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교사와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자녀가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자녀의 특별상황에 대해 기관(학교) 차원에서 배려나 지원이 있습니까? - 자녀의 인지발달이나 학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지원기관(학교) 이용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점, 부족한 점, 또는 육아지원 기관(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기관 미이용	- 육아지원기관(학교)에 안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교 이외에 교육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낮 동안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이며, (비재학의 경우)주로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자녀양육	- 자녀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현재 자녀 양육방식에 혼란은 없습니까? 앞으로 선호하는 자녀 양육방식은 어느나라 방식을 따르실 생각입니까? - 자녀양육방식 차이로 인해 부부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문제였습니까? - 향후 자녀를 어디에서 교육시키고, 또 살게 하실 생각입니까? -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어디)입니까?
바라는 점	- 배우자나 한국인 친인척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 1-3-3〉 면접 질문 내용: 중도입국자녀

항목	내용
전 결혼 관련 사항	- 본국에서 결혼, 출산, 이혼 시기, 이혼 배경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전 남편과 연락, 자녀 만나기, 양육비 지원 등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자녀입국 과정	- 결혼 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입양을 결정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자녀를 입양할 때 친인척 등 주변에서 쉽게 동의하였습니까? - 결혼 후 자녀를 데려오기까지 자녀를 누가 어떻게,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양육하였는지요? - 입국하기 전에 한국생활을 위한 준비가 있었습니까? - 자녀 최초 입국시 몇 살이고, 한국에 지낸지는 어느 정도 입니까?
입국 후 및 일상	- 자녀가 입국 후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자녀가 입국 후 한국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성과는 좋았는지 등 말씀해 주세요. -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녀와 한국인 친척 관계	- 한국인 친인척들은 자녀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나요? - 배우자 가족과 자녀와의 사이는 좋은가요? - 갈등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국인 자녀 관계	- 한국인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와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한국인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구체적인 갈등내용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라. 관계자 간담회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 아동 재원 어린이집 원장, 다문화 공부방 담당자와 총 5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아동의 적응 및 문제,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3-4〉 간담회 내용

대상	간담회 내용
무지개 청소년 센터	중도입국자녀 현황 및 관련 프로그램
다문화 공부방 담당자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학생 학교 적응 및 문제점
홍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요구
울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아동 재원 어린이집 원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 및 문제점

마. 자문회의

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 담당자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과 통합적 지원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4. 선행연구

국내에서 2005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일반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며,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중심인 연구는 없으며, 다만 연구의 일부 결과에서 영유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일반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발달, 부모의 자녀 양육 가치관 및 실태 등 보다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가. 정책연구

정책연구는 다문화가족 전반에 관한 연구, 교육에 관한 연구, 자녀양육 및 아동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정책연구는 대부분 정부 부처 지원으로 추진되었다.

1) 다문화가족 전반에 관한 연구

설동훈(2005)은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내용은 주로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와 이용하는 보육시설, 양육 시 느끼는 어려운 점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다문화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가정 내 다양한 문화·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구축, 여성이민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마련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설동훈 등(2006)은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생활실태, 사회문화적 기본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첫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지원, 둘째,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 정립을 위해 한국과 송출국 정

부의 단속 및 국제결혼중개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 셋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과 학교 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넷째,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통합 모델 구축, 다섯째, 결혼 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유경 외, 2008) 연구는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차별화된 가족 단위의 복지정책방안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전문적인 교육망에서 체계적인 보육 및 교육을 받기보다는 비전문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방안으로는 부모와 자녀단위의 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문화가족의 양육비용 부담완화,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자녀양육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였다.

이삼식 등(2009)는 국제결혼이민자와 그 후손, 즉 다문화가족이 향후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그리고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구자질은 물론 사회통합성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가와 사회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학교교육 등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설동훈 등(2009)는 보건복지가족부 수탁과제로 2020년까지의 국가별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자녀의 수를 추정하고 편익분석 등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성법을 사용하여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 수가 35만명에 달하고 자녀수도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다문화가족 추계를 제시하였다

2) 교육관련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수탁과제로 조영달(2006)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미국,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소외계층 지원책을 비교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 가정 자녀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교사들의 교원 연수 및 장학지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재분 외, 2008)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초등학생 교육 실태를 제시하고, 정책방안으로 학생의 측면에서 제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하여야 하고,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와 이들의 자녀교육지원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교도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다문화교육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 나아가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재분 등(2009)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요구분석 및 대응방안 탐색'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한국어능력, 자녀양육지도능력, 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파악하고 각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영달 등(2009)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탁과제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교육의 어려움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 중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교육과 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자녀 양육 및 보육관련 연구

이순형 등(2006)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정책으로 산모도우미 파견, 출신국 언어로 된 자녀양육 매뉴얼 제공,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자녀공부방, 학습도우미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교과과정 개발, 교사 대상 다문화 교육 실시 등을 강조하였다.

전혜정 등(2008)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 상태를 파악하여 성장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생태체계 복지모델을 적용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환경 지원, 둘째, 다문화가족 어머니, 지역주민, 교사,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셋째,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부처와의 협력 작업을 통한 지원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양육도움 지침서를 가정에 배부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김이선 등(2009)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로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대상에 따른 세부적 접근의 강화, 사전 준비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모델 개발, 출신언어 사용을 통한 부모역할 수행 지원,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계, 아버지의 참여 확보를 제안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양계민 등, 2009)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다문화정책 단기, 중기, 장기 방향성 수립 및 부처 간 연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체계화된 지원방식 도입, 다문화교육 콘텐츠 집대성 및 축적된 자료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 등이다.

나. 일반연구

일반연구들은 소수의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관찰연구 및 주로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들로, 크게 가정과 기관 중심의 연구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중심 연구

서현·이승은(2007)의 연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유아가 경험하는 교육적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다문화가족 유아 15명 와 외국인 어머니 15명, 한국인 아버지 15명, 한국인 조부모 15명, 유아교사 15명과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하였다. 그 결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유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또래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표출을 회피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임진숙(2008)은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유아와 어머니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하여, 어머니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와 의사소통 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태도가 좀 더 자율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는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진숙(2007)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취학 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영아들의 주 양육자, 보육시설 입소 연령, 자녀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 등 전반적인 양육실태를 파악하였다.

한편, 박경자·김송이(2007)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 표상과 자아지각,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유아 60명과 일반가정 유아 9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남아가 교실 내에서 위축된 경향을 보였으나 나머지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정서

적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육아지원기관 중심 연구

육아지원기관 중심의 연구로 윤갑정·고은경(2006)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육아지원 기관에서 사회적 적응양상과 일반가정 아동, 교사들의 반응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의한 차이점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변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김희태·권영덕(2007)은 일반가정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문화가족 아동 1명을 6개월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한국어로 의사표현이 서투르며 일반아동과의 관계에 적응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고 친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수연(2007)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아동 2명을 관찰하고, 교사와 인근지역 다문화가족 아동 담당 교사를 면담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적 발달은 일반가정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놀이나 또래 관계에서 다문화가족배경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교사들 인식은 다문화가족 아동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관심과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김경숙 등(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시각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의 특성과 다문화가족과 기관간의 연계형태 및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어머니들의 유치원 활동 참여정도, 의사소통 수월성, 다문화가족 자녀 지도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교사에 대한 연구로는 지성애 등(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경험 여부, 이해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문화교육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한석실(2007)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수행해야 할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미국의 다문화 교사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사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5. 연구의 범주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영유아, 초등학교 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 전체를 연구 범주로 설정하고,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범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연구 대상의 포괄성과 내용의 구체성이다. 영유아, 초등학교 학생, 중도입국자녀는 각각 연령이나 발달·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요구가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이들 모두 자녀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보고서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은 포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대상별로 구체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심층면접과 기존 조사 자료와 문헌에 의거하여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양육 부모가 당면한 문제나 지원 요구도 등을 파악하고자 한 점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시 주체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으로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대안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범주적 특성이라 하겠다.

II.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관련 법·제도와 정책

제2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 법은 일반적 지위, 교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정책은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2010년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가. 일반적 지위에 관련 법률

1) 헌법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불러오는 내용은 전문과 1980년에 신설된 제9조이다. 헌법 전문에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법규에 대하여 우리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국민에 한정하기보다는 인간의 권리로 보고 있다.

2) 국적법

국적법은 헌법 제2조 제1항1)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우리 국적법은 국적부여를 예외적인 경우로 제외하면 속인주의(혈통주의)

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²⁾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적법 체계에 의하면 외국인은 귀화절차를 거쳐야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적용 범주를 점차 확대하였다. 1997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부여 방식을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확대하여 혈통주의를 완화하였다. 또한 2004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하였다. 종전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4년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를 간이귀화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귀화절차를 완화하였다.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으로서,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는 조항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법률상 쟁점의 하나는 취업 등 경제 활동을 이유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어느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와 할 수 있다. 법률 제31조에 의하면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는 ‘외국인’기준이 체류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영주권제도를 신설하였다.

1) 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함.

2)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혈통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중동 산유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음. 한편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를 절충하는 방식, 즉 거주지주의를 취하는 국가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있음. 국적법의 이런 원칙은 이주민 통합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결혼이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005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체류 기간 2년으로 단축하여 국적법상의 간이귀화요건과 균형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3년 한도의 단기 체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귀화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제정되었다.

아동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12조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조기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어교육, 제도·문화교육, 보육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³⁾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⁴⁾

외국인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는 2003년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는 이 법률에 의하여 그 동안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수급되던 외국인고용을 ‘고용허가제’로 전환하여 3년의 취업 기간을 보장하였으며, 아울러 동 법률 제22조⁴⁾와 근로기준법 제5조⁵⁾에 의하여 국내 노동자와 같은 노동3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2003년 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경과조치로 국내에 있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정부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제도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 기간이

3) 이외 4조에서는 국가가 외국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1조에서 외국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함.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5) 근로기준법 제5조[처우균등]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0개국 출신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 확인서와 사증발급 인정서를 갖고 출국했다가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취업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체류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교육 관련법

일반적으로 이주민 2세 자녀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적과 교육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을 두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06년 6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외국인등록사실 또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서류제출을 면제하였다.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적인 배려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내렸다. 2008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 전입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까운 사람의 보증서만 있으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인 아동의 중학교 전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장이 학칙을 근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

17일 외국인 아동의 경우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중학교에 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학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중학교 전입학 절차를 없애고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여전히 학칙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는 모두 1,748명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099명으로 62.9%이고, 중학교는 446명으로 25.5%, 고등학교는 203명으로 11.6%이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재학률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한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다. 지원 관련 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제정되어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총 1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국민교육, 국어교육 및 기본소양교육, 생활정보제공,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추진,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중 아동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10조와 제14조이다.

특히 제10조는 보육과 교육으로 아동들이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또한 제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족의 유지·발전, 가족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동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이 법률의 적용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이 법률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취약보육과 입소 우선순위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동법 제26조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취약보육 영역에 포함하여 우선 실시 보육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해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입소 우선순위에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동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8가지 유형⁶⁾의 가정 자녀가 모두 보육시설 입소순위 1순위로 동 순위여서 사실상 법적 실효성은 없다.

4) 사회보장 관련법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법 등이 시행 중이다. 사회보장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급부 행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다만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구체적 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 입국 후 체류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직장 및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체류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면 건강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⁷⁾

라. 관련 국제협약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약으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1990년 비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1990년 비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4년 비준), 아동권리협약(1991 비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임.

7) 이외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도 포함됨

(1992년 기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⁸⁾ 등을 있는데, 이들 국제협약 중 아동권리협약(1991 기준)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협약

여러 국제규약 중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가치로 ①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②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 ③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④ 아동 차별금지의 원칙이라는 4대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둔다¹⁰⁾. 협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민적 권리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 특유의 시민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제7조), 국적·이름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8조).¹¹⁾

둘째, 아동은 표현의 자유(제12조, 제13조), 결사·집회의 자유(제15조), 대중매체에

8) 이 협약은 1960년 12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62년 5월 22일에 발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음.

9) 제1부(제1조~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이행 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 UN Doc. CRC/C/5(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 1(a), of the Convention.

11)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우리나라 아동권리 국가보고서는 이를 시민적 자유에 포함하였음.

대한 접근권(협약 제17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사생활의 자유(제16조)를 가진다.

셋째, 아동은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 형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제37조 가호).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체포·억류 또는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제37조 나호).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제37조 다호, 라호).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도 보호 받아야 하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¹²⁾

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아동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아동은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환경을 갖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족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은 무차별 원칙에 따라 건강과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Basic Health and Welfare)를 가진다(제24조 제1항).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26조 제1항), 그리고 취업부모의 아동은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와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18조 제3항). 모든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제27조 제1항),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특히 영양·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7조 제3항).

셋째, 아동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우선 모든 아동에게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중등교육도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학교에서 아동의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또한 학교의 교칙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합치되고 이 협

12) 아동권리위원회가 1991년에 제시한 제1차 보고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서는 소년 재판 관련 사항을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 아동권리 국가보고서는 이를 시민적 자유 및 특별보호조치에 모두 포함하여 기술하였음.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제28조 제2항), 아동교육의 목표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데 두어야 한다(제29조). 또한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넷째, 특별한 곤란상태에 처한 아동은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난민아동은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제22조 제1항), 소수자나 원주민인 아동은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제30조).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8조). 또한 특별보호조치는 경제적 착취(제32조), 마약 및 향정신적 물질의 불법적 사용(제33조), 성적 착취와 학대(제34조), 약취유인이나 아동매매 또는 거래(제35조) 및 아동복지에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제36조)로부터의 아동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다문화가족 권리보호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2003년 7월부터 발효한 국제법규로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보호규정은 이 협약이 중요한 특색이다. 원래 3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 의미가 있다. 제3부의 내용은 대체로 세계인권선언, UN인권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인력송출 국가들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업선진국가들은 불법노동자의 조장과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2.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정책

가. 기본 정책 방향

1)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변경하고 범부처적 작업을 통하여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가업을 총 망라하여 수록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공표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시행되는 매5년 단위 계획으로, 제3조와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표 II-2-1〉 제1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질 높은 사회 통합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 관리 -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외국인 인권 옹호	-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 선진적 난민 안정 지원 시스템 구축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이다. 이

러한 기본방향 하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다. 2010년 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검토하였다.

2)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표 직전인 2008년 10월에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¹³⁾ 이 대책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맥을 같이 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 사회”라는 정책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대 정책목표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다. 정책방향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체계화 가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다.

추진과제의 주요특징은,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모자녀프로그램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다양화했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양육·보육 및 성장지원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은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보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 및 전단계로 나누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자녀양육기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출산가정에서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교육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부모-자녀 간 자긍심을 향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3)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은 사실상 폐기되었음. 그러나 최초의 범부처적 대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음

소규모보육 시범지역 지정,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가 포함된다. 자녀 교육기 정책으로는 취학 전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중심으로 다문화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 등 특별활동 실시와 언어치료사를 보육시설 등에 파견하여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지원, 방과 후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 다문화 특화시설로 활용, 다문화 프로그램 보급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 역량 개발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언어별 교육강사를 양성하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이용기관에 파견 등이 포함된다. 이외 가족해체시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표 II-2-2〉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주기별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결혼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 보호 - 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 -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자녀임신·출산·양육 지원	- 임신·출산 지원 -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 -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 부모·자녀 건강관리
자녀교육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 아동 언어·학습·정서발달 지원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가족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가족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요보호아동 지원
전(全)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 사업추진체계 정비 - 대국민 다문화 인식제고

자료: 보건복지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나. 2010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사업계획

정부는 2008년 12월에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부처(기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농수산식품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10개이고 총계산은 1,174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부처의 사업 중에서 자녀 양육지원과 직접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관광체육부 등이다.

본 글에서는 2010년 중앙부처 사업계획 중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 생활환경개선, 부모에 대한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충분한 능력발휘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의사소통, 민원처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인을 위한 교통·주거 환경 및 복지·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외국인을 위한 교육환경과 문화·여가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정책이 포함된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수급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문화·여가 환경 개선 부분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문화 자료실을 조성하여 통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도서관에 전용자료실과 콘텐츠를 구비함으로써 문화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생활체육 어울림 교실과 생활체육 어울림 캠프를 운영하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등 대상으로 다문화이해를 위한 생활문화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을 기획·운영한다.

〈표 II-2-3〉 다문화가족 종합적 생활환경 사업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예산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결혼이민자 기초수급권 부여 - 긴급 복지 지원	- 수급권 178명(2009) - 긴급지원 31가(2009)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별도예산 산출곤란
문화시설의 다양성 부족 등 완화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자료실 조성 - 통합공간으로 조성 및 도서, PC 등 적정 소요 물자 지원	- 4개소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군·구	4억원
문화 관련 정보 취득 어려움해소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확대)	- 도서관에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전용자료실 설치 - 언어권별 아동서(외국도서) 구입 - 다문화가족을 위한 독서진흥 콘텐츠 개발	- 도서관 19개 지역 - 330권 구입 - 동화구연 150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국의공공도서관	10억원
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개선 (다문화가족 어울림 생활체육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생활체육 어울림교실 운영 - 생활체육 어울림캠프 운영	교실 100개소 및 캠프 시·도별 1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11억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다문화교육·전시)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등 대상 - 다문화이해를 위한 생활문화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 기획·운영 · 자녀 대상 : 나도 큐레이터	4개 과정 25회	문화체육관광부	2.37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지방정부 사업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복지·건강·보육(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에서 다문화도서관을 설치, 운영한다.

2) 부모에 대한 지원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가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전반적 역량 강화가 모두 자녀 양육에 필요하겠으나 비교적 관련성

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부모역할 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부모가 한국을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언어발달 프로그램이다.

〈표 II-2-4〉 결혼이민자 모의 한국어·한국 이해 지원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예산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	-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한국어 강사 양성, 강사 수준 및 관리 체계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 개발		문화관광체육부	16.7억원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표준화 - 참여자에 대한 이민정책 원의 인센티브 부여	76개 운영기관 지정	법무부	28억원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 정착한 결혼여성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출신국 새내기 이주자의 정착 도 우미로 활용	800명 양성	행안부	3.48억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결혼이 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실 시	159개 소 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별도예산 산출곤란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	- 유치원·초등학교 등 알립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 파견 등	서비스 제공인력 210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2.84억원
주민자치센터 이용 한국어교육 운영 강화	- 주민자치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연계	200개	행안부/ 사도 및 사군 구	비예산 사업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일부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결혼이민자는 장기간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과 가족·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부족은 각종 차별·인권침해에 대한 방어능력 부족과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입국 초기부터 체계적·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하여 통번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를 포함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 강사 양성 및 관리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정착한 결혼여성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출신국 새내기 이주자의 정착 도우미로 활용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표 II-2-4 참조).

이와 같은 중앙정부 사업 이외에 경상북도에서는 결혼이민자 공부방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방정부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표 II-2-5 참조).

〈표 II-2-5〉 시·도별 지자체 사업 중 부모 지원 사업내용

분류	세부사업	지역	예산
언어	- 다문화공동체 해피투게더 지원 · 한국어학당, 부모교육 등 한국어에 대한 심리적 불안 해소	부산 강서구	0.09억원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예절 교육	대전 동구	0.07억원
	- 결혼이민자 방과 후 외국어 강사 양성	강원도	0.5억원
	-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전라북도	19.6억원
	-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경상북도	8억원
부모역할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코디네이터 지원(파견)	서울 용산구	1억원
	- 다문화맘 육아달인 ·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이유식 만들기,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2개월, 주 2회)	부산 사상구	5천만원
	- 다문화가족 가족상담, 자조모임 및 자녀 양육 교육 지원	울산	12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나) 부모 역할

결혼이민자의 부모 역할 수행을 돕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부부관계, 자녀양육, 고부관계, 가정/성폭력 등 가족생활 전반사항에 대한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2세 미만의 자녀 양육 결혼이민자에게 좋은 부모 되기, 부모자녀 관계, 생활 및 학습 지도, 건강 영양 등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

담서비스 제공하며, 자조모임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상호간·가족 간 문화·생활 정보 소통 등을 위한 모임 결성을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단위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자녀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자녀행복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학교생활·교육 안내 및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표 II-2-6 참조).

〈표 II-2-6〉 결혼이민자 모의 부모역할 지원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예산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부부관계, 자녀양육, 고부관계, 가정/성폭력 등 가족생활 전반사항에 대한 상담 실시 및 관련 전문기관 연계	40000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예산 산출곤란
아동양육지원서비스	-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8000가정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6억 원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모니터단 운영	- 결혼이민자 상호간·가족간 문화·생활정보 소통 등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지원	센터 당 1개 자조모임 운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예산 산출곤란
학교 단위 다문화가족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 학교 단위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자녀교육 상담 등을 지원	학부모 1000명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3.6억 원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학교생활·교육 안내 및 상담 지원	1000명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비예산 사업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지방정부의 자녀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서울 용산구의 자녀 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파견 사업과 부천 사상구의 다문화탐 육아달인 사업으로 이유식 만들기, 베이비 마사지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특이하다. 그러나 후자는 2개월짜리 단기 사업이다(표 II-2-5 참조).

다) 임신·출산 지원

결혼이민자의 출산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 분만 및 산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출산전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목표는 8,000가정이다(표 II-2-7 참조).

또한 일부 지방정부도 유사한 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추진한다. 경상북도에서 임신 부에게 출산용품 지원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표 II-2-8 참조).

〈표 II-2-7〉 결혼이민자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예산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 전 분만 및 산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출산전후서비스 제공	8000가정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266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체 시행계획

〈표 II-2-8〉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지원 사업

세부사업	지역	예산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울시 중구	0.62억원
- 찾아가는 임신 출산 지원	부산시 중구	0.08억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라남도 화순군	0.17억원
	경상북도 안동시	0.2억원
-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	강원도 춘천시	0.1억원
	경상북도 구미시	0.1억원
	경상북도 예천군	0.05억원
	경상북도 김천시	0.05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라)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보육료나 자녀 양육의 소요비용 지원은 중앙정부 사업은 없고 일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지방정부 사업 중에서 아동 형태의 현금성 지원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월 3만원을 수당 형태로 지원하고, 이외는 대부분 보육료 지원이다(표 II-2-9 참조).

〈표 II-2-9〉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세부사업	지역	예산
- 2년 이상 거주 결혼이민자 취학 전 자녀 1인당 월 3만원 지원	강원도 횡성군	0.54억원
-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충청남도	18.36억원
- 보육시설 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진천군	0.5억원
-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 경감	충청북도 진천군	0.5억원
-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경기도 양평군, 구리시	1.48억원
- 다문화가족 보육료 차액지원	전라남도 해남군	-
- 다문화가족 자녀 정부 지원 단가 내 차액보육료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 결혼 이주여성 자녀 학용품비 지원 사업	충청북도 보은군	0.08억원
- 결혼 이주여성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0.24억원
- 결혼 이주여성 출생자녀 행복스타트 통장 지원, 첫돌기념 축하 케익 전달,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0.12억원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3) 자녀에 대한 지원

자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언어 및 학습능력과 학력 증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민자 자녀는 다른 외모·문화·말씨, 집단 따돌림 등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엄마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기초학습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민자 자녀의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자녀에게도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가) 언어 및 학습능력

중앙부처 사업으로 이민자 자녀에게도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표 II-2-10〉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예산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 학부모, 외국인 등이 부모출신국 언어 및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 방과후 학교 보조강사 등으로 활용	-20개 과목 개발 -교수요원 100명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위탁기관(서울 교대,경인교대)	4억원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지원 (학습 및 학교 생활 지원)	- 기관 미이용 및 유치원 유아(다문화 포함) 중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 지원 - 집합교육, 개별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하게 병행 실시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희망유아교육사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희망유아 교육사 300명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유치원	49.96억원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아동복지 교사운영지원)	- 다문화가족의 학부모 중 우수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 후 서비스 제공	20명 지역 아동 센터 파견	여성가족부	별도예산 산출곤란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이한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 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교육 실시	언어지도 사 100명	여성가족부 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28.23억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 2-6세 영유아 대상 주 1회 이상 방문 바우처 제공 - 독서지도, 도서 지급, 독후활동 등		보건복지가족부	-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은 이중언어 교육환경조성,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발달 지원 등이다.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을 개발하고 또한 다문화 유아들이 확산됨에 따라 발달 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하여 희망유아교육사를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에게 파견하여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학부모 등 우수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파견하여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자녀에 대해 언어발달지도사를 가정 또는 보육시설에 파견하거나 집합교육을 시키는 등 언어 발달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하여 2~6세 영유아 대상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바우처 제공, 독서지도, 도서 지급, 독후활동 등을 지원한다.

언어발달지도사, 희망교육사,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방문지도는 상호 중복된다는 평가도 있으나 각각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언어발달지도사는 언어발달 관련 전문학사 이상으로 주로 집합, 개별,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유아희망교육사는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자로 유아 중심으로 발달을 지원하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방문사업으로 2세 이상 영유아 중심으로 지원한다. 언어발달지도사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희망교육사,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방문지도는 일반 취약계층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형태이다.

〈표 II-2-11〉 다문화가족 유아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추진과제	세부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 유아교육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의 유치원 교육 접근성 제고 · 유아교육 등 관련 전공 대학생을 활용한 유아교육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족 유아교육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초 역량·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보완 추진 · 지역단위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 특색사업분야로 '다문화가족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도 및 지원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사 연수 실시	·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가족 유아지도를 위한 매뉴얼 개발 ·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현행 교원 연수에 관련 내용 반영 및 수준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 한국어·출신국 언어를 구사하는 인적 자원을 선발, 교육하여 유치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양성, 다문화가족 유아가 많은 유치원 등에서 강사로 활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 계획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족 유아교육 지원'은 2010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추진과제로, 다문화가족의 취학 전 자녀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응 및 성취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미흡한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사 연수,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유아교육현장

활용 확대를 세부사업으로 추진한다(표 II-2-11 참조).

〈표 II-2-12〉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사업내용

세부사업	지역	예산
- 다문화가족자녀 독서지도 교육	경상북도	0.11억원
- 다문화가족자녀 이중 언어 대회	경상북도	0.2억원
- 군 지역 3~5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업체 교사 방문 한글지도	경상북도	1.08억원
- 결혼이민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및 교사 양성	경상남도	1.9억원
- 취학 전 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사업: 유아독서지도사 주 1회 파견	서울 관악구	0.05억원
- 다문화공동체 해피투게더 지원 · 아동보육, 자녀교육지원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	부산 강서구	0.09억원
-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 교실	경기도 안성시	0.1억원
- 다문화가족 도서 및 교재 구입 지원 및 독서 지원, 도서 대여	경상북도 상주시	0.11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표 II-2-13〉 지방정부 보육특별사업 중 다문화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사업명	구분	예산
시·도 사업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 3개소 운영	서울특별시	2.3억원
다문화 부모 및 영유아를 위한 교육운영 3회 비용	충청북도	0.5억원
다문화 영유아 수 10명 이상, 정원대비 20% 이상인 시설 중 다문화 시범어린이집 운영비	충청남도	18.36억원
보육시설 미설치지역 다문화 육아&보육지원 프로그램(‘어린이가 신나는 매직버스’) 운영	전라북도	
시·군·구 사업		
평가인증 보육시설 만2세 이상 아동 원어민 및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현장 체험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자료 : 보건복지부(2009), 지방자치단체 2009년 특수보육시책

지방정부 사업으로는 경상북도에서 다문화가족자녀 독서지도 교육, 다문화가족자녀 이중 언어 대회, 군 지역 3~5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학습지업체 교사 방문 한글지도 사업을 실시하며, 경남도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및 교사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이외 관악구가 유아독서지도사를 주2회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표 II

-2-12 참조).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으로는 다문화 보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서울시가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을 3개소 운영하는 등 사업을 실시한다(표 II-2-13 참조).

다) 학력 증진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학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을 통하여 맞춤형 지도를 추진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다문화가족 자녀 대안교육시설에 시설비와 기자재를 지원한다(표 II-2-14 참조).

지방정부 사업으로는 멘토링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가장 많고 이외 방과후 교실, 공부방 운영이 실시되고 있다(표 II-2-15 참조).

〈표 II-2-14〉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학력 지원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예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 지원	거점학교 60개 멘토링 2,000명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21억원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 확대	- 학업중단 다문화가족 자녀 대안교육시설 시설비, 기자재 지원	3개 시설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0.5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표 II-2-15〉 지방정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지원 사업

세부사업	지역	예산
- 자녀양육학습지원: 교회와 어린이집 연계	서울시 송파구	20.3억원
- 다문화가족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부산시 강서구	1.9억원
- 다문화가족2세 교육·학습협력사업: 멘토링	대구시 인천시	0.2억원 0.5억원
-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도우미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천시	2.28억원 2.65억원
- 방과 후 교실 운영	서울시 마포구	0.1억원
-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울산시 광주시 남구	2.1억원 0.04억원
- 엄마와 함께 배우는 우리역사 공부방	대구시 달서구	0.06억원
-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 · 발달 수준 진단과 평가 후 맞춤형 교육 실시	전라남도 장성군	0.05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라) 기타

또한 청소년 자활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저소득청소년의 진로탐색, 직업관 확립, 직업 능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⁴⁾

자녀 수련활동으로 수련관 활동에 다문화 아동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캠프 등의 활동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표 II-2-16 참조).

〈표 II-2-16〉 지방정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수련활동 지원 사업

사업명	구분	예산
- 다문화가족 자녀 내 모습알기 캠프 · 다문화자녀 인식증진 및 자아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경기도 수원시	0.12억원
- 다문화가족 청소년 수련활동	경상북도	-
- 다문화가족꿈나무 양성사업 · 유적지 탐방, 레크레이션	서울시 동대문구	0.14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4) 중도입국자녀 지원

‘다문화가족 동반 중도입국자녀 교육 지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출생·성장하여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거의 없고, 학령기를 넘긴 자녀는 가족해체, 학습공백 등으로 학교생활과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미미하다. 여성가족부가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2009년에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10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고 시범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산시를 중심으로 미취학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표 II-2-17 참조).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학 전 예비과정을 지원하고, 학교 내 특별학급을 운영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14) 28개소에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데 결혼이민자 지원 예산이 별도 배정되어 있지는 않음.

등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다.(표 II-2-18 참조).

〈표 II-2-17〉 결혼이민자 가정 중도입국자녀 학습 지원 사업

사업	개요	2010년 목표	부처	예산
외국에서 출생 · 성장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시범실시)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 그램 실시 및 수정·보완 · 한국어(기초/학교생활 관련), 교우관계, 정체성, 생활(문화) 영역, 학과(음악, 체육 등), 편 입학시험지도 등 · 3개월(주 5일, 전일제)	1개 지역 (10명~15명)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 년지원센터/ 다문화청소 년종합지원 모델사업연계	별도 예산 산출 곤란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표 II-2-18〉 '다문화가족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추진과제	세부사업내용
취학전 예비과정 지원	- 중도입국 자녀 등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한국어·문화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대학생 등을 1:1 연계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은 지역(수도권 등) 및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 -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및 운영 - 민간에서 추진 중인 예비교육기관 등과 연계 · 소요예산 : 중도입국 자녀 1:1 지원 5천만 원 (100명 대상) -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4천만 원 (3-4개소)
학교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 단기간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해 학교 내에 특별 학급을 구성, 일반학급과의 협력학습 지원 - 특별학급 담당교사 외에 이중언어·상담 등이 가능한 교육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 지원 · 소요예산 : 5천만 원
공립 대안 학교 설립 지원	- 일반학교 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한 공립 대안 학교 설립 지원 ·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현행 교원 연수에 관련 내용 반영 및 수준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역량있는 학부모 교육지원·활용	-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로 추가 양성·배치하여, 중도입국 자녀교육 지원 - 외국어에 능통한 중도입국 자녀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교우·교사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소요예산 : 이중언어 강사, 동아리 지원 27억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중도입국 자녀 대상 직업·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 추진 -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업·진로교육 지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 계획

지방정부 사업으로는 안산시가 2010년 하반기에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않는 7~17세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비 학교를 운영 중이다. 주 5~6일 전 일제로 3개월 과정이다. 교육내용은 기초한국어, 학교생활 한국어 등 한국어 교육,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 학습, 학교 적응 및 예체능 수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라남도가 2010년에 가정 방문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 확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⁵⁾

3. 다문화정책 주요 전달체계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축으로 추진된다. 전국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거점 센터를 통하여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 매뉴얼 보급, 평가 및 지원, 정보 제공 및 업무실적 관리 등을 수행하고,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각급 기관¹⁶⁾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에 전국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5개의 거점 센터를 포함하여 171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19개소는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는 센터이다. 지방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센터로 운영되었으며, 국비지원센터와 동일한 사업운영방식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¹⁷⁾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제5장에서 기술하였다.

15) 당초 전남에 최소 3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명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16)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 보육시설, 보건소, 지방문화원, 고용지원센터 등

17)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 하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팀)'가 2006년 21개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로 확대되었음. 2008년 가족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된 후, 명칭을 바꾸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다문화가족지원팀에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관리를 위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80개소, 2009년 119개소로 확대되어 왔음.

나. 무지개청소년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북한이탈,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열린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하였고,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기본사업으로는 새터민청소년 대상 학력 평가 등 기초분야 실태 파악 및 조사, 하나원 방문교육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관련 연구자료 발간하고 있다.

〈표 II-3-1〉 무지개 청소년센터 주요사업: 2010

구분	사업 내역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사업	- 하나원내 하나둘학교 협력운영: 전담교사 파견, 심리·정서적지지 및 맞춤형 지원 - 정착초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 북한이탈청소년 지역거점센터 운영
청소년 다문화 역량강화사업	- 이주배경 청소년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 다문화청소년 지역거점센터 운영 - 전문가 양성교육
연구개발사업	-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종합정보서비스 사업 - 이주배경 청소년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도입국자녀 대상 프로그램 시범사업	- 안산, 수원 거점센터 중심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시범사업 운영: 기초한국어(학교생활 위주 용어 학습) - 정체성, 법률, 교우,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시 - 2011년 프로그램 완성하여 각 거점센터 및 지역기관보급 예정

자료: <http://www.rainbowyouth.or.kr/>

2009년에는 북한이탈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국초기 다문화아동청소년 길잡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지역사회 북한이탈 청소년지원기관 4곳, 다문화청소년지원기관 5개 기관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학습지원, 멘토링, 문화통합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편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기초한국어 교육, 정체성, 법률,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다민족 한국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에 필요한 중앙 단위의 다문화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 7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내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다문화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 및 교사를 위한 교재 개발,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일반교사나 다문화관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교사 대상 교원연수는 수도권 지역은 30시간, 수도권 외 지역은 15시간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주요 연수내용은 다문화교육의 이론영역, 다문화교육의 실제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라. 민간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먼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 관련 단체가 많다. 본 고에서는 이들 단체 중에서 일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주여성인권센터

2001년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의 집”을 설립하고, 2월에 외국인 이주여성 모성보호와 신생아 지원사업, 7월에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한 컴퓨터 개소 및 사업 등을 시작으로 발전,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5개 이주여성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고, 이주여성 활동단체 활동가의 젠더 및 다문화 감수성 훈련을 위한 정책연수, 국제결혼 남편 예비교육을 위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강사, 학습자용 매뉴얼 개발(여성부 위탁)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중심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활동으로는 이주여성의 건강권과 신생아 보호를 위한 활동, 임·출산부 건강관리, 산후도움, 신생아 돌보기와 양육지원, 무료 한방 진료활동 등을 수행한다.

〈표 II-3-2〉 이주여성인권센터 주요 활동

종류	활동
상담활동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과 법률지원 -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폭력상담 - 가족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부부 및 가족상담과 교육 - 개인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문화활동	- 의사소통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생활문화교육과 체험 - 정보화교육, 열린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사회를 열어가는 자원 활동가 교육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이주여성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확산
정책연구활동	- 이주여성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례 심포지엄개최 - 아시아이주여성 국제회의 개최와 연대활동 - 국민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연구 활동
모성보호활동	- 이주여성의 건강권과 신생아 보호를 위한 활동 - 임출산부 건강관리, 산후도움, 신생아 돌보기와 양육지원 - 무료 한방 진료활동
출판홍보	- 이주여성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 - 이메일 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공동체 지원	- 자긍심향상프로그램, 나라별 모임지원, 문화활동지원

자료: <http://www.wmigrant.org/>

2) 이주민과 함께

1996년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아시아평화인권연대와 통합하여 단체 이름을 ‘이주민과 함께’로 변경하였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울림’과 ‘이주와 인권 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과 교육, 의료사업, 신문발행,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 어울림사업으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 이주와 인권정책에 대한 연구, 후원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통합 이전에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평화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통합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캄보디아 빈곤지역 지원 등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 인권과 평화교육은 하부조직인 다문화교육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다.

〈표 II-3-3〉 이주민과 함께 주요 활동

종류	활동
이주노동자 인권신장 사업	- 상담과 교육사업 - 의료사업 - 조직사업: 이주노동자 공동체조직 및 각종 행사지원 - 신문발행: 월 2회 영자 신문, 월 1회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신문 - 문화사업: 아시아문화한마당, 이주민의 날, 아시아 친구하기 프로그램 등 - 홍보사업: 월 2회 보도자료 발간
어울림사업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상담 및 컴퓨터운영 - 이주민활동가 지원: 다문화상담원·다문화교사 양성교육, 지역내 기관협력 - 다문화가족 2세 교육 및 심포지엄 - 인식개선 및 다문화이해: 지역 내 캠페인 활동,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연계
이주와 인권연구소	- 연구사업: 심포지엄, 이주정책, 운동, 현황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실태조사 - 교육사업: 정기 워크숍
자원활동가 사업후원	- 자원활동가 교육 및 월 1회 전체모임 - 월 소식지 발간 및 이메일 발송

자료: <http://fwr.jinbo.net/>

3) 국경 없는 마을

국경 없는 마을은 2006년 6월 안산이주민센터의 경험과 역량을 보다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 집단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주민실태조사, 연구자료 출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다문화체험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교육, 가정통신문 번역 등이다.

〈표 II-3-4〉 국경 없는 마을 주요 활동

종류	활동내용
다문화체험교실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 일반교사 및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인식 전환과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교육
가정통신문번역	학교에서 발송되는 가정통신문 10개 언어로 번역
교사대상 온라인 교육	온라인강좌 통해 교사들에게 다문화직무연수 실시
다문화관련 도서 출판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관련 도서 출판

자료: <http://www.bvillage.org/>

4) 코시안의 집

1996년 4월 코시안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9월에 코시안의 집이라는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코시안의 집은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코시안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에는 코시안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위한 코시안의 집의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3-5〉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주요 활동

종류	활동내용
영유아 보육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족 영유아 종일 보육
코시안스쿨운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특별활동(피아노, 미술치료, 재즈댄스, 미디어 교육, 아동캠프, 문화체험 등)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매주 방문하여 양육지원, 의료지원, 가족상담 실시
다문화가족상담	다문화가족의 법률적인 상담, 부부상담, 이동상담, 의료상담
공동체모임 및 행사	가족모임, 부모 교육, 가족캠프, 명절행사 실시

자료: <http://www.kosian.or.kr/>

Ⅲ. 외국 사례

제3장에서는 우리 사회보다 앞서 주변국으로부터 다양한 이주민을 받아들여 유입 이주민에 대해 다문화 정책을 수행한 외국의 정책 현황과 그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수립과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프랑스

가. 배경 및 개요

프랑스는 18세기 후반 전쟁이후 약화된 국력을 이민 인구증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후 20세기 초 본격적으로 이민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주민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이후 동화주의를 표방하여 프랑스적 용광로 정책으로 불리웠다. 그러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한 단편적 정책 수행으로 인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에 70년대 이후부터는 공화국 통합모델의 수립을 통한 강력한 통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즉 프랑스 공화주의의 자유·평등의 원칙하에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개별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구분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완전 동화에 기반한 귀화를 전제로 교육을 통한 사회문화적 차이의 극복을 추진하여, 이민자 집단 거주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폭력과 불법체류 등의 사회문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주의 일변도의 이주민 정책은 강한 반발을 가져와 무슬림 소요사태 등으로 표출되었으며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중앙정부는 동화주의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원칙과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7년 5월에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협력 발전부(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egration, de l'Identite nationale et de la Co-developpement)라는 정부부처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주민 정책을 중앙 집권적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의도에서이다. 당시 이민부 장관이 천명한 시설 이민부의 이주민 정책의 4대 원칙은 이주민 유입 조절(Maitriser les flux

migratoires), 상호 협력과 발전 유도(Encourager le codeveloppement), 통합을 북돋우기(Favoriser l'integration), '우리' 라는 집단적 정체성 강화(Promouvoir notre identité)이다.¹⁸⁾

프랑스에 장기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면 국제이민청(l'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에 등록이 되어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600시간의 프랑스어 강좌, 30시간의 시민교육과 직업 지원을 내용으로¹⁹⁾ 비디오 시청-자료제공-건강진단-프랑스어 시험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언어시험 합격시 체류허가신청서가 발급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프랑스어 기초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최대 400시간까지 해당지역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무료 프랑스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박성혁·곽한영, 2009; 이선주·민무숙·신현옥·이태정, 2009;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오윤자, 2009)

이후 지원기관은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사회 지원재단(Fonds d'action sociales pour les travailleurs immigrés et leur famille, FAS)이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사회적 제도들에 대한 정보 등을 지원하며, 이민자 사회적 지원 서비스(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 SSAE)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적 가족지원 서비스 연합(Association de service social et familial aux migrants(ASSFAM))에서 프랑스의 사회복지시스템과 교육, 의료보험이나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은 직업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실질적 지원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독립적인 다문화 관련 기관을 통한 매우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특징이라 하겠다.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은 이들을 특별하게 배려하는 정책에 인색한 대신에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사회복지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1) 교육우선지역

프랑스는 1981년부터 교육우선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두었으

18) <http://premier-ministre.gouv.fr/iminico>

19) 교육내용은 프랑스 제도와 관공서의 구성, 기본법과 법률지식, 프랑스 사회의 가치, 세제 및 사회보장법, 정치참여, 국적취득, 사회적 분열의 거부, 이민자의 권리 등에 관한 것임.

며, 1998년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 대신에 연결망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우선연결망(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REP)을 구성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997년 평가보고서에서 ZEP 낙인 이미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류층과의 교류 강화를 권고하였다. REP는 여러 가지 교육수단의 상호부조, 실질적 교육활동의 공조체인데 ZEP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들이 여기에 소속된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조기취학을 권장하고 모자보호국, 가족수당 지급처, 지역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조기 취학한 유아들을 지원한다. 이는 이민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유아들이 프랑스어와 문화를 익히고 가정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문화적 활동들에 접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질적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나정 외, 2004a).

2) 교육 지원

이주민 아동의 불어 습득을 위하여 1970년부터 학교에서 특별학급제도를 운영한다. 초등학교에는 입문반, 중학교에는 적응반을 둔다

또한 프랑스에는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정보센터(Carnet de found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de migrants)가 설립되어 있다. 이 센터는 이주가정 아동 학교적응 목적으로 교육청내 설치된 교육지원센터로, 학교 입학 정보 제공,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 16세 이상 아동 직업교육, 진로상담 역할을 한다.

3) 청소년지원센터²⁰⁾

프랑스 지역 곳곳에 배치, 활성화되어 있는 청소년지원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는 이주청소년지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청소년센터가 이들의 학습과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를 주선한다. 이들 지원센터는 지역의 전·현역 교사들이 자원하여 어학 프로그램과 문화강좌를 실시하는 지역이 많다. 또한 그 지역의 젊은 인력풀을 가동하여 학교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정 역할을 한다.

20)무지개청소년센터(2007).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교육'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또한 프랑스에는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에도 약 30개 정도의 학령기 이주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Carnet d'adresses des Centres acade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Casnav), ex-Cefisem)가 설립되어 있다. 이 센터는 이주민 자녀의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평등을 지향하며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교육지원센터로, 이주 가정을 위한 학교 입학 정보 제공,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 교사교육의 활동을 한다. 언어와 문화 등 학습이 어려운 이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류학 강좌 등을 운영하여 지구촌 사람들의 이동과 섞임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사에게는 다문화 감수성과 전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독일

가. 배경 및 개요

독일은 종족 중시 통합모형에 기반을 둔 이주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과거의 구별·배제주의 이주민 정책을 벗어나고자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소수 인종 및 이민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구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00년 이후 속지주의의 수용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등 다문화 통합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일례로 2004년 신 이민법을 통해 이주민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민청을 설립하여 이주민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정책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05년 개정 이주법안을 토대로 설립한 이주난민청은 통합프로그램 규정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 실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처의 역할은 내무부는 이주민의 초기 지원, 사회복지상담, 외국인 여성 통합지원강좌 지원, 유럽난민기금에 의한 난민수용 및 귀국 지원, 언어강사지원, 매체지원을 담당하고, 가족·여성·노인·청소년부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노동·사회부는 이주민의 노동시장 편입 및 취업자격획득과 특별고용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연구부에서는 취업관련 지원, 학술연구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독일은 민족 정체성교육과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동화교육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주민 자녀를 위한 공존의 적응 프로그램과 다문화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1) 영유아 지원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은 각 주별로 각각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베를린 주의 경우에는 2005년 도입한 '교육을 통한 통합 달성(Integration through Education)' 정책에 따라 소수 인종의 이민자들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민자 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school councils) 참여 등, 학교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통합 달성을 위한 교육 지표(educational indicators)를 설정하고 이들 지표의 성취 여부를 기준으로 통합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베를린 주에서는 교육지표 중 유아교육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소수 인종 출신 이민자 가정의 유아 보육·교육 기회 확대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표의 예로는 ①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소수 인종 출신의 다문화가족 유아들은 최소 2년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②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소수 인종 출신의 다문화가족 유아들은 충분한 수준의 독일어 유창성을 구비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사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ERMAN PLUS라는 언어 능력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독일의 Hesse 주에서는 지난 2002년 언어 습득 능력 진단 평가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시작하기 1년 전에 독일어 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만일 테스트 결과 아동들이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독일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들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고 무료 유치원 교육(Vorlaufkurse)에 등록하여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독일어를 습득하도록 한다.

2) 영유아 부모 지원

유아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0~5세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영유아기 초기부터 학습에서의 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아 부모

및 가족 지원프로그램으로, 벨리즈에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기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인식 지원, 전반적인 아동 발달, 언어발달 촉진, 인지능력 향상, 부모-자녀 간 관계 강화 등으로, 가정방문, 그룹 미팅,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및 지역 학습 자원과의 연계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2주마다 같은 배경을 지닌 가정교사(tutor)가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학부모 지원 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에게 향후 자녀가 참여하게 될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주는 정책이다.

3) 학교 부모참여를 통한 다문화 교육

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가진 인적 자원을 학교에 활용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 이해를 높이고 교육지원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되고, 본국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된다.

4) 다문화가족 대학생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및 이민자 출신의 교사 양성

같은 배경을 지닌 대학생 등 상급학교 학생들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찾아 미래 성공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²¹⁾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교육대, 사범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²²⁾

각 구역별 청소년센터(Jugendzentrum)에서는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일반 아동·청소년간의 통합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1) 이러한 다문화가족 대학생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독일이외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22) 무지개청소년센터(2006). '독일의 이주 청소년 정책'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미술, 노래와 악기연주, 춤, 요리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요일마다 다르게 진행되며, 개별적으로 자유로이 왕래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탁구대, 보드게임 등이 준비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청소년들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방학기간에도 청소년 센터의 공간을 개방한다. 또한 각 나라별 문화행사주간을 정하여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게 할 뿐 아니라 출신나라별 모임을 갖도록 주선하며, 모국어 수업을 위한 공간을 대여하기도 한다.

독일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이수가 의무제인데, 독일 전역에 걸쳐 약 8,200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2005년 113개이다.²³⁾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기관들이 연계하여 각 기관의 경험과 세부 사업추진, 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적응과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꾀한다.

3. 스웨덴

가 배경 및 개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스웨덴은 2009년 전체인구의 22%가 외국출신 이주민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주민의 증가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980년대에 이미 다문화 사회의 사회적 갈등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사민당 정권 하에서 사회 경제적 평등과 포괄적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97년의 사회통합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21세기에 더욱 심화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경제·산업 및 문화, 사회복지, 그리고 청소년 및 교육 등을 총 망라하는 종합 정책의 골격을 마련하고 있다.

23) 독일안내서를 독일어와 각국 모국어로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630시간으로 독일어로 진행되며, 이 중 언어교육과정은 총 600시간으로 참석자 수준별로 상중하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언어과정이 끝나면 30시간의 사회적응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언어지식 뿐 아니라 현행 법규에 대한 지식과 문화, 독일 역사에 대한 소양 등을 배우게 됨. 교육시간동안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며, 배운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구술 및 필기시험을 실시함. 대규모로 이주해온 터키계, 아랍계, 러시아계 이주민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적응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에 총 4시간, 2일에 나누어 총 6개월간 진행하기도 함.

스웨덴의 통합정책 기본골격은 비차별화(No Special Treatment), 균등화(Equalization), 그리고 융화(Mixing)이다. 외국인 출신 이주민과 스웨덴 내국민과의 차별적 정책을 지양하고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함께 동일시함으로써 차이의 의미를 축소하고자 한다. 구체적 정책 목표로 차이를 줄이는 노력, 즉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으로, 교육참여, 고용, 소득수준, 삶의 질 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공조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간 융화이다. 이주민들과 내국인들이 지역적, 계층적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을 때 사회는 더욱 양극화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주민들이 스웨덴 사회로 진입하도록 하는 동시에 스웨덴 사람들이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청소년정책, 시민제도정책, 문화정책을 총망라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나. 구체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스웨덴 취학 전 교육과정(Lpfö 98)에는 피르스콜라에서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닌 아동들이 모국어를 스웨덴어와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 아동을 위한 목표 중 하나는 이들에게 이중언어(bilingualism)와 이중문화 주체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르스콜라에서는 다문화와 모국어 훈련을 교육활동에 통합하여 실행하고 있다. 모국어 훈련은 이들의 언어발달 이외에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웨덴 이민자 가정 아동들의 공보육 수혜률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3세 이상의 모든 아동들이 피르스콜라에 다닐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기금을 제공하고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로 개방형 피르스콜라나 공립 피르스콜라 건물 안에 특수한 반일제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한유미 외, 2006).

2) 초등학교에서의 지원

초등교육법(Grundskoleordningen)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스웨덴 초등학교의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스웨덴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 학생이 모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 계속해서 부모의 언어를 공부하고자 할 경우 학교가 그 학생

을 위해 부모의 언어를 하나의 과목으로 채택해 교사를 구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의 수준과 양은 학교가 언어 교사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이외 교육정책의 교과내용은 열린교육을 통한 기회의 균등보장, 대학과정까지 무료교육, 인성, 민주주의, 다양성의 존중 등으로 중앙에서 교육지침서 마련, 학교간 자율적 경쟁을 통한 이주민 자녀의 교육, 모국어 교육의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전 세계 언어능력자의 보유), 다문화교습법 개발, 문화교육대학설립, 다문화시대에 교육할 교사양성 등의 정책을 담당한다.

3)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²⁴⁾

스웨덴의 이주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유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센터(Mångkultursentrum, Multicultural Center)²⁵⁾에서 다양한 문화전시 행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문화센터는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등이 있고, 다문화를 주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글짓기 대회, 미술대회, 그리고 연극 및 전시회 등을 1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연구센터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화 작업 및 정책 건의를 하는 등 다문화된 스웨덴 사회의 국가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기관이 되고 있다.

스웨덴 모든 기초단체에는 청소년 문화관 같은 캠프(Ungdomsgård, Youth Garden)를 설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학생들이 편하게 음악, 댄스, 컴퓨터 혹은 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및 공연프로그램 등도 진행하는데, 사진전,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을 통해 문화이해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특별히 지체부자유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으로 장애아동 캠프를 운영한다. 주로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지만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와 함께 하는 산책반, 수영반, 휠체어 운동반, 장애인 승마반을 따로 운영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칼라발릭 연극회(Kalabalikteatern)가 2001년부터 시작되어

24) 무지개청소년센터(2009). '스웨덴의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일부내용을 발췌하였음

25) 1997년 정부 지원으로 외국인이 94%에 이르는 스톡홀름의 남부외각 피트야(Fittja)에 다문화센터가 설립되어 다문화 연구와 문화행사의 메카가 되고 있음.

7~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매년 평균 6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작품의 한 인물을 선정하여 대사를 외우게 하고, 연기수업과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실습을 통해 이주민 아동청소년들이 스웨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극본에 나오는 스웨덴의 사회적 관습, 가치체계 등을 습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 내 외국인 클럽과 협조해 연극을 직접 올리고 참여와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접점(Melting Point)이 되기도 한다.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인이 동시에 다문화 체험하고, 스웨덴 사회를 배우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포츠는 하닝에 킴문의 프로그램으로 권투(Democracy in Boxing), 태권도, 유도, 승마, 테니스, 수영연습을 통해 이주 아동청소년과 스웨덴 청소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 참여자의 50%가 이주민 출신의 청소년들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 네트워크의 확대와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많은 호응을 끌고 있다.

4. 캐나다

가. 배경 및 개요

캐나다는 전형적인 다양성 수용의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나라로, 건국 초기부터 영국계와 프랑스계 자국민들의 조화로운 통합을 고민해왔고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유치로 이주민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나라이다. 1971년 영어사용 시민과 프랑스어 사용 시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민의 문화적 주체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캐나다 국민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통합 정책을 수행, 다양성에 기초한 결속력 추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부처 문화유산부를 통해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국가가 지원함에 따라 '캐나다식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인정의 다문화 수용 정책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리가 조장되고 국가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매년 20만 명에 이르는 투자이민 유치와 고학력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다문화시민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캐나다는 국가적 수준에서 시민의식, 정체성,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은 각 자치주가 담당하고 있다(오은순, 2007). 연방정부에는 1994년부터 시민성과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 다문화주의 프로그램(the Multiculturalism Program)이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로부터 이관되어 이민 정책 및 외국인 출입국관리정책을 수립 및 관리한다. 이민자 통합 정책 추진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준주정부, 시정부 차원에서 거대한 조직망을 이루고 있고,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역공동체단체, 기타 제3의 주체(통칭 이민자서비스 단체)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1988년 캐나다 사회에 다양성을 정착하고 공식화하는 캐나다 다문화주의법(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을 마련하여 국영기업체에 적용하는 등, 다문화사회로서의 국가적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외 주별 특성을 살려 각 주별로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1974년 사스캐체완(Saskatchewan) 주는 사스캐체완 다문화법을 제정하여, 이민자의 문화적 유산을 배우고, 상호 문화적 공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원조를 선언하였다.

1997년 캐나다 정부는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추진할 정책개발을 시작하였다. 2000년 사회통합을 위한 OECD 회의를 유치하여 그간 강조해왔던 다양성의 존중이 단합된 사회를 만드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이었음을 간과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다(Joshee, 2009). 따라서 현재의 캐나다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성과 통합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²⁶⁾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보육 프로그램에서의 다양성 배려

캐나다의 캐나다 공식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보육시설 이용, 비용보조, 보육시간 조정 등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는 노력을 해 왔다. 보육분야에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이 강조되는 것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하면서 편안하고 자신있게 자

26) <http://www.cic.gc.ca>

신의 유산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 개념과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부모의 적응을 돕고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성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배우고 감사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고, 모든 아동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편안하게 감정이입이 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²⁷⁾

2)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빅토리아시

빅토리아 시의 이주청소년 적응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지원 단체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아동 대상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첫째, 일반 다문화 청소년 지역사회 및 학업 지원으로 청소년 방과후활동, 숙제클럽 및 일대일 개인 교습 활동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숙제를 돕고, 개인교습을 통해 학교수업에 적응하고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우며, 토요일에 주 1회 미술, 공작, 오락게임, 견학, 소풍과 같은 재미있는 활동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감, 자신감, 다양성의 가치 등을 활동을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입국 초기 청소년을 위하여 어렵게 과다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사, 학교교사/카운셀러가 함께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적응을 돕는다. 셋째, 13세 이상 이주·난민 청소년으로 청소년 큰 걸음(Stride) 프로그램을 한다. 이는 자신의 문화에 열정을 갖고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청소년 대상 훈련 워크숍으로, 주요 국제 이슈논의, 지도력 개발, 실질적 능력과 기본생활 지식 습득을 위한 야외활동과 음악 댄스, 연극 등으로 구성한다. 유사하게 다문화 청소년 서클(Multicultural Youth Circle Program; MP)은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0시간에 달하는 동료 조력자 교육으로 청소년 그룹 리더를 양성하여 이들이 학교, 문화센터, 지역사회 기관 등 파트너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카운슬링 등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통합적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민 서비스회(ISS: Immigrant Services Society)는 교육시설인 단기대학과 공동으로 취업 연계서비스 및 영어교육, 취업 전 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식, 능력을 제공하고 난민들을 위해 환영의 집(Welcome House)에 주거지를 제공하며, 이주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습득,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7) <http://www.childcarecanada.org>

3) 기타 비정부단체 및 민간기관, 학교 서비스²⁸⁾

기타 비정부단체, 민간기관, 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이민자언어교육 링크(LINC) 프로그램이다. 이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이민자 서비스로 1992년에 시작하여 신규이민자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무료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정착 및 통합 프로그램으로, 17세 이상의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대중교통 비용과 자녀 보육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둘째, 정착도우미들이 신규 이주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서비스로 토론토 정착 및 교육 파트너십(SEPT: Settlement and Education Partnership in Toronto)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이주민 가족들은 개인면담과 오리엔테이션이나 특수정보 안내 강의 등의 기회를 통해 정착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 이민자 정책 및 적응 프로그램(ISAP)이다. 신규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정착지원으로, 입국전후 오리엔테이션, 통번역 서비스, 지역공동체 서비스 이용 안내, 상담, 생활정보 및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학교 중심의 정착지원(SWIS)으로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신규이민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제도와 지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되는 정착지원 서비스이다.

다섯째, 이외 신규이민자정보센터(NIC)를 운영하여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정착 및 정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해결책 제공의 창구로서 상담, 서비스 의뢰, 정보제공강좌 등의 활동을 하며 이민자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고 있다.

4) 기타

그밖에 사설 이민자지원 서비스 단체의 운영, YWCA와 같은 비정부 기관의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민자협회와 같은 각 주 및 지역사회 조직이 신규이민자 다문화가족에게 언어평가, 상담 및 정보제공, 건강검진기관 연계, 주거와 취업지원, 멘토링, 정착서비스 취업지원, 학교 및 도서관 이용 지원, 통번역 서비스, 사회적 교류, 보건, 훈련 프로그램, 자원봉사, 전자기기 이용 등의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에 제공하고 있다.

28) 무지개청소년센터(2009). '캐나다의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또한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까지 영어, 불어, 제3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을 필수화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반차별,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속에 제공하고 있다. 학생 대상의 다양성 증진 콘테스트를 열기도 한다.

5. 미국

가. 배경 및 개요

미국은 이민자 유입으로 형성된 국가로 적극적인 이주민 수용 정책을 적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초기에는 영국 청교도에 의한 백인문화전수를 이루고자 하는 용광로(melting pot) 관점의 동화주의적 정책이 기초를 이루었으나, 인종적 차별과 격차의 심화로 사회통합 실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세기에 들어 개방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 용광로에서 샐러드 그릇(salad bowl)으로 이주민정책 관점을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인종 차별과 분리를 철폐하고자 하는 인권운동의 전개와 함께 미국의 이주민 정책은 다인종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차별 수정정책(Affirmative action)의 수행으로 변화한다. 현재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크게 소수민족(minority)의 정체성 보호와 미국 사회 적응교육으로 나뉘는데, 최근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인종 중심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수용하는 교육으로 변화하였다.

연방정부가 입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각 주 정부가 주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원적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적 정체성의 유지를 돕는 다양한 사회 기구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미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준비도와 학력 증진,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강조함으로써 NCLB법(No Child Left Behind)과 Even Start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계층 간 격차 해소의 보편주의 정책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다문화정책의 발전은 이민법의 변화 및 개정과 연관되어 있다.²⁹⁾ 이민정책 수행의 주체는 연방

29)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1952),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1986), Immigration Act(1999), USA-Patriot(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n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2001 등임.

정부로 매년 연방의회에서 이민정책을 심의한다. 이민정책업무는 법무부 이민청(Immigration and Nationalization Service; INS)에서 주관하던 것을 2003년 국토안보부로 이관하여³⁰⁾ 국토안보부 주관하에 국무부, 노동부, 법무부, 보건부, 교육부가 부처 간 연계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2005년 12월에 통과한 미국의 새 이민법은 기존 이민법의 규제성을 강화하여 이민자들을 준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는 형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안보위협에 책임을 이민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종열·황정원·노지영, 2008).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서비스는 연방정부 기금이 주정부의 예산으로 전달되어 각 주별로 해당 지역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교육과 다문화 이민정책 관련된 행정적·입법적 근간인 밑그림을 그리고, 각 주정부가 이를 토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미국 다문화가족 지원은 크게 언어교육, 시민소양교육, 의료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주의 주민구성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민자 사회로 구성된 미국은 다양한 공식·비공식 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해 언어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 하겠다.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적 소양은 비정부 민간단체³¹⁾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최소한으로 한다. 그 밖에 자체적으로 결성된 해당 민족 및 소수집단단체의 자원봉사기관이 이민자 정착 관련 언어교육, 시민교육,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1)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과 Even Start 운동

미국의 연방수준 다문화 정책으로, 낙오아동방지법이 소외계층과 소수민족, 다문화가족, 빈곤층 등의 학업성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우량 교육 기회를 선택하고 교육의 평등 수혜를 가능케 했다면, Even Start 운동은 구체화된

30) 이로 테러방지 및 국가안보를 주요 목표로 하는 제한적이고 규제적인 이민정책의 특성을 공고히 하였음.

31) 예로 Center for Civic Education 등

이민자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연방교육부의 초중등교육국이 가족중심의 읽기 쓰기 능력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제공하는 이민자 교육프로그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낙오학생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에 의하여 이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출발점 균등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 (the Migrant Education Even Start, MEES)을 통해 주 전체에서 가정 및 학교에 제공되는 가족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에 22개 이민 교육 지역의 332개 장소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민자 가족 부모들은 문해력 증대 교육과 부모교육을 받는 한편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0~7세 유아들에게는 보육·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2007~8년의 경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총 12,647명의 부모와 12,894명의 어린이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동 프로젝트의 특징은 0~7세까지의 이민자 배경을 가진 유아는 반드시 부모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및 보조자들이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 교육과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 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영어 및 모국어에 대한 문해 교육, 부모를 위한 교육, 유아교육 및 유치원 준비도 향상 교육 등이다.³²⁾

2) Head Start Program

Head Start Program은 1964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등 가정환경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들의 학습 준비도, 사회성 발달, 감성 발달 등의 결점을 보충하고, 학교생활에서의 공평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공동협력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 교육 등 교육 지원, 건강, 의료, 영양, 부모참여, 사회봉사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6. 호주

가. 배경 및 개요

호주는 초기 반인권적 원주민정책과 백호주의(예: 1901년 이민제한법(Immigrant

32) 자료: <http://www.cde.ca.gov/sp/me/mt/mess.asp>.

Restrict Act)을 통해 백인중심의 사회통합과 완전 동화의 동질성 확보를 정책적으로 고수하였으나, 2차 대전 이후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주민 수용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주의로 이민정책과 사회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는 비영국계 이민의 증가, 영국과의 관계 변화, 아시아권과의 경제적 교류 증대가 그 원인이기도 하였다.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1973년 이민부 장관이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 연설을 기점으로 주요 정책순위로 등장하였으며, 1978년 가보리(Gabally) 보고서³³⁾는 정부의 이민자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일련의 과정³⁴⁾을 통하여 2003년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전략적 방향을 「다문화 호주: 다양성을 통한 통합」으로 정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2003~2006년). 이로 다양성에 대한 추구하고 보장을 ① 모두의 의미, ② 모두에 대한 존중, ③ 모두에 대한 공평성, ④ 모두를 위한 이익추구로, 모든 호주인들에게 다양성의 보장과 추구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을 선언하였다.

오늘날 정책은 다양성과 사회통합 프로그램(The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Program)으로 구현된다. 이는 1998년에 확립된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모두가 모두에게 상호 존중, 공정한 대우, 참여 기회, 소속감, 이익 추구, 지역사회가 핵심 개념이다.³⁵⁾

다문화정책 총괄부처는 연방정부의 이민·시민권부(Dep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이며, 호주 다문화 자문위원회(The Australian Multicultural Advisory Council)를 두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추진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등으로, 연방정부와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36)

33) 가보리(Gabally) 보고서의 4대 원칙은 동등한 기회보장과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모든 사람은 편견없이 자신의 문화 보유,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마련,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입안되고 운영되어야 함에 관한(이용승, 2003. 오윤자, 2009 재인용).

34) 1979년 호주 다문화위원회(AIMA) 구성, 1989년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표, 2000년 다문화의 호주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임.

35) <http://www.immi.gov.au>

36) 무지개청소년센터(2009). '호주의 이주·난민청소년 정책' 일부내용을 발췌하였음.

2007~08년 연차보고서는 다문화 정책이 정착지원서비스, 언어지원서비스, 시민성 정책, 문화적 다양성 증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호주(The Diverse Australia Program; DAP)와 통합, 조화, 안정한 사회를 위한 실행계획(the National Action Plan to Build on Social Cohesion, Harmony and Security; NAP)을 운영한다. NAP는 2005~06년에 2001년 이후 소요와 폭력 등 세계와 호주 사회가 당면한 압박으로부터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예산을 5000불 이하, 5000불 이상 50,000불 이하로 구분하여 공모형식으로 관련 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으로 아동 가족 및 청소년 영역은 다문화 배경이나 성공한 이민자 멘토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생활기술과 지도력 향상, 난민이나 소년 지역사회 참여, 경찰시민 청소년 클럽 참여활동, 직장 및 사회참여 준비를 위한 활동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매년 Harmony Day 행사를 실시한다. 이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슈화하여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의 모색,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1999년 이후 매년 3월 21일은 Harmony Day로 정하고 지역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전국적인 다문화행사를 주관한다. 2010년의 주제는 자신을 표현하라(express yourself)이다. 이는 직장, 학교, 지역사회에서 행동, 실행, 패션, 음식 등을 통하여 다양성의 중요성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³⁷⁾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NAYSS(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는 호주에 도착한 지 5년 미만인 12-21세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젊은이 중 이미 노숙자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별적인 사건 지원 및 상담, 주택 및 재정 지원과 더불어 그들이 가족, 직장, 공동체 등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 공동체 서비스, 원주민 부처(FaCSIA)를 통해 전국적으로 14개 서비스 기관에 의해 지원된다. NAYSS의 지원을 받는 이주·난민청소년은 이후 재연계(Reconnect), 일자리 찾기, 고용과 훈련(Job Placement, Employment & Training, JPET)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함께 받도록 한다. 재연계 프로그램은 부랑청소년들이 가족과 커뮤니티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JPET는 재연계 프로그램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지만 부랑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독려한다는 점이 다르다.

37) <http://www.immi.gov.au>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민시민권부가 보호자가 되어 각 지역 아동복지기관에 서비스 위탁을 맡기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언어교육은 학생의 모국어 유지와 발달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모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부모의 학교 참여를 구체화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ESL New Arrivals)을 시행한다. 이는 ESL 선생님들과 다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주·난민청소년을 가르치는 일반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수업 커리큘럼 개발 및 수업방식 개발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 또는 시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일반 학교의 ESL 선생님들은 이주·난민 청소년을 일반 수업에 포함시켜서 영어교육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그들을 위해 분리된 ESL 수업을 만들기도 한다.

7. 일본

가. 배경 및 개요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가나가와현 지자체의 외국인 대책 중심의 종합계획안 마련에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극적, 폐쇄적 정책 수행의 기초를 유지하던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다문화 정책을 시작하여 2005년 범정부차원의 다문화공생을 내세우며 이주여성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2006년도 총무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민관,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가이드라인인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확정하게 된다. 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완비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인권이 보장되고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문화에 대한 일본인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김이선 외, 2006, 이종열 외, 2008 재인용).

이러한 기초에서 지방정부는 다문화 공생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 지침과

계획을 책정하고 해당 다문화가족 외국인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공생추진체제로 불리는 일본의 다문화 정책 전달체계는 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연계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넌스적 접근’을³⁸⁾ 통해 다문화정책의 주체를 광역단체, 사업자,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광역단체에는 다문화공생사회추진에 관한 조례, 종합적인 시책의 마련과 수행의 책임이 주어지고, 사업자는 공공기관 시책에 협력하는 역할을, 지역주민에게는 구체적 기여와 참여의 역할 분담이 부여되고 있다.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가와사키시의 사례를 보면 한일공생을 위한 교류센터를 설립하였고, 1991년 국제정책플랜을 계획하였으며, 1996년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시민대표자회를 설치하고, 2005년부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존중, 사회참여촉진, 자립지원을 기본이념으로 가와사키시의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재일한국, 조선인이 가장 많은 오사카시 역시 1992년 국제화추진지침과 1998년 외국국적주민 시책지침을 책정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아와타시 등의 지자체는 2005년 다문화 공생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추진 시책은 ①커뮤니케이션 지원, ②생활 지원, ③다문화공생지역 만들기, ④다문화공생추진체계 정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소극적·선언적 입장 하에서도 주로 언어 지원사업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 공생교육이 언어교육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 계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시책을 보면, 먼저 커뮤니케이션 지원정책은 지역정보의 다언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 학습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다중언어로 제공한다. 둘째, 생활지원정책은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 보건, 복지, 방재 등 일상생활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특히 교육영역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일본어 학습지원,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국제이해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을 위해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다. 셋째, 지역교류센터를 통해 지역생활정보 가이드 북 발행, 외국인 관련법·제도 안내, 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있다.

38) 과거 정부(government)의 행정 위주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컫는 말로, 정책을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수행을 각 행위주체간의 파트너십 관계로 봄. 즉 모든 행정주체들, 즉 정부, 위원회, 민간 간의 협력적 공동생산의 관점으로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협력관리체계(cooperative management system)(이종열, 2007)를 가리킴

8. 요약 및 정책시사점

각 국의 이주민 정책의 변화·발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외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 통합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자국의 노동력 충당 및 인구증가를 통한 국력 유지라는 자생적 이유에서 출발하였으며 ‘사회통합’이라는 상위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지원, 사회 적응 지원, 학습지원, 시민성 강화, 그리고 취업 및 자립의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의 전반적 다문화 정책의 추진과 전달체계,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의 정비와 함께, 담당부처간의 구분과 역할분담이 요구되며, 필요시 해당위원회의 발족도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점 부처가 마련되고, 이주 및 다문화가족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의 다문화 정책은 지속적인 법체계의 정비와 독립된 행정지원체계의 발전에 기반을 두어 나선형의 발전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족 유입, 취업, 국적, 교육 및 복지의 권리,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법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야 다문화 정책이라는 광범위한 업무체계가 거시적·미시적 의제들을 효율적으로 조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비정부 민간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단위의 정책추진으로 다양한 지역단위 사업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 해당지역 민간단체 및 주민들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는 미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시도가 요구된다.

둘째, 정책 적용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초기 적응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입국 이후 일정기간동안 초기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는 (가칭)한국식 통합지원프로그램 패키지를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찾아오는 이들 위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단편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문화 구성원에게 먼저 제공하도록 하며, 또한 프로그램의 수행과 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속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이에 대한 이수를 의무화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제요건으로 법제화 하는 안도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적용되어야 하겠다.

셋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이주민의 언어습득의 기제를 독려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한국어강좌를 제공한 후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안이 요구된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됨의 역할에 직면하게 될 다문화가족 결혼 이주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소통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의 제공과 함께 한국어검정의 요건을 정책에 반영하여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정착,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취업과 근로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는 지원내용이 언어지원과 학습지원 등 비경제적 내용에 국한되었으나 지원 내용을 외국의 정책에서 시사된 것처럼 궁극적으로 자립된 경제활동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교사 및 다문화 아동대상의 인력에 다문화 이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근로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동적 대상으로서의 다문화 아동이 아닌, 상호 소통하는 주체적 교류대상으로서의 다문화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 OECD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에의 지원은 이주자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초기 적응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제공시 이주민만이 아닌 해당가족 구성원 모두가 혹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요구된다.

여섯째,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교육실시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담당 인력과 교사의 양성 및 훈련이 단기 수급 요구에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을 전문영역으로 정비하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교육 교재교구 역시 한국어와 모국어 양식으로 수준별·대상자별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국 및 지역단위 거점 전달체계에서 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받지 못하는 교육과 상담, 레크리에이션 등 비교과활동 서비스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보상교육과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기능을 확대해가야겠다.

IV.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제4장에서는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 자료, 통계 및 심층면담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를 제시하였다.

1.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

가. 증가 추세

<표 IV-1-1>는 2010년 행정안전부 통계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수 이다.

〈표 IV-1-1〉 다문화가족의 자녀수 : 2010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			한국인 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 부모	
전체	121,935	105,502	98,531	6,971	16,433
만0세	15,248	15,001	14,209	792	247
만1세	15,377	15,096	14,367	729	281
만2세	14,448	14,120	13,321	799	328
만3세	9,871	9,572	9,048	524	299
만4세	7,912	7,613	7,153	460	299
만5세	7,026	6,667	6,180	487	359
만6세	5,894	5,503	5,112	391	391
만7세	5,516	5,033	4,641	392	483
만8세	5,393	4,733	4,366	367	660
만9세	5,303	4,484	4,129	355	819
만10세	4,911	3,910	3,576	334	1,001
만11세	4,847	3,762	3,459	303	1,085
만12세	4,617	3,355	3,122	233	1,262
만13세	3,482	2,168	2,009	159	1,314
만14세	2,760	1,350	1,208	142	1,410
만15세	2,446	1,033	896	137	1,413
만16세	2,317	806	668	138	1,511
만17세	2,401	694	576	118	1,707
만18세	2,166	602	491	111	1,564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1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10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는 105,502명이다. 이 중 6,971명이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다.

부나 또는 모가 외국인인 아동의 연령 분포는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수가 68,069명으로 64.5%를 차지한다. 특히 0~2세 영아가 남아서 44,217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의 43.7%이다. 영유아 비중이 높고, 특히 영아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아동은 결혼이민자 증가로 2015년에는 200,942명, 2020년에는 302,69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자녀들은 0~6세의 취학이전 연령대에 모여 있으나, 2020년이 되면 그들은 청소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민자 자녀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표 IV-1-2 참조).

〈표 IV-1-2〉 결혼이민자 자녀수 추계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99,684	114,560	130,411	147,144	164,698	183,002	201,942	221,405	241,263	261,450	281,943	302,692
0세	13,320	16,850	18,108	19,280	20,385	21,414	22,359	23,189	23,892	24,556	25,201	25,811
1세	15,501	13,018	16,468	17,698	18,844	19,923	20,929	21,853	22,664	23,351	24,000	24,631
2세	12,148	15,154	12,726	16,101	17,303	18,423	19,478	20,462	21,366	22,158	22,830	23,465
3세	8,495	11,876	14,814	12,442	15,741	16,916	18,012	19,043	20,006	20,889	21,664	22,321
4세	6,896	8,304	11,611	14,482	12,163	15,390	16,539	17,610	18,618	19,559	20,423	21,180
5세	5,777	6,742	8,118	11,352	14,158	11,891	15,047	16,170	17,218	18,203	19,124	19,967
소계	62,137	71,944	81,846	91,355	98,594	103,958	112,364	118,328	123,763	128,717	133,242	137,376
6세	4,688	5,683	6,633	7,987	11,169	13,930	11,700	14,805	15,910	16,941	17,910	18,816
7세	4,336	4,612	5,592	6,526	7,859	10,989	13,706	11,512	14,567	15,654	16,669	17,623
8세	4,415	4,266	4,538	5,502	6,422	7,732	10,813	13,485	11,327	14,333	15,403	16,401
9세	3,437	4,344	4,198	4,465	5,413	6,318	7,608	10,640	13,269	11,145	14,104	15,156
10세	3,329	3,382	4,274	4,130	4,393	5,327	6,217	7,486	10,469	13,056	10,966	13,878
11세	2,943	3,288	3,341	4,222	4,080	4,340	5,262	6,141	7,395	10,341	12,897	10,833
소계	23,148	25,577	28,576	32,833	39,336	48,636	55,305	64,069	72,936	81,470	87,949	92,707
12세	2427	2907	3248	3300	4171	4030	4287	5197	6066	7305	10215	12740
13세	1290	2398	2871	3208	3259	4120	3981	4234	5134	5992	7215	10090
14세	1050	1274	2368	2836	3169	3219	4069	3932	4183	5071	5919	7127
15세	834	1037	1259	2339	2801	3130	3179	4020	3884	4132	5009	5846
16세	695	831	1034	1254	2331	2791	3119	3169	4005	3870	4117	4992
17세	653	693	828	1030	1250	2322	2782	3108	3158	3991	3857	4102
18세	586	650	690	825	1026	1245	2314	2773	3097	3147	3977	3844
소계	7535	9790	12298	14792	18007	20858	23732	26433	29527	33509	40309	48741

자료: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표 IV-1-3>에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국제결혼부부의 자녀’와 ‘외국인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각각은 96,116명과 3,681명이고, 도합 99,797명이다.³⁹⁾

〈표 IV-1-3〉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2009

단위: 명

구분	전체	현재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배우자 자녀
계	99,797	96,116	3,681
중국 조선족	24,349	22,665	1,684
중국 한족	24,868	23,414	1,453
베트남	21,209	21,122	87
필리핀	10,417	10,343	74
일본	6,818	6,792	26
캄보디아	1,938	1,933	6
몽골	1,627	1,486	141
태국	1,617	1,589	28
미국	868	858	10
러시아	655	636	20
대만	441	418	23
인도네시아	434	432	2
중앙아시아	1,602	1,552	50
남부아시아	1,032	1,006	25
기타 동남아시아	250	250	0
기타 나라	1,671	1,620	51

자료: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재인용

〈표 IV-1-4〉에서 자녀수의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94.2%, 남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5.8%이다. 그리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은 중국 한족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다. 결혼이민자 수는 중국 조선족이 한족보다 수가 많으나, 자녀수는 한족이 더 많다. 그 까닭은 중국 조선족 출신 이민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출신 이민자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선족

39) 92,690명보다 7,107명 더 많다. 보건복지부 기초현황자료는 결혼이민자 1세가 아니면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파악한 반면, 행정안전부의 집계통계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의 중도입국자녀에는 19세 이상 성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표 IV-1-4〉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자 성 및 출신국 분포: 2009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체 결혼이민자 자녀	99,684	100
남성 결혼이민자 자녀	5,744	5.8
중국 조선족	1,505	1.5
중국 한족	1,010	1
미국	440	0.4
일본	353	0.4
기타	2,436	2.4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93,940	94.2
중국 조선족	22,860	22.9
중국 한족	23,834	23.9
베트남	21,117	21.2
필리핀	10,268	10.3
일본	6,480	6.5
캄보디아	1,923	1.9
몽골	1,597	1.6
태국	1,596	1.6
기타	4,265	4.3

자료: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재인용

나. 중도입국자녀 규모

1) 추정 1

이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 작성한 기초현황 자료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가 2009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과 법무부 체류외국인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명단에 기초한 것이다.⁴⁰⁾

40) 본 연구자들은 보건복지부(2009) 지원으로 추진한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때 작성한 표들 중 재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분석하였음.

이에 의하면 전 연령대 중도입국자녀수는 3,681명이고(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2009), 그 중 만 19세 미만자는 1,542명이다. 이들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 453명, 경기도 382명, 인천 94명 순으로 다수 분포한다(표 IV-1-5 참조). 중도입국자녀의 연령은 청소년 연령대가 그 이하 아동 연령대보다 오히려 많다(표 IV-1-6 참조).

중도입국자녀들 중 88.9%는 어머니가 결혼이민자들이다. 나머지 11.1%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청소년 연령대가 많다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아동 연령대가 많다(표 IV-1-6 참조).

출신국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을 합하여 8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 다수이고, 기타 몽골, 필리핀, 베트남 출신이 일부 있다. 중국 출신 중도입국자녀들은 청소년 연령대에 특히 치우쳐 있다(표 IV-1-7 참조).

중도입국자녀는 여자가 54.3%로 남자 45.7%보다 더 많다. 남녀 성별 차이는 없다(표 IV-1-7 참조).

〈표 IV-1-5〉 시·도별 중도입국자녀 분포: 2009

단위: 명, %

시·도	인원	비율
서울특별시	453	29.4
부산광역시	88	5.7
대구광역시	36	2.3
인천광역시	94	6.1
광주광역시	23	1.5
대전광역시	36	2.3
울산광역시	54	3.5
경기도	382	24.8
강원도	32	2.1
충청북도	58	3.8
충청남도	61	4.0
전라북도	66	4.3
전라남도	59	3.8
경상북도	50	3.2
경상남도	48	3.1
제주도	2	0.1
전체	1542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내부자료

〈표 IV-1-6〉 시·도 및 결혼이민자 성별 중도입국자녀 연령 분포: 2009

연령	지역																	결혼이민자 성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 도	강원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0	9	0	0	0	0	0	1	5	0	4	1	1	0	1	0	0	22	7	14	21
1	21	1	0	5	0	3	5	11	0	4	0	1	1	1	1	0	54	12	44	56
2	43	1	0	0	0	1	1	13	1	2	0	3	0	1	0	0	66	25	41	66
3	22	1	0	2	0	3	2	5	0	2	0	3	2	2	2	0	46	7	39	46
4	29	0	0	3	0	0	3	14	2	1	0	2	1	2	1	0	58	9	48	57
5	18	2	3	4	0	0	2	18	0	0	1	2	2	5	1	0	58	10	48	58
6	24	2	0	1	0	0	2	10	0	0	4	2	1	3	3	0	52	10	42	52
7	19	3	0	5	0	3	0	14	2	0	2	4	0	3	4	1	60	12	47	59
8	18	3	1	1	0	0	3	10	3	4	4	3	2	0	3	0	55	6	48	54
9	15	2	0	1	1	1	3	15	2	0	3	2	4	2	4	0	55	5	49	54
10	22	4	1	5	2	1	3	19	1	3	5	5	4	2	2	0	79	12	66	78
11	13	4	1	5	0	1	4	20	1	2	1	2	4	0	1	1	60	7	52	59
12	10	3	2	2	4	2	5	16	2	4	1	5	4	2	2	0	64	3	59	62
13	18	2	1	2	0	2	0	29	1	2	3	3	1	2	2	0	68	4	63	67
14	13	4	4	0	3	2	2	22	0	0	3	4	5	2	2	0	66	3	63	66
15	22	12	1	5	2	3	1	23	2	2	6	6	1	4	5	0	95	4	91	95
16	18	8	2	6	4	1	0	30	0	10	3	3	3	3	5	0	96	10	87	97
17	26	12	5	11	3	2	8	30	2	6	7	5	7	5	3	0	132	6	126	132
18	37	11	14	18	3	4	6	28	8	3	9	5	7	4	3	0	160	6	153	159
19	56	13	1	18	1	7	3	50	5	9	8	5	10	6	4	0	196	13	185	198
계	453	88	36	94	23	36	54	382	32	58	61	66	59	50	48	2	1542	171	1365	1536

〈표 V-1-7〉 2009년도 연구성과 요약

연령	지역														성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동남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기타	기타										
계	555	671	10	22	61	51	52	16	2	3	20	30	6	8	24	1531	423	502	925	
(비율)	(36.3)	(43.8)	(0.7)	(1.4)	(4.0)	(3.3)	(3.4)	(1.0)	(0.1)	(0.2)	(1.3)	(2.0)	(0.4)	(0.5)	(1.6)	(100.0)				
0	3	12	1	0	1	1	0	2	0	0	0	0	0	0	2	22	6	8	14	
1	8	32	1	1	1	8	2	0	0	0	0	1	0	0	2	56	18	25	43	
2	11	36	1	0	3	2	5	1	0	0	3	0	0	0	4	66	29	21	50	
3	13	21	0	0	2	2	5	0	0	0	1	1	0	0	1	46	19	22	41	
4	13	31	0	0	2	2	3	1	0	0	2	0	0	0	3	57	22	21	43	
5	11	32	0	2	3	3	1	0	0	0	3	0	2	0	1	58	21	18	39	
6	16	25	0	1	1	1	2	1	0	0	0	2	1	1	1	52	22	15	37	
7	20	25	0	1	2	1	6	0	1	0	0	0	1	0	1	58	20	17	37	
8	21	21	0	0	3	1	4	0	0	0	1	1	0	0	2	54	19	16	35	
9	21	23	0	3	2	0	1	1	0	0	1	0	0	1	2	55	12	20	32	
10	29	32	0	1	2	4	3	1	0	1	0	4	1	0	0	78	27	24	51	
11	22	17	0	2	2	2	4	0	1	0	1	5	1	0	2	59	17	15	32	
12	21	25	0	2	2	5	3	1	0	0	1	0	0	1	0	61	16	26	42	
13	30	24	2	0	2	1	2	1	0	1	1	1	0	1	0	66	16	18	34	
14	27	25	0	1	2	2	2	2	0	0	1	2	0	0	1	65	15	22	37	
15	27	50	1	2	5	2	2	1	0	0	0	2	0	0	0	95	24	33	57	
16	41	37	1	2	3	2	3	0	0	0	3	4	0	0	0	97	22	26	48	
17	51	61	0	1	11	2	0	1	0	0	1	3	0	0	1	132	22	45	67	
18	86	48	2	0	5	7	3	1	0	1	1	3	0	0	0	157	37	43	80	
19	84	94	1	3	7	3	1	2	0	0	0	1	0	0	1	197	39	67	106	

2) 추정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대상자

한편,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 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한 17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⁴¹⁾ 중 파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센터가 65개소로 40.6%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9개소로 43.1%이었다. 즉, 26개소만이 파악한 수를 보고하였다.

총 2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파악된 16개 시·도 중도입국 자녀수는 총 1,381명이었으며, 그 중 강원지역이 658명, 경북지역이 25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은 대부분 100명 이내로 파악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4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세 이상 자녀가 374명, 초등학생이 292명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미재학 청소년은 100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표 III-1-8 참조).

이렇게 파악된 중도입국자녀수는 전체라기보다는 중도입국자녀가 많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대상으로 파악한 규모이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소한 1,0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III-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파악한 중도입국 지역별 자녀수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체	58	33	7	29	13	4	5	89	658	40	29	24	36	257	84	15	1,381
미취학아동	6	6	0	6	0	2	0	10	197	16	15	0	3	155	50	6	472
초등학생	22	3	4	2	1	2	3	14	127	7	10	4	5	63	20	5	292
중학생	14	2	0	6	3	0	0	11	33	7	4	2	2	5	3	1	93
고등학생	6	1	2	2	1	0	0	11	9	1	0	2	4	8	5	0	52
미재학청소년	2	1	1	10	0	0	1	13	20	5	0	11	13	20	1	0	98
20세이상	8	20	0	3	8	0	1	30	272	4	0	5	9	6	5	3	3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조사에 응답한 센터별로 파악된 인원중 1명~5명 미만인 경우가 다수이고, 5명 이

41) 171개소 중 한 개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음.

상이하는 응답한 한 센터는 소수에 불과하다. 중도입국 자녀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센터는 미취학은 10개소, 초등학생은 8개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5개소 3개소이고, 중도입국 미취학 학령기 청소년과 20세 이상인 자녀수가 5명 이상이라는 센터가 각각 6개소, 4개소이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연령 특성별 센터가 파악한 중도입국자녀 규모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없음	1명이상~ 5명미만	5명이상~ 10명미만	10명이상~ 50명미만	50이상~ 100명미만	100명 이상	미파악	계(수)
미취학	43.1(79)	10.0(16)	2.5(4)	1.3(2)	1.3(2)	1.3(2)	40.6(65)	100.0(170)
초등학생	30.0(58)	24.4(39)	1.9(3)	2.5(4)	0.6(1)	-	40.6(65)	100.0(170)
중학생	36.3(68)	20.0(32)	2.5(4)	0.6(1)	-	-	40.6(65)	100.0(170)
고등학생	41.3(76)	16.3(26)	1.9(3)	-	-	-	40.6(65)	100.0(170)
미취학 학령기 청소년	42.5(78)	13.1(21)	2.5(4)	1.3(2)	-	-	40.6(65)	100.0(170)
20세 이상	33.8(64)	22.5(36)	1.3(2)	1.3(2)	-	0.6(1)	40.6(65)	100.0(1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2. 영유아 자녀 발달·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가. 영유아 발달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 특성은 국내 자녀와 비교하여 인지,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인지발달

첫째, 유아 인지발달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지적 발달은 국내 자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정의 연구(2007)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평균적으로 언어 지능이 동작 지능보다 낮았고, 임상수준으로 나타난 다문화가족 자녀가 유아의 경우 최저 11.2%에서 최고 25.8%, 경계선 수준의 경우 유아는 최저 31.5%에서 최고 58.4%로 보고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지능이 우리나라 일반아동의 언어 지능보다 낮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출생이후부터 경험하게 되는 언어 환경의 부적절성 때문이라 하겠다. 아버지나 시부모 등 가족들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기 바라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기 바란다. 그러나 입국하여 가사와 임신 출산 등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바쁜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간의 언어적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와의 대화도 제약을 받는다. 자녀와 외국인 부모는 언어적인 상호 작용이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경우에서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언어 상호작용의 제약은 발달의 자극이나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언어발달

둘째, 언어 발달은 6~7세 다문화가족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인쇄물 개념검사⁴²⁾를 한 전해정(2007)의 연구에서는 11.42가 나왔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 만 6세 아동이 19.19(표준편차 3.17)(김선희, 2003)은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지연(2005), 신유정(200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서, 즉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아동들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유아의 인쇄물 개념 인식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만 5세 116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인쇄물 개념검사를 실시한 정지연(2005)의 연구에서는 인쇄물 개념 검사 점수가 14.92(표준편차 2.82)로 나왔고, 만 5세 100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유정(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13.56(표준편차 2.81)이었다.

심층면접 결과 부모들이 인식하는 영유아의 인지나 신체, 사회성 발달은 또래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나, 언어발달은 또래에 비해 늦는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발음이 또래에 비해 부정확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대화할 때 어머니 나라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화하게 함으로써 언어습득이 늦어지고 이중언어 사용 능력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두세 단어의 짧은 단답형 대화만 주고받기

42) 인쇄물 개념 인식이란 인쇄물의 의미 구성에 필요한 인지적, 언어적 능력일 뿐 아니라 인쇄물이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를 아는 상위 언어적 인식이며, 문해 출현 능력 중 하나로 '읽기를 위한 학습'과 '학습을 위한 읽기'에 기초가 된다(김선희, 2003). 인쇄물 개념과 언어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선희(2003)의 결과에서도 아동의 인쇄물 개념 총점과 어휘력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읽기 및 읽기를 학습하는데 결정적인 능력이다(전해정 2007).

때문에 대화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느낌의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발음도 어머니의 발음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서 어머니들이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 아이는 쫓 늦는 거 같아요. 아니 언어. 보면 기본적으로 4개 단어를 얘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선생님이. 근데 그걸 아직 못해요. 그래서 치른 받고 있어요. (사례 1)

또래 애들 많이 모여 있어요. 많아 봤자 한 달 두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개네는 기본적으로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신발장에 엄마 신발 가져와 하면 엄마 신발도 가져오고, 정리 정돈 해야지 하면 장난감도 수업 끝나고 정리 정돈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하는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하고... (사례 3)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어머니 가정의 경우 어머니와는 어머니 모국어로 대화하고 아버지나 조부모와는 한국어로 대화하게 함으로써 이중 언어를 배우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 집은 우리 아들한테 중국 사람이라서 아들한테 중국말만 쓰고 있어요. 우리 시아버님, 남편은 한국말 써요. 이중 언어해요. 우리 남편 지금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애한테 한국말 자주 가르쳐주면 애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모국어 하면 되요. 애가 언어 발달 늦어도 나중에 좋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요. (사례 2)

3) 정서 사회성 발달

셋째, 사회 정서적 발달은 ‘성인 또는 또래와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Sarason, 1981, 전해정, 2007 재인용)’을 말하며 사회적 유능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혜정 연구(2007)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유아기에 있는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긍정-친사회성이 3.72(표준편차 .89), 분노-공격적 행동이 4.76(표준편차 1.11), 그리고 불안-위축된 행동이 4.57(표준편차 1.08)로 나타났다⁴³⁾. 국제결혼가정

43) 사회성의 수준이 높음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empathy)하며, 이타심(altruism)을 보이고, 돕는 행동(helping behavior)을 많이 함을 의미하며 이를 긍정-친사회적 행동이라 하고, 반면에 전

유아기 자녀가 우리나라 일반 아동보다 분노-공격적 행동과 불안-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유아기 때부터 적절한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해 지도해야 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해당 문화의 대인관계 문화나 해당문화의 일반적인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교사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유아기 자녀가 취학 전 즉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생활의 경험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수용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 부모들은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가족들간 애착은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정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한국인 아버지의 경우 생계문제로 제대로 자녀를 돌봐 주거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애기 아빠는 애기랑 같이 놀면, 오래는 몰라도 조금만 10분 15분 정도만 같이 놀고 일하러 가고.. (사례 4)

아이는 하루 종일 저랑 있다 보니 안 떨어지려고 해요..저랑은 좋은데..밖에 나가도 내맘 찾고... (사례 5)

그러나 일부는 결혼이민자는 나이가 어리고 주위에 조언이나 정서적 지원을 해줄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우울증 등을 겪고, 이에 따라 자녀도 정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힘들었을 때는 우울증도 걸리고 참 힘들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상담을 하고 집에 방문해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회복지관 연계를 해줘서 거기서 좋은 맘 부모 교육이란 걸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야 겠구나. 너무 옛날에는 어떻게 애를 다루지 몰랐는데 지금은 완전히 알고 상호작용도 잘 할 수 있고요 많이 안정상태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례 12)

반적으로 화가 나 있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을 표현하며, 또래에게 공격적이고 성인에게 적대적 행동으로 집단 내 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 이를 분노-공격적 행동이라고 하며,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어, 우울하거나 집단에서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경우 이를 불안-위축행동이라고 함(전혜정, 2007).

나. 영유아 자녀 양육

1)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개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전반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을 ①기관 보육·교육서비스, ②개인양육지원, ③개인 사교육 이용의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의 이용률 37.3%, 유치원 이용률 16.1%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대체로 유치원보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 경향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특기/보습 학원, 문화센터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전무하거나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 일반가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IV-2-1〉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다문화가족	일반 가정	X ²
기관			
보육시설	37.3	38.1	0.03
유치원	16.1	18.7	0.49
반일제이상 학원	0	2.5	2.99
특기/보습학원	1.7	6.5	4.48*
지역아동/주민센터	0	0.8	0.95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0	7.0	8.89***
개인양육지원			
동거조부모	19.5	7.2	24.02***
비동거조부모	3.4	13.8	10.38***
동거친인척	0	0.5	0.60
비동거친인척	0	1.7	2.05
기타비혈연	0.9	1.5	0.34
개인 사교육			
교재교구방문	0	3.4	4.17*
예체능방문	0	0.6	0.69
(방문)학습지	7.6	24.3	17.45***
(수)	(118)	(2,749)	

주: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한편 보육·교육 시설의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구분 없이 ‘둘 다 보내겠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에 보내겠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조사되어 이용현황과 의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개인양육지원의 이용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경우 ‘비혈연’에 의한 돌봄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 혈연 중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높아 ‘동거 조부모’ 19.5%로 일반 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동거 조부모’에 의한 양육지원은 일반 가정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3세대 주거에 의한 ‘동거’ 조부모 양육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인 사교육 서비스 중 ‘교재교구방문’과 ‘학습지’와 같은 개인 사교육의 이용률이 일반 가정에 비해 낮게 나타나 사교육 이용에 의한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특기/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이용률에서도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정의 영유아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용 빈도 가운데에서도 개별적인 교육 서비스 미이용으로 인한 교육의 격차가 향후 취학전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된다.

2) 기관 미이용시 양육자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8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기타가족이 10.8%, 봐주는 사람이 없어 아이혼자 지내는 경우가 4.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가 전체의 92.1%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제일 높았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몽골 출신 이민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11.1%를 보였고, 다음은 중국 한족 출신 등이 5.5%이었다. 심지어 선진국인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이민자의 11%가 아이 혼자 지내도록 하고 있었다(표 IV-2-2 참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 주 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는 여러 가지 도움과 어린 자녀들의 언어습득에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를 24시간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가 서툴러서 주위에 도움을 구하거나 다양한 교육정

보를 나눌 수 있는 인적 인프라나 지원처가 없을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기 처음에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기저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유도 타 먹인 적이 없고... 다른 생활에 바쁘니까 물어봐도 잘 대항해주고, 저랑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자료 찾고 하는데. 아예 할 줄 모르는 엄마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례 1)

〈표 IV-2-2〉 결혼이민자 연령 및 학력별 기관 미이용 영유아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없음 (아이 혼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파출부· 도우미	이웃·친구 (아이만 보는 사람)	기타	계(수)
전체	4.1	82.3	10.8	0.6	0.4	1.7	100.0(18,582)
지역							
동 지역	4.1	81.6	11.2	0.7	0.4	2.0	100.0(12,141)
읍·면 지역	4.2	83.6	10.1	0.6	0.3	1.3	100.0(6,440)
출신국별							
중국 조선족	3.4	79.8	14.0	0.5	0.5	1.8	100.0(3,151)
중국 한족 등	5.5	76.7	14.2	0.6	0.5	2.4	100.0(3,651)
베트남	4.4	83.6	9.7	0.5	0.3	1.5	100.0(6,748)
필리핀	2.1	85.8	9.2	0.3	0.4	2.3	100.0(1,307)
몽골	11.1	76.5	10.2	0.0	0.0	2.2	100.0(323)
태국	3.0	89.6	4.8	1.7	0.9	0.0	100.0(231)
캄보디아	2.7	88.5	7.5	0.3	0.5	0.4	100.0(930)
일본	2.3	91.4	5.4	0.3	0.4	0.1	100.0(897)
북미 등	1.1	77.6	12.3	7.5	0.4	1.1	100.0(268)
기타	3.7	84.9	7.6	1.3	0.0	2.4	100.0(1,074)
체류기간별							
1년 미만	2.2	85.2	9.5	0.1	0.0	2.8	100.0(671)
1~2년 미만	4.1	85.0	9.2	0.3	0.1	1.2	100.0(4,203)
2~5년 미만	4.3	82.3	11.0	0.6	0.3	1.5	100.0(8,881)
5~10년 미만	3.2	79.9	11.5	1.2	0.8	3.3	100.0(2,681)
10년 이상	3.3	79.0	14.3	0.6	0.8	2.0	100.0(882)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양육 지원 및 분담

남편과의 가정 내 육아 분담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체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부가 함께 한다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부

인이 한다는 응답도 17%가 넘지만, 일반 가정에 비해서는 낮아서, 부부간 가사 분담은 일반가정보다 다소 잘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2-3〉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현황

단위: %

구 분	다문화가족	일반 가정
남편과의 육아 분담		
전적으로 부인이	17.4	23.2
대체로 부인이	43.5	43.9
부부가 함께	33.9	28.3
대체로 남편이	0	0.5
전적으로 남편이	0.9	0.1
부부의 다른 사람이	4.3	3.9
계(수)	100.0	100.0
X ² (df)	10.20(5) [#]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시부모	22.2	19.8
친정부모	5.6	41.4
남편형제자매	25.9	5.8
부인형제자매	5.6	16.3
이웃	33.3	15.0
기타	7.4	1.7
계(수)	100.0	100.0
X ² (df)	74.91(5) ^{***}	
육아관련 지식 및 조언을 구하는 곳		
집안어른	39.3	23.0
친구 동료	30.8	32.0
육아관련 사이트	8.5	32.3
육아관련 전문가	11.1	3.3
관련 서적	2.6	7.9
기타	3.4	0.4
없음	4.3	1.0
계(수)	100.0	100.0
X ² (df)	87.59(6) ^{***}	

주: *** p <.001, # p <.1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현재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시부모와 남편의 형제자매 등 시댁 식구가 48.1%로 이들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이웃이라는 응답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임에도 친정부모가 도움을 준다는 비율이 5.6%로 소수이지만 친정부모의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자녀를 키우면서 육아관련 지식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집안 어른과 친구/동료가 가장 높아서 시댁 가족과 지역내 인적 네트워크가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양육지원체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 비해 육아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서적을 이용한 도움의 이용률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가족 내 지원 강화와 친구 및 자조 모임과 같은 인적지원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동시에 이러한 오프라인 교류와 활동이 온라인상으로도 확대되어 접촉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다. 육아지원기관 이용현황

1) 육아지원기관 이용 개요

2009년 12월 보육통계에 의하면 영유아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26,412명이다. 이는 영유아 수 68,069명의 38.8%이다.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아동의 비율이 41%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다소 낮다. 이는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영아에 집중 분포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연령별로는 이용률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립주체별로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26,412명 중 법인이 13%, 국공립이 11%로 나타났다.

〈표 IV-2-4〉 지역 및 설립주체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직장
				법인외	민간개인			
전국	26,412	2,855	3,438	1,697	13,234	6	5,103	79
대도시	8,259	1,130	437	280	4,642	5	1,736	29
중소도시	7,498	472	376	267	4,087	1	2,277	18
농어촌	10,655	1,253	2,625	1,150	4,505	-	1,090	32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2009

한편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57.0%로 절반이상이었으며, 이용자 중 57.5%는 어린이집, 40.0%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의 출신 국별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태국으로 70.5%이었고, 가장 낮은 출신국은 캄보디아로 27.4%이었다. 이는 가장 최근에 많이 입국하고 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이며, 이들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너무 어려서 시설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체류기간별 차이도 자녀 연령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는 전체 기관 이용률은 최소 48.2%에서 최대 62.7%까지인데, 자녀 연령별 분포가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기관 이용 비율이 낮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표 IV-2-5〉 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계(수)
전체	(50,165)	57.0	40.0	57.5	1.2	1.4	100.0(28,277)
지역별							
동부	(32,902)	57.3	40.0	57.0	1.3	1.7	100.0(18,680)
읍·면부	(17,263)	56.3	39.8	58.4	0.9	0.9	100.0(9,597)
출신 국별							
조선족	(10,986)	67.0	37.9	59.2	1.3	1.5	100.0(7,299)
한족 등	(9,950)	56.1	53.7	43.6	1.0	1.7	100.0(5,496)
베트남	(15,418)	48.0	26.9	71.4	0.9	0.9	100.0(7,290)
필리핀	(4,265)	66.5	50.0	47.1	1.5	1.4	100.0(2,811)
몽골	(849)	56.9	54.9	43.6	1.1	0.4	100.0(475)
태국	(872)	70.6	51.9	44.9	2.1	1.1	100.0(613)
캄보디아	(1,432)	27.5	31.7	63.6	1.6	3.1	100.0(385)
일본	(2,373)	59.7	38.6	59.7	0.3	1.4	100.0(1,413)
북미 등	(745)	59.1	49.4	44.4	4.1	2.0	100.0(441)
기타	(3,278)	63.1	37.0	60.0	1.2	1.8	100.0(2,055)
체류기간별							
1년 미만	(1,241)	34.8	51.9	41.0	0.2	6.8	100.0(424)
1~2년 미만	(6,163)	20.2	45.2	49.9	1.3	3.6	100.0(1,223)
2~5년 미만	(20,506)	50.4	31.9	66.0	1.0	1.1	100.0(10,206)
5~10년 미만	(14,082)	78.4	44.7	53.2	1.1	1.0	100.0(10,980)
10년 이상	(4,383)	76.9	44.8	51.4	1.7	2.0	100.0(3,335)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V-2-6〉 시·도별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전체	(50,167)	57.0	40.0	57.4	1.2	1.4
서울	(7,731)	60.5	39.0	57.2	1.7	2.2
부산	(2,395)	55.0	42.4	55.2	1.3	1.1
대구	(1,838)	57.9	37.9	60.1	1.0	0.9
인천	(2,953)	52.0	38.7	59.1	1.0	1.2
광주	(1,220)	62.7	39.4	58.1	0.7	1.8
대전	(1,258)	56.8	42.1	56.3	0.7	1.0
울산	(1,167)	48.2	39.6	57.1	0.7	2.5
경기	(10,736)	55.6	41.8	54.8	1.5	1.9
강원	(1,782)	53.3	42.6	55.9	1.1	0.4
충북	(1,859)	55.8	41.5	57.5	0.6	0.4
충남	(3,453)	60.8	34.1	64.2	1.0	0.8
전북	(2,529)	60.8	42.9	55.4	0.9	0.8
전남	(2,950)	60.7	47.2	50.8	1.1	0.8
경북	(3,522)	55.8	35.2	63.1	0.8	0.9
경남	(4,128)	54.1	38.9	58.6	1.0	1.5
제주	(646)	55.1	30.0	68.6	0.6	0.8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최초 이용 이유

<표 IV-2-7>은 아이가 기관 이용을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2-7〉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다문화가족	일반가정	X2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18.8	12.6	3.82 [#]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0.8	0.7	-
특기교육을 위해	0	0.3	-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13.6	26.4	9.74 ^{**}
사회성 발달을 위해	14.4	14.6	0.00
놀이상대가 없어서	7.7	7.1	0.07
기타	0	0.2	-
(수)	(118)	(2,749)	

** p<.01, # p<.1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다문화가족의 경우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의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움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두 집단 간 보육·교육 기관의 최초 이용 동기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대부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른 한국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일단 또래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놀다보면 고함도 지를 수 있고 그래서 뭘도 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얹어하고 있는 거 보다는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은 뭘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1)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잘 생활하며, 또래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왕따나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대부분 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고, 특히 일반가정 부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아동들이 어려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지만 일반가정 부모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은 생활수준이 낮은 가정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은 꺼려한다는 것이다.

저는 어린이집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히 집에서 있지말 댁이 조마조마해요. 애기가 얹어가 외국 사람이라 가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댁이 잘 알지니까 친구들이 구박하지 않을까 걱정이. 친구들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할까봐 . 지금은 마음이 조금 놓였는데 그래도 앞으로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걱정이예요. (사례 8)

어느 지역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에 입학은 시켰는데 보니까 50프로가 다문화가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국 엄마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대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한국 애들이 10명이고 그중에 한명 두 명이 다문화가족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 애들이 다섯명 여섯명 있는데 한국애가 한두 명이면,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사례 2)

3) 육아지원기관 미이용 이유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를 보육시설·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2세 이하 영아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가 44.4%이고, 보육료 부담이 되어서가 13.7%,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가 13.3% 등이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차이를 살펴보면,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는 베트남과 중국 한족 등이 각각 52.5%, 52.3%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서는 중국 조선족이 22.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는 응답은 북미·서유럽 출신이 40.2%로 가장 많았다(표 IV-2-8 참조).

〈표 IV-2-8〉 제 특성별 미취학 자녀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안심이 안 되어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보육시 간이 안 맞아서	보육료 부담 되어서	입학거부, 차별, 놀림 받을까봐	기타	계(수)
전체	13.3	3.1	44.4	2.2	13.7	0.7	22.7	100.0(19,863)
지역별								
동 지역	14.4	1.5	41.7	2.2	16.4	0.6	23.2	100.0(12,961)
읍·면 지역	11.2	6.0	49.5	2.2	8.7	0.7	21.7	100.0(6,904)
출신국별								
조선족	14.2	2.0	33.9	3.1	22.0	0.5	24.3	100.0(3,340)
한족등	9.5	1.1	52.3	2.8	13.3	0.3	20.9	100.0(4,073)
베트남	12.2	4.1	52.5	2.1	10.7	1.0	17.4	100.0(7,414)
필리핀	19.7	4.6	27.3	1.6	15.5	0.3	31.0	100.0(1,254)
몽골	7.1	5.0	39.4	1.5	16.5	0.6	30.0	100.0(340)
태국	15.5	3.5	36.3	0.0	17.7	0.0	27.0	100.0(226)
캄보디아	15.5	5.0	44.3	2.1	8.4	0.3	24.4	100.0(915)
일본	12.2	2.1	30.0	0.3	13.3	0.1	42.0	100.0(919)
북미 등	40.2	6.2	25.0	0.0	2.9	0.0	25.7	100.0(276)
기타	18.6	2.0	33.2	1.4	13.7	1.4	29.6	100.0(1,107)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층면접에서 어머니들은 자신들은 자녀들의 언어습득을 위해 24개월부터라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나 시부모는 36개월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키우길 원한다고 한다. 어머니들은 너무 늦게 어린이집에 보내 자녀가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왕따나 무시를 당할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다.

36개월 때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 안에서든 뭘따 당해요. 갔는데 멍청하게 자기 신발도 정리 못하고 선생님 뭘도 잘 못 알아듣고, 자기 뭘도 못하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렇게 텅까봐 걱정이예요. (사례 1)

4) 이용 비용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의 현황을 지불비용과 정부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에서 영유아 자녀에게 지불하는 가구 당 한 달 평균 보육·교육 비용은 12만4천원으로 일반가정의 1/3수준이었으며, 자녀 1인당 비용으로도 마찬가지로 일반가정의 1/3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 대비 전체 보육·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0%로 계산되었으며,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보육·교육비 부담은 5점 평균 3.45로 일반가정의 체감도와 비교할 때 다소 낮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낮아서 정부 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비용 지원 수혜율은 약 90%로 파악되었고, 비용 감면액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보육·교육 비용의 80%를 감면받아 전체 보육료의 20% 미만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9〉 보육·교육 비용 및 지원 현황

구 분	다문화가족	일반가족	t/X ²
	평균	평균	
가구 보육·교육 ^{주)} 총비용	124.20	370.28	-6.92***
월평균 보육·교육 ^{주)} 비용(천원)	71.98	201.73	-5.77***
월평균 정부지원금(천원)	90.66	57.26	3.83***
월 순수 보육·교육료(천원)	63.45	147.87	-5.05***
특기교육비(천원)	38.10	51.19	-1.95 ⁺
특별활동총수(개)	1.27	1.55	1.24
기관비용부담 정도(5점척도)	3.45	3.64	1.85 ⁺
월소득대비 보육·교육료 비율(%)	10.24	14.09	-3.48***
기관이용보육·교육비감면여부(%)	89.5	55.7	27.29***
비용감면율(%)	81.7	43.5	-

주: 기관이용, 개인양육지원, 개인(사)교육 3가지 유형의 보육·교육 이용비용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5) 지원정책 인지 및 만족도

정부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3점미만의 낮은 수치임에도 일반가정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육·교육 기관에서 하는 특별활동의 총 수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정의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2-10 참조).

한편, 다문화가족의 정부 보육·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차등비용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표 IV-2-11 참조).

양육수당 지급 시 자녀를 집에서 직접 돌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집에서 돌보겠다는 비율이 10%미만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이를 통한 양육지원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V-2-12 참조).

〈표 IV-2-10〉 정부 보육료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계(수)	X ²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가족	16.2	27.4	28.2	16.2	1.7	10.3	100.0(118)	17.77(5)*	2.92	1.44
일반 가정	16.0	38.9	29.4	10.7	0.7	4.3	100.0(274)		2.54	1.1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표 IV-2-11〉 정부 지원정책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차등비용지원	기본보조금	만5세무상	두자녀감면	장애아무상	계(수)
다문화가족	9.3	84.1	49.1	50.9	45.7	24.6	100.0(11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표 IV-2-12〉 양육수당 지급시 기관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에 계속 보냄	집에서 돌봄	(수)
다문화가족	43.5	9.1	(11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마. 애로사항 및 요구

1) 자녀 임신, 출산 관련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출산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그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비율은 22.2%이었고 나머지 77.8%는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의 어려움으로는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출산비용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후에는 산후조리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지역별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79.3%로 도시지역의 76.8%에 비해서 2.5%포인트가 많았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산후조리 등이 높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출산비용 부담,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 부족 등이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어려움이 없었음	22.2	23.2	20.7
어려움이 있었음	77.8	76.8	79.3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13.9)	(12.8)	(14.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5.6)	(17.5)	(12.0)
(출산비용부담)	(10.8)	(11.1)	(11.7)
(건강문제)	(4.6)	(4.2)	(4.7)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부족함)	(4.1)	(1.8)	(8.0)
(산후조리)	(24.2)	(25.0)	(23.4)
(기타)	(4.6)	(4.4)	(5.0)
계(수)	100.0(751)	100.0(452)	100.0(299)
χ^2		21.315**	

주: ** P < .01

자료: 김유경외(2008).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임신·출산할 경우 가장 필요한 도움은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욕구가 2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산후조리, 경제적 지원, 아이의 건강 상담 등 시기별 단계별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산후조리,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

한 교육, 본국 가족이 돌보아주는 것 등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아이의 건강 상담, 경제적 지원, 본국 음식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IV-2-14 참조).

〈표 IV-2-14〉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아무런 도움 필요 없음	9.4	9.8	8.2
출산 후 본인의 건강 상담	4.3	4.7	4.2
아이의 건강 상담	10.9	10.8	11.8
산후조리	14.0	15.5	11.8
경제적 지원	12.1	11.5	13.4
출산 돌보미 지원	8.9	8.4	9.5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24.4	24.9	22.9
본국음식	6.1	4.9	8.25
본국가족이 돌보아주는 것	7.6	8.4	5.8
기타	2.4	1.2	4.2
계	100.0(954)	100.0(574)	100.0(380)
χ^2		19.089 [*]	

주: ** P < .01

자료: 김유경외(2008).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족의 경우 임신과 출산 때는 본국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거나 본국으로 출국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나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입덧할 때 그때는 많이 남편이랑 서로 이해 못해서 이혼할까 그 정도 생각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서로 생각해 보고 여기에 와서 임신까지 했으니까 말아야죠. 자기나라 가서 언니 옆에 있으니까 애기 어떻게 낳는 거 어떻게 돌보는 거 모르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즈베크로 갔어요. 거기 가서 아기 낳고 아기 5개월 때 이리 왔어요. 거기서 모든 정보 우리 나라말로 있으니까 아기들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사례 11)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표 IV-2-15>과 같다. 동 비율은 동지역 35.1%, 읍·면 46.9%로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11.8% 높았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40.1%로 남성보다 필요도가 2.1배 높았다. 또한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 66.3%, 1~2년 미만 58.4%이며 2~5년부터는 41.6%로 기간이 짧을수

록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필요도가 높은 방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IV-2-15〉 다문화가족 특성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한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전체	27.0	11.4	10.5	15.3	35.8	100.0(112,811)	3.22
지역							
동 지역	24.4	10.7	9.7	16.1	39.1	100.0(81,573)	3.35
읍·면 지역	33.7	13.2	12.6	13.3	27.2	100.0(31,238)	2.87
성							
여성	28.4	11.7	10.7	15.0	34.2	100.0(103,172)	3.15
남성	11.4	7.7	8.6	19.0	53.3	100.0(9,639)	3.95
체류기간							
1년 미만	51.6	14.7	10.1	7.6	16.1	100.0(10,105)	2.22
1~2년 미만	43.1	15.3	12.0	11.5	18.2	100.0(14,521)	2.46
2~5년 미만	29.0	12.6	11.9	15.2	31.3	100.0(37,378)	3.07
5~10년 미만	16.1	9.2	10.1	18.9	45.7	100.0(26,175)	3.69
10년 이상	8.3	5.4	6.6	18.6	61.1	100.0(16,082)	4.19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자녀 양육 방식 관련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을 무엇인지 7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평균점수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양육비 지출’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녀학습지도’이고, 상대적으로 ‘자녀의 외모 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에의 어려움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영아기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발달단계상 자녀의 사회적 적응의 요구도가 높지 않은 점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돌봐주는 데가 없다’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로 나타나, 3세대 동거가족의 구조 내에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에 대한 요구는 일정 부분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육의 경제적 부담 다음으로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학습지도가 응답되어 다문화가족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학습지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IV-2-16〉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 점

구분	전혀없음	없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평균
언어소통	18.6	23.7	19.5	31.4	6.8	100.0	2.85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5.1	3.4	18.8	42.7	29.9	100.0	3.89
가족내 양육방식 갈등	13.6	27.1	15.3	34.7	9.3	100.0	2.98
외국인이라는 선입견	10.2	44.9	11.9	21.2	11.9	100.0	2.80
아이의 외모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	33.9	45.8	7.6	8.5	4.2	100.0	2.04
아이 돌봐주는 사람/보육시설 부족	22.0	34.7	12.7	22.9	7.6	100.0	2.60
자녀 학습지도	16.9	17.8	12.7	33.9	18.6	100.0	3.1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현재는 대부분 한국 양육방식으로 기르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한국식으로 기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남편이나 시부모와 자녀양육방식에서 문화차이를 느껴도 지금 한국에서 자녀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따라가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향후 자녀들이 성장하면 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녀들이 원하면 본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의견이 달라도 일단 시어머니 방식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 사니까... (사례 2)

한국에서 학교 다닐 거니까 한국 방식으로 길러야죠. 고등학교 때는 중국에 보내 교육시키고, 대학교는 영국이나 선진국으로 보내면 좋을 거 같아요. (사례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 양육자는 주로 외국인 어머니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인 아버지는 주로 생업 때문에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시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는 자녀양육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딱 새벽 12-1시에 들어왔어요. 전혀 아기 교육에는 도움을 못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시부모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례 6)

다문화가족에서 이주 여성이 주 양육자인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구하거나 다양

한 교육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인적 인프라나 지원처가 없을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기 처음에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기저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유도 타 먹인 적이 없고... 다들 생형에 바쁘니까 물어봐도 잘 대답 안해주고... (사례 1)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자료 찾고 하는데. 아예 할 줄 모르는 엄마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여기 와서 여기 친구 만나서 하는 거죠. 원래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례 1)

아무래도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국인보다 어려우니까 일방아이에 비해 떨어지는 게 아니까 늘 고민이에요. 이러다 언어도 잘 모르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까 걱정이예요. 사실 여러 정보가 없으니 정상인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사례 11)

다문화가족에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을 질문한 결과, 양육비용 현금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보육·교육비 지원이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요구는 일반가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V-2-17 참조).

〈표 IV-2-17〉 다문화가족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단위: %(수)

구 분	다문화	일반 가정	X2
국공립기관의 확충	12.7	12.8	
보·교육비 지원 확대	49.2	41.5	
양육비 현금 지원	28.0	16.9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0.8	6.8	
육아 정보·상담 제공	-	0.5	24.48**
보육의 다양성 확대	5.9	12.7	
육아휴직제도 정착	1.7	5.9	
탄력근무제 실시	1.7	2.7	
계(수)	100.0(118)	100.0(2,47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다문화가족은 재정지원보다는 우선 순위가 낮지만, 심층면접에서는 한국의 일반가정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수치가 나와 있는 정보책자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지원센터나 정부에서 하는 지원이 대부분

결혼이민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대안 유치원이나 대안 어린이집을 만들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적응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이제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유치원이나 대안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문화가족 애들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일 년이고 두 달이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하는거예요. 여기에 한 시간 두 시간이 나도 와서 어린이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일 반 어린이집으로 가면은 훨씬 적응도 잘되고 좋지 않을까.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 들어갈 때도 예행연습을 하고 가는 거죠. (사례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다문화가족은 무조건 가난한 집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런 편견이 없어지도록 일반가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과 일반 한국가정 자녀들끼리 멘 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멘토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문화가족하고 일반 한국 가정하 고 나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멘토해서 육아 정보도 좀 공유하고.., 그 대신 나 라에서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세금을 조금 면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 같아요. (사례 8)

3) 기타

이외에 부모들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 등에 대한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이해 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고, 또한 결혼이민자로 낙인하기 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금 정부 정책은 주로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주여성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으나, 더불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이주여 성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계속 우리 이민자들만 많이 노력해야 해요. 한국 엄마들의 역할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배울 거 많아요. 운전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취직할 때 배워야 하고. 하지만 시어머니 교육과 남편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거 잘 알아야 해요. 필요해요. (사례 16)

정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 인가를 묻는 질문에 다문화가족에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가난하고 문제 많은 가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한 부분으로 보고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그거는 여기 센터에서도 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다문화하는 부분의 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사람 다문화라고 하면 말 못하는 애들이고, 언다는 한국 말 모른다 뭐 그런 반응 많아요. 그런 거는 정부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깐,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많이 가서,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국도 다문화 예요. 근데 미국에서 다문화라고 분류하지 않잖아요. 다문화라고 구분 짓지 말고, 한국 좀 힘들게 사는 사람도 도와주는 것처럼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례 17)

3. 취학아동 발달·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가. 발달

초등학생의 경우도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 특성은 국내 자녀와 비교하여 인지,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인지 발달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인지적 발달은 국내 자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정(2007)연구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평균적으로 언어 지능이 동작 지능보다 낮았고, 임상수준으로 나타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최저 7.9%에서 최고 10.5%이고, 경계선 수준의 경우 13.2%에서 최고 28.9%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아도 마찬가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 지능이 우리나라 일반아동의 언어 지능보다 낮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출생이후부터 경험하게 되는 언어 환경의 부적절성 때문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누적되어 나타난다.

2) 언어 발달

전혜정(2007)은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읽기 이해력 검사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이 6.66(표준편차 4.67)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 9.81(표준편차 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같은 읽기 이해력 검사를 사용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 이해를 연구한 국내 논문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일반 아동의 읽기 이해력 수준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읽기 이해력 수준이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이해를 연구한 김혜진(2005)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7.59, 2학년의 경우 11.60, 3학년의 경우 13.20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성애(2003)는 초등학교 1학년은 9.43, 2학년이 14.12 그리고 3학년이 16.73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우리나라 일반 초등학교생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수준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초등학교생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가정의 결과를 같은 그림 어휘력 검사를 사용해 연구한 국내 논문들과 비교하여보면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그림 어휘력 결과가 일반아동보다 다소 낮으며 우리나라 정신지체 아동의 수준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의 그림 어휘력을 연구한 강은지(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만 5세가 70.88이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 5세의 56.71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 가정과 중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어휘력을 연구한 황현이(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중류의 가정일 경우 4세가 48.30 5세가 70.97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 자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4세가 43.30, 5세가 59.98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림어휘력 검사결과가 유사함은 환경적인 결여나 교육적 경험의 제한을 그 이유로 찾을 수 있겠다.

3) 정서·사회성 발달

정서·사회성 발달은 성인 또는 또래와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Sarason, 1981,

전혜정 외, 2008 재인용)을 말하며 사회적 유능성과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적응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해 선호하는 정도가 2점 만점에 1.36이고 교사와의 관계도 1.24로 중간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볼 수 있으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1.0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적응을 나타냈다(전혜정 외, 2008).

즉 학교에서 생활하고 교사의 말을 따르고 지시에 따르는 것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또래와의 관계를 맺음에서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나. 취학아동 실태 및 학교생활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4,745명이다. 이는 2008년 대비 31.8%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 비율 초 83.4%, 중 12.1%, 고 4.5%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06년 초등학생은 6,795명으로 전체 취학자녀의 85%이었던 반면, 2009년에는 20,632로 13,837명 늘어났으나 전체 취학자녀 중 비중은 83%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23,602명으로 2,970명 늘어났으며, 전체 취학자녀 중 비중은 78.6%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IV-3-1〉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인원 및 전년 대비 증감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주: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89.9%(27,0014명)로 대부분을 차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0. 4기준)

다문화가족 취학 자녀 부모 출신국별 비율은 일본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7.3%, 필리핀이 17.1%, 조선족이 12.1% 순이며, 이들 네 국가의 비율이 전체의 8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3-2〉 취학 자녀 부모 출신국 분포

단위: 명, %

구분	부모 출신국별															기타	계
	일본	중국	조선족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중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10,937	5,204	3,649	286	361	5,142	1,306	727	209	371	297	283	379	169	42	44	634
비율	36.4	17.3	12.1	1.0	1.2	17.1	4.4	2.4	0.7	1.2	1.0	0.9	1.3	0.6	0.1	0.1	2.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0. 4기준)

다문화가족 복지실태조사에서도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의 취학률은 6~11세는 87.2%, 12~14세 99.4%, 15~17세 99.5%로 높았다(표 IV-3-3 참조). 6~11세의 경우 취학률이 높지 않음은 6세 아동이 취학을 늦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6세의 취학률은 43.7%였지만 7, 8세의 취학률은 각각 95.7%, 98.6%로 높았다.

〈표 IV-3-3〉 결혼이민자 자녀의 미취학을 및 취학을

(단위: %, 명)

구분	미취학	취학				계(수)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11세	12.8	87.2	86.7	0.5	-	100.0(24,148)
12~14세	0.6	99.4	33.7	65.9	0.8	100.0(4,639)
15~17세	0.5	99.5	-	31.5	68.0	100.0(1,417)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들 대부분은 언어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주위 다문화가족 친구들 중 어릴 때부터 한국어습득이 늦어진 경우 학교수업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우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알아듣고 해야 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항상 뒤처지죠. 숙제도 못하고 하니까... (사례 5)

학교 가면 한국어 능력이 안 되니까 친구가 없어요. 혼자 싹싹하고 친구 없으니까 안 좋아요. 걱정 돼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같이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 많은 거 같아요. (사례 17)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중에는 자랑스럽게 어머니가 외국인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어 실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거나 억양이 일반 아동과 다르면 다른 아동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들은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자녀들이 가져오는 알림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남편이나 같은 반 친구 부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자녀들을 학습을 도와주고 있었다.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알림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애한테 물어봐요. 근데 애도 모르니까 아빠한테 물어보고... 남편이 늦게 오고 그러면 그런 그냥 보내요, 그런 준비물도 못 준비하고, 내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 엄마한테 전화해요. (사례 16)

다. 방과 후 돌보는 사람(기관)

초등학생 중 방과후에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 13.3%,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 6.9%, 사설학원 13.3%로 전체의 약 1/3 정도만이 방과후 공공 및 사설 기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외는 부모나 가족들과 집에서 지내며, 특히 혼자 지낸다는 비율이 14.0%에 달한다. 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이 40.2%이다. 이 비율은 읍·면보다는 동 지역에서 더 높다.

아이가 혼자 지낸다는 비율은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중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영유아 아이 혼자 지내는 비율이 19.2%나 되었으며, 미취업도 영유아 아이 혼자 지내는 비율이 8.8%가 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차이 없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출신국별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미·호주·서유럽으로 78.7%이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몽골 30.9%이었다.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는 베트남이 1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국 조선족 17.4%, 중국 한족 17.0%, 필리핀 14.6% 등의 순으로 높았다(표 IV-3-4 참조).

다문화가족 아동들도 일반아동과 다르지 않게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원은 주로 검도나 태권도, 영어 학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하지만 가정에서

한국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머니가 숙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문화공부방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표 IV-3-4〉 방과후 초등학생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아이혼자 지냄	본인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보육시설	사설 학원	기타	계(수)
전체	14.2	40.2	8.9	13.3	6.9	13.3	3.3	100.0(13,678)
지역별								
동 지역	14.7	42.0	8.8	11.4	6.5	13.1	3.5	100.0(9,275)
읍·면 지역	13.2	36.2	9.2	17.4	7.7	13.5	2.8	100.0(4,403)
출신국별								
중국 조선족	17.4	34.5	11.1	13.1	4.9	15.3	3.6	100.0(5,493)
중국 한족등	17.0	38.6	6.9	13.8	5.3	14.9	3.5	100.0(2,215)
베트남	18.5	38.3	14.1	9.3	7.0	10.2	2.6	100.0(313)
필리핀	14.6	38.0	8.0	11.1	11.7	13.8	2.8	100.0(1,983)
몽골	13.0	30.9	5.7	12.2	19.5	6.5	12.2	100.0(123)
태국	9.7	44.5	7.8	12.3	11.0	11.0	3.6	100.0(308)
캄보디아	8.3	33.3	8.3	33.3	8.3	8.3	0.0	100.0(12)
일본	8.3	47.1	5.9	18.5	9.1	8.8	2.3	100.0(2,076)
북미 등	1.2	78.7	5.7	2.5	3.3	2.5	6.1	100.0(244)
기타	4.7	57.1	8.8	10.9	4.9	11.4	2.2	100.0(912)
체류기간별								
1년 미만	15.0	47.5	15.8	5.8	8.3	3.3	4.2	100.0(120)
1~2년 미만	15.2	44.5	8.4	15.7	5.2	6.3	4.7	100.0(191)
2~5년 미만	12.7	48.0	12.1	8.3	5.6	8.2	5.0	100.0(660)
5~10년 미만	11.8	44.5	8.7	13.2	7.7	11.4	2.8	100.0(4,507)
10년 이상	15.6	36.9	8.6	13.8	6.6	15.0	3.4	100.0(8,199)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족 아동 공부방 선생님에 의하면 자녀들 공부에 의욕적인 부모들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생업에 바빠 자녀들 공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질 경우 그냥 두어도 학교 생활이 어려운 데, 외모가 한국인과 별 차이가 없어도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위축되므로 한국어 능력 개발이 더 더욱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K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방 왔을 때 한국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애들이 언마가 대장사장이라고 괜히 괴롭히고.. 그래서 많이 어둡고 그랬는데.. 어

기 공부방 다니면서 조금 밝아졌어요. (공부방 8 교사).

그러나 다문화 공부방의 운영상태도 그리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부방에서 자녀 숙제지도 등을 하고 있으나 인적, 물적 여건이 아동이나 부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역부족이다. 초등학생 아동 학습은 학년이나 학업성취 정도가 다 다르므로 1:1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지만 공부방의 여건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도시 도시지역아동센터의 한 교사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아동들끼리는 잘 놀지만 학교에서는 우울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학업 및 또래 스트레스가 비만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다. 초등학생 자녀 교육의 어려움 및 요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상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의 83.5%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16.5%만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IV-3-5 참조).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원비 마련이 2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예습·복습의 학습지도 23.2%, 숙제지도 하기 19.8%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 학교생활의 부적응 및 학습부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약 5%)이나 일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학원비 마련은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높았고, 학습지도는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초등학생 교육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학원비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학원비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교육상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북미·호주·서유럽 46.4%이었다.

출신국별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중국 조선족, 한족, 몽골, 캄보디아 및 기타 출신국은 학원비 마련을, 일본은 학습지도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북미·호주·서유럽은 숙제지도하기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은 90%이었으나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약 59%로 가구소득별 어려움을 인지하는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은 학원비 마련을, 300~500만원 미만은 학습 지도를,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숙제지도 하기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습부진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참조).

〈표 IV-3-5〉 결혼이민자 제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알림장 챙기기	숙제 지도 하기	학습지도 (예습 및 복습)	학원비 마련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기타	계(수)
전체	16.5	2.9	19.8	23.2	27.4	5.0	5.3	100.0(13,605)
지역별								
동 지역	17.3	3.2	18.0	21.3	29.8	4.8	5.5	100.0(9,210)
읍·면 지역	14.8	2.2	23.7	27.0	22.3	5.5	4.6	100.0(4,395)
출신국별								
중국(조선족)	17.9	2.2	11.4	22.5	36.1	4.2	5.6	100.0(5,459)
중국(한족 등)	18.3	2.3	20.2	21.5	27.7	4.4	5.4	100.0(2,204)
베트남	18.4	4.0	32.7	18.7	19.6	3.1	3.4	100.0(321)
필리핀	9.4	5.8	44.2	14.8	18.0	4.4	3.3	100.0(1,989)
몽골	13.1	4.9	19.7	17.2	29.5	8.2	7.4	100.0(122)
태국	5.9	3.3	33.9	22.4	20.7	8.2	5.6	100.0(304)
캄보디아	8.3	0.0	25.0	8.3	33.3	0.0	25.0	100.0(12)
일본	12.3	1.5	15.3	38.2	18.3	8.4	6.1	100.0(2,068)
북미·호주·서유럽	46.4	2.5	15.6	12.2	12.2	3.8	7.2	100.0(237)
기타	24.0	3.9	18.1	21.0	23.7	4.7	4.6	100.0(889)
체류기간별								
1년 미만	19.8	4.1	13.2	17.4	28.1	7.4	9.9	100.0(123)
1~2년 미만	18.9	6.7	13.3	15.0	26.7	9.4	10.0	100.0(182)
2~5년 미만	21.9	2.6	20.9	18.2	26.0	6.7	3.8	100.0(662)
5~10년 미만	14.7	4.1	25.8	22.4	23.2	4.5	5.4	100.0(4,486)
10년 이상	16.9	2.2	16.7	24.2	29.8	5.0	5.1	100.0(8,155)
가구소득별								
50만원 미만	5.2	5.0	25.2	21.3	31.6	6.4	5.3	100.0(659)
50~100만원 미만	9.3	3.3	22.2	21.1	33.4	6.6	4.1	100.0(2,388)
100~200만원 미만	12.9	2.3	17.9	24.5	31.9	5.3	5.1	100.0(5,057)
200~300만원 미만	21.6	2.8	16.0	25.1	25.6	3.8	5.1	100.0(2,682)
300~400만원 미만	27.6	3.6	18.0	23.3	17.8	3.7	5.9	100.0(860)
400~500만원 미만	41.2	1.0	16.3	26.5	4.9	2.9	7.2	100.0(306)
500만원 이상	41.1	2.9	25.1	14.4	7.3	3.7	5.5	100.0(384)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와 관계없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 <표 IV-3-6>은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이다.

<표 IV-3-6> 결혼이민자 제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지원 필요 없음	한국어 , 한글 교육	기초교 과지도	본인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학 지도	학교교 육비· 급식비 지원	기타	계(수)
전체	9.5	9.3	27.8	8.2	5.6	8.0	25.5	6.1	100.0(13,411)
지역별									
동 지역	11.2	8.5	26.0	8.3	5.6	8.2	25.8	6.5	100.0(9,086)
읍·면 지역	6.1	11.2	31.5	7.9	5.8	7.4	25.0	5.1	100.0(4,325)
출신국별									
조선족	11.0	4.0	25.4	5.6	5.8	11.5	28.7	8.1	100.0(5,350)
한족 등	12.4	10.7	21.8	11.0	5.0	10.2	24.8	4.1	100.0(2,190)
베트남	5.6	24.1	26.6	9.7	5.6	3.1	21.3	3.8	100.0(319)
필리핀	2.6	20.7	34.1	6.1	9.7	4.5	17.8	4.6	100.0(1,948)
몽골	8.9	13.0	25.2	13.8	5.7	1.6	30.1	1.6	100.0(123)
태국	2.7	18.6	41.4	7.8	5.4	2.4	18.0	3.7	100.0(295)
캄보디아	0.0	30.8	15.4	0.0	0.0	0.0	30.8	23.1	100.0(13)
일본	5.2	7.3	35.3	11.4	3.0	3.5	29.4	4.8	100.0(2,045)
북미·호주·서유럽	44.6	2.1	17.6	15.5	1.3	2.6	6.0	10.3	100.0(234)
기타	13.4	10.6	24.9	10.8	4.9	5.3	24.5	5.6	100.0(890)
체류기간별									
1년 미만	5.0	30.0	24.2	5.8	4.2	5.8	20.0	5.0	100.0(122)
1~2년 미만	5.8	25.7	17.8	8.4	10.5	6.3	16.2	9.4	100.0(191)
2~5년 미만	12.6	17.9	20.8	11.4	4.7	5.9	22.9	3.6	100.0(659)
5~10년 미만	7.2	12.6	29.6	7.6	6.3	7.5	23.3	5.9	100.0(4,422)
10년 이상	10.7	6.1	27.6	8.2	5.3	8.5	27.3	6.2	100.0(8,018)
가구소득별									
50만원 미만	2.2	16.1	29.2	3.4	7.5	6.8	28.0	6.9	100.0(653)
50~100만원 미만	3.6	11.3	31.9	5.8	5.5	6.1	31.6	4.2	100.0(2,377)
100~200만원 미만	6.2	7.5	28.8	7.7	5.4	8.6	30.0	5.8	100.0(4,981)
200~300만원 미만	12.8	7.0	27.4	9.0	5.6	9.0	22.1	7.1	100.0(2,628)
300~400만원 미만	20.4	6.1	22.0	13.0	5.0	10.8	16.1	6.7	100.0(857)
400~500만원 미만	31.0	6.5	21.8	17.7	3.7	6.8	7.1	5.4	100.0(292)
500만원 이상	40.2	10.5	14.6	8.7	7.7	6.1	6.1	6.1	100.0(391)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체 결혼이민자 중 90.5%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초교과 지도 27.8%, 학교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25.5%로 다수를 차지하고, 이외 한국어, 한글교육, 진학지도,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심리상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은 읍·면 지역 보다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을, 그리고 읍·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 기초교과 지도의 필요성을 지적인 비율이 더 높았다.

출신국별로는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이 없다는 비율이 44.6%로 높았고, 중국 출신도 10% 이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몽골은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 기초교과 지도, 진학지도를, 캄보디아는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과 한국어·한글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각각 3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기초교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기초교과 지도, 한국어·한글교육,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 순으로, 그리고 북미·호주·서유럽 등의 선진국을 기초교과 지도, 모국어 교육, 학교교육비·급식비 순으로, 일본은 기초교과 지도,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 모국어 교육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표 IV-3-7〉 다문화가족 제 특성별 자녀 학습지원 필요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전체	49.0	13.7	7.8	7.7	21.7	100.0(117,936)	2.40
지역							
동 지역	45.5	12.9	7.6	8.7	25.3	100.0(85,033)	2.56
읍·면 지역	58.1	15.8	8.4	5.2	12.5	100.0(32,903)	1.98
성							
여성	51.4	14.0	7.7	7.2	19.7	100.0(108,030)	2.30
남성	22.9	10.3	9.0	14.0	43.8	100.0(9,908)	3.45
체류기간							
1년 미만	56.3	13.3	8.8	6.6	15.0	100.0(10,132)	2.11
1~2년 미만	57.6	13.9	8.4	6.4	13.5	100.0(14,812)	2.04
2~5년 미만	50.9	13.4	7.4	7.8	20.4	100.0(38,778)	2.33
5~10년 미만	46.1	13.3	7.6	8.0	25.0	100.0(27,931)	2.53
10년 이상	39.0	14.3	7.7	8.6	30.5	100.0(17,271)	2.77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체류기간별로는 2년 미만인 경우 한국어·한글교육을, 2~5년 미만은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을, 나머지 5년 이상은 기초교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 결혼이민자 자신의 모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2~5년 미만 체류자에게서 가장 높았고, 심리상담의 필요성은 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에게서 높았다. 소득수준은 높은수록 필요한 것이 없다는 비율이 높으며, 낮을수록 특히 기초교과 지도와 학교 교육비, 급식비 지원 요구가 높았다(표 IV-3-6 참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의 필요도를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보면 <표 IV-3-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필요하다는 비율이 동지역 58.4%, 읍·면지역 73.9%로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15.5% 높았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65.4%로 남성보다 필요도가 2배 높았다. 또한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의 필요도가 높아서 1년 미만인 경우는 69.6%, 1~2년 미만은 71.5%로 높았으며, 2~5년에는 64.3%로 필요도가 약간 감소하여 체류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중도입국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욕구

가. 자녀 입국 과정 및 특성

1) 자녀 입국과정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 이전에 혼인해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입국 후에 보통 2~3년 이후에 입양 형태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남성들은 처음 결혼할 때는 대부분 자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결혼이민자들은 자녀들은 본국에 있는 조부모나 친척에게 잠시 맡겨두고 전화나 편지로 연락하고 있다가 자신의 결혼생활이 정착되고 남편과 합의가 되면 자녀를 데려 오는데, 그 기간이 보통 결혼 후 2~3년 이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 후 바로 결혼 이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자녀들의 적응이 걱정되어 데려오지 못하거나 남편과의 합의가 어려워 데려오지 못했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결혼 전에 뭔가 숨기는 게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아이가 있다는 건 한 2년 뒤에 말하더라고요. 자녀와 연락은 전하곤 했다

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랑은 통화를 많이 했는데, 아들이랑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전화를 못해서 처음에는 엄마를 못 알아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20, 남편).

남편은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존 못 믿었어요. 여기 오면 생활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같이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가 봐주셨고, 중국에서 학교는 주중에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만 나오는 식으로 다녔어요. (사례 18)

본국에서 자녀들을 데려와서 입양하거나 자녀가 어릴 경우 인우보증 등을 통해 입적을 바로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한국인 자녀로 입양을 해야 교육 등 각종 혜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양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입양절차는 한국에서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저렴한데 비해서 출신국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입양이고, 둘째는 그냥 그 입적을 바로 시킨거예요. 제 아들이입시다. 입적을 바로 시켜놓은 애는 지금 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일단 입양을 해서 내 애로 만들어야 나중에 학교에 갈수도 있고 병원가기도 편하고.. (사례 20, 남편)

한국에서는 입양할 때 돈이 안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서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한 200만 원 정도.. 절차도 복잡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지 뭐.. 딸이 있는 건 알았고요. 딸은 안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한국말이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갱자기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딸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례 21, 남편)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출생아에게는 한국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주로 본국으로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었다. 양육비는 주로 이주여성이 일을 해서 직접 보내주거나 직업이 없는 이주여성인 경우 한국인 남편이 직접 보내주고 있었다. 청소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유 중에는 양육비 부담 문제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었다.

여성 농어촌 센터에 아이들 놀이방에 방과 후 보조교사로 취직을 했었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본국에 보내줬어요. (사례 20, 부인)

양육비는 한국에서 남편이 40만 원 정도씩 보내주었어요. 지금은 한명이 한국

에 들어왔으니까, 30만원 보내고 있어요. (사례 23)

동거하면서 큰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취업하려고 한국으로 데려왔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데려오고 싶었으나, 본국 송금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도 빨리 오고 싶어 해서 일찍 데리고 왔다. 중국에 있는 친언니가 돌봐 주었고 양육비는 한 달 100만 원 정도 일을 해서 본국으로 보냈어요. (사례 24).

2) 자녀특성 및 한국생활

가) 미취학 자녀

자녀들이 영유아들인 경우에는 일부는 엄마와 떨어진 시간과 낯선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생활 적응에 언어적인 문제는 적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입양을 하고 한국 국적을 획득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 한국생활에 적응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본국에는 혼자 4년 10개월 정도 지냈더니 한국에 와서는 많이 안 통해서 심리적으로 상당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엄마를 많이 찾는다. 큰아들이 일하고 와서 엄마가 없으면 전화로 수시로 엄마를 찾는다. (사례 22)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국적이 있든지..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국국적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 보내야죠.. 국적이 나오면.. 아직 어리니까 급방 배울 거 같아요. (사례 20, 남편)

나) 취학자녀

중도입국한 취학연령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 일반학교로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 기회나 절차가 없으므로 학업 능력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고려가 부족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1~2학년은 비교적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적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내용이 심화되면서 한국어를 몰라서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을 힘들어 하고 있었다.

처음엔 청학동 가서 한 달 정도 예절이랑 한국교육 배웠어요. 중국에서 3학년

까지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잘 따라가요. 교과서는 글자만 달라요. 수는 똑같아요. 그거는 글자 안보고 할 수 있어요. 국어만 조금 어려워하는데.. 지금 개인학원가서 2학년 책으로 배우고 있어요. (사례 18)

한국에 온지 한 달 만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들어갔어요. 한국말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갓 거라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해요. 그냥 베트남 가자고 하고.. 동이 다 힘들어요. 학교 숙제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저도 몰라서. 남편이 할 수 없이 밤 10시에 와서 새벽 2-3시에 숙제 도와주고 자요. 너무 피곤해요. (사례 19)

지금 중학교에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못 알아듣으니 수업시간에 계속 졸리고 하네요, 차라리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런 말 자주 해요. 한국어 능력 떨어져서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수도 몰라가지 못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공부 포기할까봐 걱정이예요. (사례 21)

중도입국자녀들이 경험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방문 한국어지도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드문 경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악기를 배우는 사례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거나 특별과외를 해 준다는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 다문화 선생님이 와서 한국말, 영어 가르쳐주고, 다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 배웠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건도학원 다녔어요. 가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어도 배우라고 보냈어요. (사례 19)

학교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왔다고 해주는 건 없고..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중국어가 안 되시니.. 특별지도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여기 다문화센터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사례 21)

나) 청소년 자녀

청소년 입국자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에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는 별도로 교육하는 곳은 다문화관련 센터에서 일주일에 2~3회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청소년 중도입국자녀들은 한국어를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바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중학교 보내고 싶은데.. 비몽적인 문제 때문에 얹두를 못 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게 제 희망이지만 돈이 없어요. (사례 23)

한국에 온 이후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서 매일 저녁에 나가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심리적 안정은 언어소통이 안 되서 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학교는 한국어를 몰라서 진학을 못했어요. (사례 24)

아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공부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현재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지만 한국에서 취업하면 언어가 늘 수 있으니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로 중국집 배달하면서 돈 벌고 있어요. (사례 22)

3) 자녀와 가족 간 관계

외국인 어머니와는 본국 언어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와 관계에서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 아버지는 자녀들이 한국말이 서툰 경우에는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틀려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두 아이를 다 데려 왔는데, 작은 애는 아빠 아빠 하고 그러는데, 큰애는 아빠 양은 절대 애기를 잘 안 해요. 대화는 안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아빠 신발을 벗겨주고, 그런 것은 빨아요. (사례 20, 남편)

딸과 대화는 제가 피곤하다보니까. 거의 대화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데, 제가 쯤 말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하는걸 좋아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례 21, 남편)

말이 안 통해 땡땡해하고 정 불편하면 이웃에 사는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한다. (사례 23)

나. 중도입국 자녀 가정의 애로사항 및 요구

1) 애로사항

가) 사전 언어 학습 부족

중도입국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들은 중도에 입국한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때 한

국어, 한국문화 등 한국생활을 위하여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습득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적응 및 학업 어려움을 경험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기 희망하였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대상자에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한글을 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참여 아동의 다양한 한국어 실력 차이로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종종 보고되었다.

나) 학교 적응

중도입국 자녀들은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유아기에 입국하지 않으면 대부분 한국 학교가 배치해 준 학년의 한국 아동 연령에 비하여 이들의 연령이 차이가 남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보였다.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적응하기 어려워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검정고시를 위하여 학원에 다니기도 하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취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또래보다는 일하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게 된다.

학교에 다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학업 내용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

중학교로 들어갔는데 반에서 체육부장을 담당하는 등 또래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지만, 수업시간에 내용을 다 알아 듣지 못해서 당당하고, 그러다보니 계속 졸음이 오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사례 21)

학교공부와 관련하여 언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에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와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교우관계도 제한적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도 일반 한국친구들 보다는 같은 다문화아동청소년이나 소외된 계층의 한국친구들을 사귀는 경향이 높다. 대다수가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위축에 대해서 걱정하였다. 한 부모는 자녀의

학교에서 하는 공개수업에 갔다가 자녀가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고, 한국 문화에 서툰고, 다른 외모로 인한 부담 때문에 부모 자신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도와야 하는지 등 자녀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다) 사회 문화 적응

한국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적 안정과 안전한 상황에 더욱 만족하는 상대적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외모가 한국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오해를 받는 등의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의 지나친 경쟁 문화와 그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당황스럽게 느껴지고,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가 달라 자신의 가치와 다른 행동이나 말을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 문화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자신의 가치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초기 갈등 중에서 자녀 양육법이나 교육 방법론이 주원인이 된다.

다문화아동청소년들이 초기에 겪는 심리적 문제 중 고립감과 외로움이 가장 높았다. 환경변화로 인한 당혹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부모 이외의 대화 상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보였다.

2) 요구

중도입국 자녀 가정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중간 형태로 이러한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한국어나 한국문화,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만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중간입국자녀가 유아인 결혼이민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전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간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한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한국문화 역사 같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을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사례 23)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이미 성장한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일자리를 알

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중도입국 자녀 일자리 연계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뭘을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입양아가 뭇 20세 성인이 되기까지는 합법적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한국 아이들처럼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사례 22)

이외에 중도입국자녀 연령별로 맞는 한국어 교육 교재, 출신국 언어로 출신국 간 사에 의한 한국어 교육, 정기적 상담 등의 요구가 있었다.

5. 정책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영유아기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학령기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추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결혼이민자 증가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은 현재는 상당수가 영유아기에 있으나 앞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들어가게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는 2015년에는 200,942명, 2020년에는 302,69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는 영유아, 초등학생 모두 국내 자녀와 비교하여 인지,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가 이들 대상의 정책을 강화하여야 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내 가족지지체계가 자녀양육지원의 역량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가족 이외에 이웃이나 결혼이민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은 취약성 내에서도 다문화가족 특유의 가족 및 지역 인적자원이 양육지원체계 역할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시댁 식구가 48.1%, 이웃이라는 응답이 33.3%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를 키우면서 육아관련 지식이나 조언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집안 어른과 친구/동료가 가장 높았다.

넷째, 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오프라인 개인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등의 부가적

교육 서비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 간에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개인 사교육과 학원 이용에서는 일반가정에 비해 일관되게 낮았다. 이는 교육수혜의 격차가 취학 전 학력의 차이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다문화가족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자녀 학습력 제고의 수요가 높으므로 이용률이 높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과정의 특화와 함께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맞춤형 개인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약 90% 이상의 다문화가족 아동이 비용감면의 혜택을 받아 일반가정의 1/3수준이 평균 보육·교육 비용으로 지불하며, 총 보육·교육료의 20% 미만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체감은 일반가정과 비교한 기관비용부담도와 정부비용지원정책 만족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지속적인 비용지원 및 확대로 조사되어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도와 기대감이 크고, 동시에 양육비 지출의 가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어릴 때부터 한국어습득이 중요한 과제이며, 초등학생 학습 지원이 중요한 과제임을 나타냈다.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의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상당 부분이 언어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원비 마련이 2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예습·복습의 학습지도 23.2%, 숙제지도 하기 19.8% 등의 순으로 비용 문제와 학습지도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도 기초교과 지도27.8%, 학교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25.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외 한국어 교육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부방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기관 프로그램 이용률은 1/3에 불과하고, 혼자 지낸다는 아동이 14%이고, 학원 이용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 아동에 비하여 사교육이나 기관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초등학교 방과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덟째, 중도입국자녀는 특히 한국어와 학업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유형이 매

우 많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에 와도 미취학 아동의 문제는 비교적 덜 심각하다. 그러나 취학연령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입국 후에 한국 일반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과정 내용의 폭과 깊이가 강화되므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면 학교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흥미도 없어지고 적응하기 힘들어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한다. 여러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언어에서 비롯되는데, 중도입국자녀에게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진학지도, 취업훈련, 일자리 문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을 시사한다.

V.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5장에서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대상별 사업 시행 및 요구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1. 다문화가족센터의 사업 개요

가. 주요 사업

2010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편의상 기본사업, 방문교육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가족교육, 가족 및 개인상담, 취·창업교육이며, 기타 사업은 통번역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사업, 홍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강화 등 이다. 기본사업과 기타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표 V-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2010

구분	사업 내역
센터 사업	-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다문화 사회이해 교육, 가족교육, 가족 상담,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 기타 사업: 통번역자조모임, 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홍보 및 정보제공, 종사자 역량강화
방문교육사업	-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사업, -임신출산 지도서비스
추가사업	- 영농기술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이중언어사업, 통번역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지원단협력 및 보고	- 사업보고, 사례 발굴 및 연계, 동향보고 등

자료: <http://liveinkorea.mogef.go.kr/>

둘째, 방문교육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국어 지도사 혹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 가정을 주 2회 2시간 씩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문교육사업은 세 종류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과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도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며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은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통합 서비스이다. 임신·출산 지도 서비스는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이다.

셋째,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기본사업으로 자조모임을 실시하는데, 이외에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009년 5월 전국 38개 센터에서 58명의 통번역사가 활동 중이며 그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번역사의 주된 역할은 결혼이민자 입국초기 상담과 정보제공, 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이며 가족 간 의사소통을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학교 상담이나 행정·사법기관, 병원진료 등 필요시에 통역사로 파견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센터에 방문한 자녀를 위해 다문화언어지도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인근 보육시설 등 기관으로 다문화언어지도사를 파견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중언어교실은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의 언어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을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2010년 52개 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다.

<표 V-1-2>는 조사에 응한 13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0년에 시행한 사업 예산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한편 센터사업 중에는 한국어 교육과 취·창업 지원이 모든 센터에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어교육은 예산이 센터당 평균 14,401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사업 이외에는 종류별로는 방문교육사업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두 번째로 많이 시행되었다. 예산은 방문교육사업이 평균 167,64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평균 23,231천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표 V-1-2 참조).

2008년 다문화지원센터 사업 총 참여인원은 615,802명이었으며, 그 중 한국어 사업이 51%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정서지원 사업 19%, 다문화가족역량강화사업 12% 순이었다. 이용자는 총 49,263명으로 이용자 중 결혼이민자는 총 55%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결혼이민자 배우자 28.9%이었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총 참여인원은 734,131명이었으며, 그 중 한국어교육

54%, 가족교육 13%, 다문화사회이해교육 12% 순이었다. 2009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의 이용자는 총 33,971명이며, 이용자 중 결혼이민자가 65%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표 V-1-3 참조).

〈표 V-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예산: 2010

단위: %, 천원

사업의 종류		시행 비율	예산 평균
방문교육사업		93.9	167,642
통번역서비스 사업		77.1	21,62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5.7	23,231
이중언어교실 운영		36.6	4,278
센터 사업	한국어 교육	100.0	14,401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99.2	4,428
	가족교육	97.7	5,377
	가족개인상담	93.1	2,637
	취·창업 지원	100.0	5,140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73.4	2,280
	멘토링, 자원봉사단	84.7	3,429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96.9	4,008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93.9	2,526

자료: 김은영·문무경·김문희·박수연(2010).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표 V-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

구분	2008	2009
사업 참여 연인원	615,802	734,131
센터 이용자(결혼이민자비율)	49,263(55%)	33,971(65%)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0). 내부자료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점사업을 조사한 것으로 중복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 방문교육사업과 가족교육 서비스, 취·창업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순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지역이 대체로 유사하였다(V-1-4 참조).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역점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 취·창업교육, 가족교육, 가족 개인상담 순으로 높게 나타나서 현재 중점 사업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현재 실시율이 낮은 가족교육, 가족 개인상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낀다고 하겠다. 도시지역의 경우 한국어교육과 취·창업교육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족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방문교육사업 순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가족 개인 상담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V-1-5 참조).

〈표 V-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단위: %(개소)

구분	역점사업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 촌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 촌
방문교육 사업	12.3	13.5	11.8	12.1	18.9	20	14	23.8
통번역 서비스 사업	3.4	4.8	2.6	3.2	9.4	5.7	8	14.3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교실 운영	2.9	3.8	3.3	1.6	22	11.4	28	23.8
한국어 교육	0.8	-	1.3	0.8	7.9	8.6	10	4.8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30.2	32.7	29.4	29	56.7	54.3	58	57.1
가족 교육	10	8.7	11.1	9.7	17.3	11.4	22	16.7
가족 개인 상담, 취/창업 지원	12.3	8.7	13.1	14.5	34.6	25.7	38	38.1
통번역 서비스 자조 모임	4.7	1.0	3.9	8.9	30.7	20.0	30.0	40.5
멘토링 및 자원봉사단	12.1	13.5	13.1	9.7	43.3	51.4	38	42.9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1.3	1.0	1.3	1.6	9.4	14.3	8	7.1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강화	1.6	1.9	0.7	2.4	7.1	17.1	-	7.1
기타 사업	4.5	6.7	5.2	1.6	14.2	22.9	16	4.8
계	1.8	1.9	2	1.6	7.9	14.3	8	2.4
(사업수)	2.1	1.9	1.3	3.2	11.8	5.7	20	7.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1)	(104)	(153)	(124)	(127)	(35)	(50)	(42)

자료: 김은영·문무경·김문희·박수연(2010).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표 V-1-5〉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창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청	행정기관	복지관	(수)
전체	85.4	1.6	11.8	2.8	(428)
센터	92.6	0.0	10.3	0.7	(133)
시·군·구청	91.3	0.0	5.8	2.9	(137)
교육청	74.1	4.4	18.4	4.4	(158)

자료: 김은영·문무경·김문희·박수연(2010).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에서의 가족 지원의 주요한 전달기관이다. 센터, 시·군·구청,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지원 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어떤 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센터, 시·군·구청, 교육청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응답 비율이 교육청이나 행정기관 및 복지관이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사회 내 위상은 반영하였다.

나. 지도사 자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지도사로는 사회복지사와 전직 교사가 가장 많고, 상담사, 건강가정사, 치료사 등이 활동한다. 지역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지도사가 되는 경우가 각각 46.6%, 40.2%로 가장 많았고 전직 교사인 경우가 각각 30.1%, 3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도시 지역의 경우는 전직 교사인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39.1%로 두 번째로 많았다(표 V-1-6 참조).

〈표 V-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사 소지 자격 및 배경

단위: %, 명

구분	전직 교사	치료사	건강 가정사	사회 복지사	상담사	가정 복지사	결혼 이혼자	계
전체	40.6	11.3	12.4	41.7	19.9	2.3	3.8	(266)
도시	56.5	12.0	10.9	39.1	20.7	2.2	5.4	(92)
도농복합	30.1	12.3	15.1	46.6	23.3	2.7	1.4	(73)
농어촌	33.0	10.3	10.3	40.2	17.5	2.1	4.1	(97)

자료: 김은영·문무경·김문희·박수연(2010).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영유아 관련 사업 실태와 요구

가. 실시하는 사업

1) 실시 프로그램 및 빈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0개소에서 영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비율

은 44.1%이고, 유아들 대상 사업은 65.9%의 센터에서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실 영유아 대상 사업은 이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주 대상이 누구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해보고자 하였다(표 V-2-1 참조).

〈표 V-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대상별 사업 실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영아		유아		계(수)
	실시함	실시안함	실시함	실시안함	
전체	44.1	55.9	65.9	34.1	100.0(170)
권역별					
수도권	40.7	59.3	66.7	33.3	100.0(54)
경상권	58.7	41.3	80.4	19.6	100.0(46)
전라권	33.3	66.7	53.3	46.7	100.0(30)
충청권	36.0	64.3	48.0	52.0	100.0(25)
강원/제주	46.7	53.3	73.3	26.7	100.0(15)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53.7	46.3	64.8	35.2	100.0(54)
도농복합지역	44.4	55.6	66.7	33.3	100.0(63)
농어촌지역	34.0	66.0	66.0	34.0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아 대상 사업 내역 및 장소

단위: 개소, %

영아대상 사업내용	센터수	비율	사업장소	사업수
출산지원 서비스	33	19.4	센터	100
육아정보나눔터	21	12.4	각 가정	13
자녀언어발달지도(치료)	20	11.8	기타 연계시설	5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1	6.5	보육시설	4
놀이방 운영, 보육	9	5.3	도서관	1
자녀방문교육	8	4.7	각 읍, 면	1
자녀양육교육	8	4.7	-	-
엄마랑 아가랑 문화센터(관계향상)	4	2.4	-	-
뮤직카툰	2	1.2	-	-
가족체험활동	2	1.2	-	-
베이비마사지	2	1.2	-	-
북스타트	1	0.6	-	-
가족교육	1	0.6	-	-
이야기교실	1	0.6	-	-
(센터수)	(89)	(170)	(사업수)	(1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권역별로는 경상권 지역센터에서 영아 대상 사업을 실시하는 비율이 58.7%, 유아 대상 사업은 8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지역규모별로는 유아대상 사업 실시비율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영아 대상 사업은 도시지역이 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아 대상사업은 출산지원서비스가 1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육아정보나눔터, 언어발달지도, 아이돌보미 사업, 놀이반 운영, 자녀 방문교육, 자녀 양육교육의 순이다. 이처럼 영아 프로그램은 언어발달지도 이외는 대부분이 어머니 대상 프로그램이다. 사업 장소는 대부분이 센터에서 실시되며, 일부 사업이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 기타 시설에서 실시된다(표 V-2-2 참조).

<표 V-2-3>은 유아 대상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V-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 대상 사업 내용 및 장소

단위: 개소, %

유아대상 사업내용	개설수	센터비율	사업장소	개수
언어발달, 언어지도 사업	52	30.6	센터	103
방문양육 지원, 교육	18	10.6	각 가정	25
육아정보나눔터	15	8.8	유치원, 보육시설	16
이중언어교실	12	7.1	도서관	5
아이돌보미	10	5.9	야외	3
엄마(아빠)-자녀 놀이활동	9	5.3	기타 연계시설	3
학습지 지원	5	2.9	각 읍, 면	1
가족체험활동, 캠프	4	2.4		
다문화이해교육	3	1.8	-	-
미술치료	3	1.8	-	-
학습지도	3	1.8	-	-
책 읽기(북스타트)	2	1.2	-	-
영어교육	2	1.2	-	-
동화구연	2	1.2	-	-
부모-자녀 교육	2	1.2	-	-
동요 부르기	2	1.2	-	-
다문화유소년축구팀	2	1.2	-	-
놀이방	1	0.6	-	-
동작, 무용 활동	1	0.6	-	-
자녀 전통놀이체험	1	0.6	-	-
문화활동	1	0.6	-	-
엄마나라 알기	1	0.6	-	-
(센터 수)	(134)	(170)	(사업수)	(15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유아대상 사업은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비율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방문교육 및 지원 10.6%, 육아정보나눔터, 아이돌보미 등이고, 이외 이중언어교실,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며, 유아에게는 영아와 달리 학습지 지원, 미술, 무용, 동화구연, 축구, 전통놀이체험, 책 읽기, 문화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이 센터 내에서 실시되고 일부 활동만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조사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표 V-2-3 참조).

영아 및 유아대상 사업은 대부분 각 센터에서 평균 1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2개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다음 조사된 프로그램의 주당 실시 횟수 및 횟수당 시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V-2-4>, <V-2-5>은 영아 대상 사업 실시 빈도와 회당 시간을 나타낸다. 실시 횟수는 주 1~2회 실시하는 비율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 5~7회 실시하는 비율이 20.0%, 주 3~4회 실시하는 비율이 14.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지역규모별 비교에서는 도농복합지역에서 주 5-7회를 실시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4〉 영아 대상 프로그램 실시 횟수

단위: %(개)

구분	주 1회미만	주 1~2회	주 3~4회	주 5~7회	수시로	계(수)
전체	2.7	56.0	14.7	20.0	6.6	100.0(75)
권역별						
수도권	5.0	50.0	25.0	20.0	0.0	100.0(20)
경상권	3.0	60.6	12.1	15.2	9.1	100.0(33)
전라권	0.0	60.0	20.0	0.0	20.0	100.0(5)
충청권	0.0	50.0	0.0	50.0	0.0	100.0(8)
강원/제주	0.0	55.6	11.1	22.2	11.1	100.0(9)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3.4	58.6	10.3	17.2	10.5	100.0(29)
도농복합지역	0.0	48.5	18.2	27.3	6.0	100.0(33)
농어촌지역	7.7	69.2	15.4	7.7	0.0	100.0(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영아 대상 사업 1회당 시간은 2시간 이상이 54.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1시간 미만이 18.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는 2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전라권에서는 1회당 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편중되지 않고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도농복합지역과 농

어촌지역에서는 2시간 이상의 비율이 60%이상인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40%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V-2-5〉 영아 대상 프로그램 1회당 시간

단위: %(개)

구분	1시간 미만	1-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수)
전체	18.2	11.7	15.6	54.5	100.0(77)
권역별					
수도권	19.0	9.5	19.0	52.4	100.0(21)
경상권	15.6	12.5	12.5	59.4	100.0(32)
전라권	28.6	14.3	28.6	28.6	100.0(7)
충청권	25.0	0.0	0.0	75.0	100.0(8)
강원/제주	11.1	22.2	22.2	44.4	100.0(9)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23.3	10.0	23.3	43.3	100.0(30)
도농복합지역	21.2	9.1	9.1	60.6	100.0(33)
농어촌지역	0.0	21.4	14.3	64.3	10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2-6〉 유아 대상 프로그램 실시 횟수

단위: %(개)

구분	주 1회미만	주 1~2회	주 3~4회	주 5~7회	수시로	계(수)
전체	6.3	75.0	8.9	8.9	0.9	100.0(112)
권역별						
수도권	10.3	74.3	7.7	7.7	0.0	100.0(39)
경상권	6.5	83.8	3.2	6.5	0.0	100.0(31)
전라권	6.3	68.7	18.7	0.0	6.3	100.0(16)
충청권	0.0	76.9	7.7	15.4	0.0	100.0(13)
강원/제주	0.0	61.5	15.4	23.1	0.0	100.0(13)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6.1	75.8	6.1	12.0	0.0	100.0(33)
도농복합지역	6.3	70.8	8.3	12.5	2.1	100.0(48)
농어촌지역	6.5	80.6	12.9	0.0	0.0	100.0(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2-6〉는 유아대상 지원 사업 빈도 분포이다. 영아 대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 1-2회 실시하는 비율이 75.0%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실시횟수는 대부분 10% 미

만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 차이를 보면 전라권에서는 주 3~4회, 강원/제주권은 주 5~7회 실시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지역은 주 3~4회 실시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아 대상 사업 1회당 시간은 2시간 이상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시간 미만이 28.1%, 1시간~2시간 미만이 25.0%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는 2시간이상이 가장 높은 반면 전라권, 충청권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제주권은 1시간미만과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도시지역은 1시간 30분~2시간 미만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도농복합지역은 1시간 미만이 34.0%, 농어촌지역은 2시간 이상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 V-2-7〉 유아 대상 프로그램 1회당 시간

단위: %(개)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수)
전체	28.1	14.8	25.0	32.1	100.0(128)
권역별					
수도권	22.5	12.5	25.0	40.0	100.0(40)
경상권	20.0	7.5	32.5	40.0	100.0(40)
전라권	50.0	11.1	22.2	16.7	100.0(18)
충청권	35.7	28.6	14.3	21.4	100.0(14)
강원/제주	31.3	31.3	18.7	18.7	100.0(16)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21.4	11.9	45.3	21.4	100.0(42)
도농복합지역	34.0	14.0	20.0	32.0	100.0(50)
농어촌지역	27.8	19.4	8.4	44.4	100.0(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2) 연계 프로그램

다음은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유치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31.7%로 나타나서, 실제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계사업은 인력파견 사업이 27.6%로

가장 많고 다음이 프로그램 지원 20.7%이며 통번역서비스가 12개 센터에서 연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례관리, 언어발달 지원 연계가 소수이다.

〈표 V-2-8〉 유치원 연계 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없음	통·번역 서비스	인력 파견	프로그램 지원	사례 관리	기타	계(수)
전체	31.7	8.3	27.6	20.7	2.1	9.6	100.0(145)
권역별							
수도권	44.4	6.7	26.7	13.3	4.4	4.5	100.0(45)
경상권	30.3	6.1	33.3	21.2	0.0	9.1	100.0(33)
전라권	28.6	14.3	21.4	21.4	3.6	10.7	100.0(28)
충청권	24.0	8.0	24.0	24.0	0.0	20.0	100.0(25)
강원/제주	14.3	7.1	35.7	35.7	0.0	7.2	100.0(14)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47.8	10.9	26.1	6.5	2.2	6.5	100.0(46)
도농복합지역	26.9	5.8	28.8	30.8	0.0	7.7	100.0(52)
농어촌지역	21.3	8.5	27.7	23.4	4.3	14.8	100.0(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2-9〉 보육시설 연계 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없음	통·번역 서비스	인력 파견	프로그램 지원	사례 관리	기타	계(수)
전체	30.2	8.7	30.9	17.4	1.3	11.5	100.0(149)
권역별							
수도권	40.4	6.4	31.9	10.6	4.3	6.4	100.0(47)
경상권	26.5	5.9	35.3	20.6	0.0	11.7	100.0(34)
전라권	25.8	16.1	29.0	19.4	0.0	9.7	100.0(31)
충청권	29.2	8.3	25.0	12.5	0.0	25.0	100.0(24)
강원/제주	15.4	7.7	30.8	38.5	0.0	7.6	100.0(13)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40.0	8.0	32.0	12.0	2.0	6.0	100.0(50)
도농복합지역	30.2	7.5	32.1	17.0	0.0	13.2	100.0(53)
농어촌지역	19.6	10.9	28.3	23.9	2.2	15.1	100.0(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유치원과 연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4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지역에서 유치원과 연계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

다. 연계사업은 농어촌 및 도농 복합지역에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연계 비율이 도시보다 높았다.

보육시설과의 연계도 전반적 경향은 유치원과 유사하지만 실시하는 센터의 수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인력파견이 유치원보다 약간 많고, 프로그램 지원은 약간 낮다. 권역별, 지역규모별 비교에서도 유치원과 비슷하게 도시 및 수도권에서 보육시설과 연계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강원/제주 및 농어촌 지역에서 연계 비율이 높았다. 연계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프로그램지원 연계가 같이 높아지는 차이를 보였다.

나. 사업 우선순위

1) 영유아 대상 사업

다음은 센터에서 하는 영유아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를 먼저 제시하였으며, 각 사업의 1순위에 한하여 권역 및 지역규모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표 V-2-10>, <표 V-2-11>는 영아대상 사업별 우선순위 조사 결과이다.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가 5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정서발달 지원이 12.8%, 한국생활 및 문화 지원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사회성 발달이 가장 높고, 3순위는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한국생활지도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규모별로 도시가 한국어 교육을 농어촌은 사회성 발달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 경향은 유사하다(표 IV-2-11 참조).

<표 V-2-10> 영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단위: %(개소)

구분	한국어 교육	신체 건강 관리	정서 발달 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언어 발달 지원	한국 생활 지도	인지 학습 지도	예절 교육	기타	계(수)
1순위	7.5	53.4	12.8	6.0	2.3	10.5	4.5	3.0	0.8	100.0(133)
2순위	3.8	-	20.0	35.4	7.7	20.0	6.2	5.4	0.8	100.0(133)
3순위	2.5	-	8.3	28.1	11.6	26.4	20.7	1.7	0.8	100.0(1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2-11〉 지역별 영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단위: %(개소)

구분	한국어 교육	신체 건강 관리	정서 발달 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언어 발달 지원	한국 생활 지도	인지 학습 지도	예절 교육	기타	계(수)
전체	7.5	53.4	12.8	6.0	2.3	10.5	4.5	3.0	0.8	100(133)
권역별										
수도권	17.5	47.5	7.5	7.5	0.0	12.5	2.5	5.0	2.5	100(40)
경상권	5.6	52.8	16.7	2.8	0.0	11.1	5.6	5.6	0.0	100(36)
전라권	0.0	57.1	9.5	14.3	0.0	4.8	14.3	0.0	0.0	100(21)
충청권	4.2	45.8	25.0	4.2	12.5	8.3	0.0	0.0	0.0	100(24)
강원/제주	0.0	83.3	0.0	0.0	0.0	16.7	0.0	0.0	0.0	100(12)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13.9	50.0	11.1	5.6	2.8	11.1	0.0	5.6	0.0	100(36)
도농복합지역	5.8	59.6	15.4	0.0	0.0	9.6	5.8	3.8	0.0	100(52)
농어촌지역	4.4	48.9	11.1	13.3	4.4	11.1	6.7	0.0	0.0	100(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유아대상 사업별 우선순위는 1순위 조사에서는 언어발달 지도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한국어 교육과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가 각각 17.4%로 나타났다. 2순위는 사회성 발달이 가장 높고, 3순위는 정서발달 비율이 가장 높다(표 IV-2-12 참조).

지역규모별로 도시는 정서발달, 농어촌은 한국어와 사회성 발달을 지정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표 IV-2-13 참조).

〈표 V-2-12〉 유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단위: %(개소)

구분	한국어 교육	신체 건강 관리	정서 발달 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인지 학습 지도	문화 체험	모국어 교육	계(수)
1순위	17.4	17.4	15.9	6.1	28.8	10.6	0.8	3.0	100.0(132)
2순위	8.0	8.0	13.6	23.2	20.8	20.8	5.6	-	100.0(128)
3순위	7.5	5.6	27.1	18.7	9.3	20.6	9.3	1.9	100.0(1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2-13〉 지역별 유아 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단위: %(개소)

구분	한국어 교육	신체 건강 관리	정서 발달 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인지 학습 지도	문화 체험	모국어 교육	계(수)
전체	17.4	17.4	15.9	6.1	28.8	10.6	0.8	3.0	100(132)
권역별									
수도권	17.5	17.5	20.0	5.0	25.0	7.5	0.0	7.5	100(40)
경상권	19.4	11.1	22.2	0.0	30.6	16.7	0.0	0.0	100(36)
전라권	13.6	13.6	18.2	9.1	31.8	9.1	0.0	4.5	100(22)
충청권	13.0	30.4	4.3	17.4	17.4	13.0	4.3	0.0	100(23)
강원/제주	27.3	18.2	0.0	0.0	54.5	0.0	0.0	0.0	100(11)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11.1	22.2	27.8	5.6	22.2	2.8	0.0	8.3	100(36)
도농복합지역	19.2	17.3	9.6	1.9	32.7	17.3	1.9	0.0	100(52)
농어촌지역	20.5	13.6	13.6	11.4	29.5	9.1	0.0	2.3	100(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2) 부모 대상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생각하는 영유아 부모대상 사업별 우선순위는 1순위 사업은 한국어교육 6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육아관련 정보제공이 14.8%,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2, 3순위에서는 육아관련 정보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정서지원과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순이다.

〈표 V-2-14〉 부모대상 양육지원 관련 사업 우선순위

단위: %(개소)

구분	한국어 교육	육아 정보	육아 상담	정서 지원	문화 지도	양육비 지원	가족 상담	심리 상담	취업 지원	계(수)
1순위	69.6	14.8	0.7	4.4	1.5	-	6.7	0.7	1.5	100.0(135)
2순위	9.0	25.6	6.8	24.1	5.3	6.8	17.3	4.5	0.8	100.0(133)
3순위	2.5	28.3	10.8	17.5	7.5	8.3	16.7	7.5	0.8	100.0(1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이러한 사업우선 순위는 지역규모별로는 한국어 교육은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의 순으로 비율이 높아지며, 육아정보는 반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도시에서 가족상담요구가 비교적 높다. 권역별로는 전라도와 강원/제주에서 한국어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높았다.

〈표 V-2-15〉 지역별 부모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단위: %(개소)

구분	한국어 교육	육아 정보	육아 상담	가족 상담	정서 지원	문화 지도	심리 상담	취업 지원	계(수)
전체	69.6	14.8	0.7	6.7	4.4	1.5	0.7	1.5	100(135)
권역별									
수도권	58.5	14.6	2.4	9.8	9.8	0.0	2.4	2.4	100(41)
경상권	69.4	19.4	0.0	5.6	2.8	0.0	0.0	2.8	100(36)
전라권	90.9	4.5	0.0	4.5	0.0	0.0	0.0	0.0	100(22)
충청권	62.5	16.7	0.0	8.3	4.2	8.3	0.0	0.0	100(24)
강원/제주	83.3	16.7	0.0	0.0	0.0	0.0	0.0	0.0	100(12)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54.1	21.6	0.0	10.8	8.1	0.0	2.7	2.7	100(37)
도농복합지역	73.6	15.1	1.9	5.7	0.0	1.9	0.0	1.9	100(53)
농어촌지역	77.8	8.9	0.0	4.4	6.7	2.2	0.0	0.0	100(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3)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사업

보육시설/유치원 대상 사업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제공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일반가정 부모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 34.6%, 다문화교사 연수가 20.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일반 가정 부모 및 아동 프로그램, 3순위에서는 다문화관련 교사연수, 가정통신문 번역 사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1순위 우선순위 권역별 비교에서는 경상권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반가정 부모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지역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나머지지역은 일반가정 부모 및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업으로 선택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특히 도시는 다문화관련 교사연수, 농어촌은 가정통신문 번역 사업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2-16〉 보육시설·유치원 대상 사업 우선순위

단위: %(개소)

구분	다문화영유아 프로그램	일반가정 프로그램	다문화 교사연수	가정통신문 번역	기타	계(수)
1순위	36.1	34.6	20.3	7.5	1.5	100.0(133)
2순위	18.3	35.9	24.4	19.8	1.5	100.0(131)
3순위	23.8	17.5	30.2	27.0	1.6	100.0(1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2-17〉 지역별 보육시설·유치원 대상 사업 우선순위: 1순위

단위: %(개소)

구분	다문화영유아 프로그램	일반가정 프로그램	다문화 교사연수	가정통신문 번역	기타	계(수)
전체	36.1	34.6	20.3	7.5	1.5	100(133)
권역별						
수도권	26.8	41.5	24.4	7.3	0.0	100(41)
경상권	50.0	22.2	19.4	5.6	2.8	100(36)
전라권	30.0	35.0	20.0	15.0	0.0	100(20)
충청권	33.3	41.7	20.8	4.2	0.0	100(24)
강원/제주	41.7	33.3	8.3	8.3	8.3	100(12)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21.6	37.8	32.4	8.1	0.0	100(37)
도농복합지역	45.1	29.4	21.6	2.0	2.0	100(51)
농어촌지역	37.8	37.8	8.9	13.3	2.2	100(45)

3. 취학아동 관련 사업 실태와 요구

가. 실시하는 사업

1) 실시 프로그램 및 빈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실시한다는 응답이 113개소 66.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미실시 비율은 57개소 33.5%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강원/제주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고, 지역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의 순으로 실시비율이 높아서 농어촌에서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3-1〉 지역별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 실시여부

단위: %(개소)

구분	실시함	실시안함	계(수)	구분	실시함	실시안함	계(수)
전체	66.5	33.5	100(170)	전체	66.5	33.5	100(170)
권역별				지역규모별			
수도권	72.2	27.8	100(54)	도시지역	72.2	27.8	100(54)
경상권	67.4	32.6	100(46)	도농복합지역	68.3	31.7	100(63)
전라권	56.7	43.3	100(30)	농어촌지역	58.5	41.5	100(53)
충청권	60.0	40.0	100(25)				
강원/제주	73.3	26.7	1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3-2〉 초등학생 대상 사업 내용 및 장소

단위: 개

초등대상 사업내용	개설수	사업장소	수
언어발달지원사업	20	교육실	60
학습 지원	20	외부 교육장	17
방학활동(공부방, 캠프 등)	8	이중언어교실	17
방문교육	8	각 가정	13
예체능, 컴퓨터 교실	7	언어지도실	10
다문화 이해 교육	5	초등학교	5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4	연계기관 교육실	2
집단상담	3	야외	2
노는 토요일 지원	3	지역아동센터	1
미술심리치료	2	공부방	1
어린이 경제교육	2		
기타	21(각 1)		

주: 기타는 주말 공부방, 아동센터, 아동양육지원, 가족자원봉사,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자녀지원 동아리 활동, 아동집단프로그램, 정서지원, 바우처문화체험, 가족교육, 세븐와이즈, 우리아이 자아존중감 쑥쑥, 결연후원, 독서치료, 직업찾기 교육, 어린이 사랑방, 엄마랑 자녀랑 문화체험, 가족프로그램 개발 참여, 문화활동,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센터마다 다양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 내용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학습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방학동안 활동, 방문교육, 예체능 컴퓨터 교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이외에 빈도가 2~5인 사업이 다문화 이해 교육,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집단상담, 노는 토요일 지원, 미술심리치료, 어린이 경제교육 등 6가지가 있고, 이외에 주말공부방 등 21개 사업이 센터마다 고유한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소로는 교육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외부 교육

장, 이중언어교실 순으로 나타났다(표 V-3-2 참조).

이러한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 실시 주당 횟수는 주 1~2회인 경우가 7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 1회 미만이 14.6%, 주 5~7회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지역규모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일정한 경향을 찾기 어렵다(표 V-3-3 참조).

〈표 V-3-3〉 지역별 초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실시 횟수

단위: %(개)

구분	주 1회미만	주 1~2회	주 3~4회	주 5~7회	계(수)
전체	14.6	71.5	3.9	10.0	100.0(130)
권역별					
수도권	17.4	78.2	2.2	2.2	100.0(46)
경상권	10.0	73.3	0.0	16.7	100.0(30)
전라권	10.5	68.4	15.8	5.3	100.0(19)
충청권	27.8	61.1	0.0	11.1	100.0(18)
강원/제주	5.9	64.7	5.9	23.5	100.0(17)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11.4	84.1	0.0	4.5	100.0(44)
도농복합지역	15.2	58.7	6.5	19.6	100.0(46)
농어촌지역	17.5	72.5	5.0	5.0	100.0(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표 V-3-4〉 초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1회당 시간

단위: %(개)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수)
전체	16.5	24.1	17.3	42.1	100.0(133)
권역별					
수도권	17.4	19.6	17.4	45.6	100.0(46)
경상권	15.6	34.4	18.8	31.2	100.0(32)
전라권	20.0	25.0	20.0	35.0	100.0(20)
충청권	0.0	5.6	27.8	66.6	100.0(18)
강원/제주	29.4	35.3	0.0	35.3	100.0(17)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13.3	22.2	26.7	37.8	100.0(45)
도농복합지역	23.4	21.3	12.8	42.5	100.0(47)
농어촌지역	12.2	29.3	12.2	46.3	100.0(41)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 1회당 시간은 영유아 프로그램 시간과 마찬가지로 2시

간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1시간 30분 미만이 24.1%, 1시간 30분~2시간 미만이 17.3%, 1시간 미만이 16.5%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권역별, 지역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표 V-3-4 참조).

2) 연계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와 기타 기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른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 여부는 총 170개 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실시되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170개 센터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센터가 53.5%로 91개이었다. 연계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지원이 3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력파견이 31개소, 통·번역 서비스가 10개소이고 사례관리를 연계한다는 센터가 5개소이었다. 지역아동센터와는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응답이 38.2%로 65개소이었다. 연계시 인력파견이 2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프로그램 지원이 22개소이고 7개 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 연계가 5개소이었다.

〈표 V-3-5〉 초등학생 연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기타기관
실시 비율	53.5(91)	38.2(65)	-
실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	20.6(35)	12.9(22)	1.8(3)
인력 파견	18.2(31)	14.7(25)	1.2(2)
통·번역서비스	5.9(10)	4.1(7)	0.6(1)
사례관리	2.9(5)	2.9(5)	-
네트워크구성	0.6(1)	-	-
언어발달지원	-	-	-
중국어 이중언어교실	-	-	0.6(1)
다문화인식개선 강사 파견	-	-	2.4(4)
각국 문화체험수업	-	-	0.6(1)
한국어교육	-	-	0.6(1)
아동양육교육	-	-	0.6(1)
다문화강사양성교육	-	-	1.2(2)
다문화소개단강의	-	-	0.6(1)
기타	5.3(9)	3.5(6)	3.5(6)
계	170	170	1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기타 다른 기관 연계는 전체 23개소로 적은 편이었다. 그 중 기타 의견으로 타 기관과 연결자체를 해 주는 경우가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 파견이 4개소, 프로그램 지원이 3개소, 인력파견과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이 각각 2개소로 나타났다.

4. 중도입국자녀 관련 사업 실태와 요구

1) 사업 및 연계

다음은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사업 및 요구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전국 170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 대상 지원 사업 실시 현황을 보면 간헐적으로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 및 관리만 하는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경우가 29.4%로 나타났다. 정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170개 센터 중 28곳으로 16.5%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 보면, 경상권과 강원/제주권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40.7%, 4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정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라권만 20% 이상이고 나머지 지역은 20% 미만이다. 지역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도농복합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V-4-1〉 지역별 중도입국자녀 대상 지원 사업 실시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정규사업 실시	간헐적 지원, 연계 및 관리	지원하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16.5	50.5	29.4	3.7	100(170)
권역별					
수도권	19.5	53.7	24.4	2.4	100(54)
경상권	14.8	37.0	40.7	7.4	100(46)
전라권	26.3	52.6	15.8	5.3	100(30)
충청권	0.0	66.7	33.3	0.0	100(25)
강원/제주	10.0	50.0	40.0	0.0	100(15)
지역규모별					
도시지역	19.0	54.8	21.4	4.8	100(54)
도농복합지역	16.7	47.6	35.7	0.0	100(63)
농어촌지역	12.0	48.0	32.0	8.0	1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중도입국자녀 정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48개 센터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많지 않고 다수가 일반적 프로그램 운영 시 이들 중도입국 자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소수 센터가 실시하는 사업의 사례로는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고, 중도입국자녀 한국어방문교육을 실시하며, 중도입국자녀만 대상으로 그룹수업을 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표 V-4-2 참조).

〈표 V-4-2〉 중도입국자녀 연계 사업 내용 및 기관

단위: 개소

사업내용	센터 수	연계 기관	센터 수
한국어교육	18	진학 관련 학교(초·중·고)	4
다문화이해교육	6	지역아동센터	4
언어발달지도	6	대안학교(새날학교)	3
멘토링	3	어린이집	3
학습지원	3	자원 봉사자 연결	2
아이돌보미	2	출입국관리소	2
이중언어교육	2	시·군청 등 자치단체	2
가족교육	1	한국 문화공연관람	2
생활적응지원	1	직업 학교	1
방문교육	1	군 위탁 시설	1
상담	1	대학교	1
센터 내 교육참여	1	공부방	1
교육정보제공	1	외국인 노동자 한글 교실	1
공부방	1	청소년 지원 센터	1
유관기관 연계	1	검정고시 학원	1
응답센터 총수	48	사회통합프로그램	1
		어학당	1
		보건소	1
		종교단체	1
		한국다문화센터	1
		여성 일자리 지원 센터	1
		홀트아동복지회	1
		인천시 평생 학습관	1
		자활기관 - 취업교육	1
		한국 심성 개발 연구소	1
		응답센터 총수	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간헐적 지원인 경우 한국어 직접 교육, 방문교육, 학습도우미, 생활적응 안내 교육기관 연계, 학습 멘토링,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사업통화프로그램 안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연계사업을 한다는 경우 연계기관은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어린이집이 빈도가 3 이상이고, 그 이외는 1, 2회 정도로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한다. 이러한 연계기관의 다양성은 중도입국자녀가 처한 상황과 요구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3〉 중도입국자녀 연계 사업 관리 현황

단위: 개소

관리 내용	센터 수
자원봉사자 또는 멘토가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으로 관리	5
센터 내 방문지도사에 의한 정규적인 교육과 관리	4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 상담 및 법률 상담, 진로 상담	3
센터 이용자와 함께 동등한 대우로 관리	2
연계기관에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비스 연결	2
학교 입학 여부 확인, 연결	2
가족관계사항 기록, 관리	2
통번역 제공	1
소그룹 활동 지도	1
가족상담	1
담당 사회복지사가 관리	1
동, 읍사무소를 통한 대상자 파악 및 관리	1
어머니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 독려	1
(총 응답센터 수)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임.

2) 필요한 사업 및 방법

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과 방법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취학아동 대상 지원내용으로는 한국어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언어발달지원, 정서지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영유아 지원 사업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 방법으로는 개별가정방문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 한국어 교육기회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대상 지원내용으로도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습지원, 한국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방법으로도 영유아와 같이 개별 가정방문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또래, 대학생, 담임교사 등과의 멘토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의 답변 순 이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특히 영유아는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여 일반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지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방법상에서 초등학생에 경우 학교 입학 중간단계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아동 전용 기관, 또는 대안학교 설립 요구가 있다.

〈표 V-4-4〉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지원 사업 내용	수	지원방법	수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한국어교육	62	개별가정방문교육	20
언어발달지원	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	11
정서지원	19	한국어교육 기회 제공	10
학습지원	10	학습지도	7
사회적응교육	7	언어발달지원사업	7
소계	117	소계	55
초등학생		초등학생	
한국어교육	66	개별가정방문교육	16
학습 지원	30	멘토링(전문가, 또래, 대학생, 담임교사 등)	14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교육	19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
사회성발달 지원	13	다문화 아동 전용 또는 대안학교 설립	6
정서발달 지원	9	문화체험활동	6
소계	137	소계	52

나) 중고등 학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도입국자녀 사업요구는 중고등 학생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원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생 대상 지원내용 역시 한국어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 및 진로지도, 한국문화·사회 이해교육, 정서지원, 사회적응 및 사회성 발달, 상담지원, 가족관계증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5〉 학령기 재학 중도입국자녀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지원 사업 내용	수	지원방법	수
한국어교육	48	멘토링(대학생, 또래, 전문가)	17
학습 및 진로 지도	29	다문화아동 전담 기관 설립(국제학교, 대안학교)	10
문화 체험 및 이해 교육	24	방문교육	9
정서지원	16	연계(청소년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공부방, 학교, 지역사회)	9
사회(학교)적응 및 사회성 발달	15	전문인력 지원 및 양성(상담가, 한국어강사, 방문지도사, 전담교사)	9
상담지원	12	다문화센터내 한국어교육 지원	8
가족관계 증진	4	사회성 발달 및 적응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9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7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온라인,오프라인)	4
		교육비 지원	3
		방과후 학습지도	3
		이중언어교육	3
		문화체험활동	2
		특성화 입학제도(가산점 부여)	2
		직업교육 및 체험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2
		학교내 한국어 교육	2
		능력평가 시스템구축	2
		다문화청소년센터 설치	1
		학교내 다문화아동 전담반 설치	1
		다문화 아동 관리 시스템 구축	1
소계	148	소계	106

지원방법으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이 전문가, 또래, 대학생, 담임교사 등과의 멘토링이며, 다음이 전담 대안학교 등 전담기관 설립, 개별가정방문교육, 연계, 인력지원, 센터내 한글교육,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의 답변 순이었다. 이외 방과후 학습지원, 교육

비 지원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자와 1:1 멘토를 통하여 지원하자는 안이다. 대학생, 또래, 기관 전문가 등이 1:1로 멘토를 하여 학습, 한국어 등을 배우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일회성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으로 실시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학습자 1:1 멘토링 지원, 대학생 또는 친구(또래)간 멘토링은 연계도 중요하지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하여야... (센터 1)

둘째, 중도입국자녀 전용 전문학교 또는 대안학교를 만들자는 의견이다. 중도입국 자녀가 대부분 한국생활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하기 때문에 일반학교 생활에 많은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중단단계 교육기간이나 또는 국제학교 형태의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이들의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셋째, 방문교육이다. 일반 가정 방문사업 대상에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자는 방안이다. 중도입국자녀들은 개개인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화된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지 센터 등록은 결혼이민자만 가능해요. 실적에도 결혼이민자만 가능하지만, 제한 두지 않고 중도입국자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가 필요하죠. (센터 2)

넷째,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이다. 특히 중고생 이상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또한 지역사회내 관련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연계 기능이 중요하다.

다섯째, 다문화센터내 한국어교육 지원이다. 다문화센터내 사업으로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를 느끼는 센터가 있다면, 이를 사업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동아리 지원 등 사회성 발달 및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방과 후에 집합 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소수이다. 청소년 다문화센터의 운영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중, 고등학교에 직접 다문화 여성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수업을 따라 갈 수도 없고, 언어가 안 되어서 현재 공부방에서 수업 하죠(센터 2).

이외에 직업 체험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중언어 교육, 자국어 강사가 한글을 교육 하도록 해 주지는 것, 수준과 연령 특성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방안, 한국어 능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한 후에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 등이 제시되었고, 다문화청소년센터 설치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학교에서 특별 학급을 만들어서 전반적 학습을 보충해 주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다) 비재학 학령기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도입국 비재학 학령기 아동·청소년(7-17세)의 지원내용으로는 한국어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 취·창업 및 직업 교육, 사회성 발달 지원 등의 순으로 학생 지원과 큰 차이가 없으나 지원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V-4-6〉 비재학 중도입국자녀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지원 사업 내용	수	지원방법	수
한국어교육	37	다문화센터 내 한국어교육 등 지원사업	9
학습 및 취업 등 진로 지도	21	다문화아동 전담학교, 대안학교 설립	8
사회(학교)적응 및 사회성 발달	15	검정고시 준비, 교육비 등 지원	6
문화 체험 및 이해 교육	12	직업교육, 진로지도, 취업센터 설립	6
정서지원	8	연계(학교, 학원, 청소년관련기관)	5
상담지원	5	사회성발달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동이리 및 또래그룹)	5
가족관계 증진	3	다문화아동 전담 인력 양성	4
		방문교육	4
		한국어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온라인, 오프라인)	3
		멘토링(대학생, 또래)	3
		문화체험	3
		상담	2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2
		다문화아동 쉼터 설치	1
소계	101	소계	61

지원방법으로는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접 실시하는 중도입국 중고등학생 지원 활동 필요성이다. 센터 중 중도입국 자녀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 센터를 사업 주체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일반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학습, 정서, 문화적응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제도권학교로의 복귀를 도모한다.

학업 지원으로 검정고시 준비, 교육비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고, 진로 및 취업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외에 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직업교육, 청소년 기술교육과 연계, 동아리 및 또래 그룹 활동 등 사회성발달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방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멘토링, 문화체험도 제시되었다.

5. 정책시사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산만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앙 차원에서의 사업은 언어발달 사업이므로 이외에는 각 사업은 소규모로 실시된다. 영유아들 대상은 언어발달이나 신체발달, 초등학생은 학습지원 등으로 특정사업에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절반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도입국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은 정규사업에 포함하는 센터는 10%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연계도 실시하는 센터는 과반수에 못 미친다. 연계사업은 인력파견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프로그램 지원이며 통번역서비스가 12개 센터에서 연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례관리, 언어발달 지원 연계가 소수이다.

셋째, 아동 연령별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로 우선순위 사업은 영아는 신체 및 건강관리, 정서발달, 언어발달 지원의 순이고, 유아대상 사업별 우선순위는 언어발달 지원,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한국어 교육의 순이다.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 내용은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학습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방학동안 활동(공부방, 캠프 등), 방문교육 순이다. 이처럼 대상에 따라 요구가 약간씩 차이가 나므로 우선순위 설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또 언급되는 것으로 강화 등 개선 요구로 인식된다.

넷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요구는 한국어 교육, 학습지원, 직업교육,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하고 이외의 사업들은 연계 활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아울러 전문기관의 운영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대안학교나 제도권학교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중도입국자녀 전문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다문화청소년센터·다문화청소년쉼터의 운영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VI. 정책방안

1. 기본 고려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으로부터 가족 구성원 모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하며, 특히 자녀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들은 초기 적응기간 이후에는 원만한 부부 및 가족과의 관계 유지와 더불어 자녀를 잘 기르고 공부시켜야 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유아, 초등학생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활성화하고 중도입국자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중도입국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자녀 양육과정에서 애로나 가장 요구가 많은 사업은 아동연령 등 아동 특성 별로 차이가 나므로 각각의 요구에 적절한 인력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지고는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역내 유관 기관들간에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내 다문화가족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2. 자녀 지원 정책방안

다문화가족 영유아기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추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결혼이민자 증가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은 현재는 상당수가 영유아기에 있으나 앞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학령기에 들어가게 된다.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영유아, 초등학생 모두 국내 자녀와 비교하여 인지,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인적자원 지원 측면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강화하여야 한다.

가. 영유아 지원 방안

1) 배경

결혼이민자 증가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은 현재는 상당수가 영유아기에 있다. 영유아기의 발달은 일반 자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기 발달은 이후 발달과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지원 정책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육비 지원, 학습지도, 양육 관련 가족내 갈등 등을 들었고,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 영아는 신체 및 건강관리, 정서발달, 언어발달, 유아대상 사업으로는 언어 발달 지원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한국어 교육의 순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영유아기 자녀 대상 사업을 하는 곳은 영아는 44.1%, 유아 사업 65.9%로 사업을 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이고, 특히 영아 대상 사업 내용을 보면 출산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아이돌보미 등 사실상 부모 지원사업이 다수이고 아동 발달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은 소수이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안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첫째, 영유아 대상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발달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영유아 대상 언어 중심의 발달검사는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언어 이외에 신체, 정서, 사회성 등 아동 전반적 발달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아동의 연령 단계별로 발달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범주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

여야 한다.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로 생각하는 우선순위 사업은 영아는 신체 및 건강관리, 정서발달, 언어발달 지원의 순이고, 유아대상 사업별 우선순위는 언어발달 지원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한국어 교육의 순으로 아동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신체발달 측정, 예방접종 관리, 영양 및 비만 관리와 같은 건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베이비마사지 방법 등 아동 발달 및 건강관련 정보 제공 사업도 영유아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채택한다.

이러한 요구들이 센터와 아동 중심의 파견 방문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은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지도사로는 사회복지사와 전직 교사가 가장 많고, 상담사, 건강가정사, 치료사 등이 많이 활동하는데, 이보다는 아동 관련 전공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지도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연계 프로그램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내용도 인력 파견과 프로그램 제공이 다수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유치원 연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확립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등 사업대상을 넓히고 사업 내용에 내실을 기하여 꾸준히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는 일회성 인력파견이나 프로그램 제공보다는 언어발달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주당 1, 2회 등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다문화가족 아동 언어발달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통신문 번역서비스 등 구체적, 전문적 지원이 되도록 실시한다. 통신문 번역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작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통신문 번역서비스 사례로는 안산시에서 S어린이집에 월 단위 통신문 중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 등 기관 종사자와 일반 아동 및 부모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도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이 포함되도록,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본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센터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연계사업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가족을 지정한 비율이 유사하였다.

셋째, 영유아 대상 「방문 학습지와 학습지 교사파견」을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이외 학원 등 사설기관과 개인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에서는 일반가정에 비해 일관되게 낮았다. 부모들도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의 하나로 학습지도를 들었다. 이러한 교육 수혜의 격차가 취학 후 학력의 차이로 축적되지 않도록 온라인·오프라인 개인교육 이용권을 지급하여 부가적 교육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특히 한글교육도 이러한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0년 사업으로 방문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3~5세아 한글지도를 목적으로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외 일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영유아 학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인지발달사업과 연계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들은 중앙정부가 수용하여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정서 지원」을 돕는다. 이는 다양한 활동 및 문화체험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므로, 다문화가족에게 주도적인 자원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문화체험, 역사탐방,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엄마랑 자녀랑 문화체험, 엄마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북스타트 사업, 엄마와 하는 놀이활동, 엄마나라 알기 활동, 또는 경기도 안성시의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 외국어 교실도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러한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속 가능하다.

나) 기타 사업

다문화가족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자녀 학습력 제고의 수요가 높다.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 과정을 특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중언어 등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맞춤형 개인교육서비스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 지역에 국공립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약 90% 이상의 다문화가족 아동이 비용감면의 혜택을 받아 일반가정의 1/3수준이 평균 보육·교육 비용으로 지불하여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기관비용부담은 낮고 정부비용지원정책 만족도는 높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양육비 지출의 가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4% 정도는 혼자 있다고 하였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10%는 비용 부담을 들었다.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될 예정이지만 국공립시설이 아니고는 부가적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 초등학생 지원 방안

1) 배경

결혼이민자 자녀가 현재는 영유아가 다수이지만 조만간 초등학생 수도 증가할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학원비 마련, 예습·복습 학습지도, 숙제지도이고, 가장 필요한 지원을 기초교과 지도, 학교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한국어, 한글교육, 진학지도 등의 순이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에 혼자 지낸다는 아동이 14.0%이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13%, 학원 13%로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제도권 교육기관이나 사교육 이용 비율은 낮은 편이다. 초등학생 대상 지원 사업 요구는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학습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공부방, 캠프 등 방학동안 활동, 방문교육 순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66.5%만이 초등학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부방에서 자녀숙제 지도 등을 하고 있으나 인적, 물적 여건이 아동이나 부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다. 초등학생 아동 학습은 학년이나 학업성취 정도가 다 다르므로 1:1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부방의 여건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와의 연계사업을 한다는 비율도 낮다.

2) 정책방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중심의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하므로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센터에서 「초등학생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취학연령 자녀들의 경우 1-2학년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국어를 몰라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을 힘들어 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습득이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에서의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상당 부분이 언어

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낮은 언어구사력으로 인한 학습력의 저하를 학교밖 보충수업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보완해가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센터 내에서 실시하거나 방문지도로 한다. 센터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집단교육이 될 것이나, 집단 안에서도 멘토 등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사실상 1:1 집중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초등학생 아동 학습은 학년이나 학업성취 정도가 다 다르므로 1:1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지만 공부방의 여건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어 교육은 센터내 교육이건 방문교육이건 교육 빈도를 확대하는 것과 해당 아동의 현재 역량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학교교육과 차별화된다. 센터내 교육은 주 4~5일 정도, 방문교육은 주 3회 정도로 현재보다는 주당 방문 회수를 늘려서 집중교육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5개월 단위 교육사업은 사업단위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출신국 강사가 출신국 언어로 한글을 교육하는 방법, 이중언어 교육, 수준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방안, 사전 평가 등의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습지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현재는 약 20여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하며 일부에서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초등생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한다. 지방정부 사업으로서는 서울시 마포구, 광주시 남구, 울산시 등에서 2010년 사업으로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이나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물리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공부방 운영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방과 후나 주말에 센터에서 집합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 때에 대학생, 또래, 기관 전문가 등이 1:1로 멘토 역할을 하여 숙제지도 등을 담당하게 한다. 집단교육이면서도 멘토를 통한 개별화 교육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에 의한 기존의 통합형 방과후 지도만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격차를 보완할 수 없으므로, 다문화아동 고유의 비통합 초등방과후 돌봄과 교육에의 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방문사업으로 학습지도사업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초등 방과후

지도사업의 도입으로 이러한 다문화아동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의 요구 중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학습과 숙제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원비 마련이 2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예습·복습의 학습지도 23.2%, 숙제지도 하기 19.8% 등의 순으로 비용 문제와 학습지도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도 기초교과 지도와 학교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이 26~7%로 유사하다.

셋째,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도 방문 학습지와 학습지 교사파견」을 지원한다. 초등학생기 동안의 기초학력 배양은 향후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1:1 학습지도 방법인 교사 파견을 제안한다. 학령기 아동에게는 학습지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파견이 효과적이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와 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취약한 과목을 선택하여 추가로 학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방정부 사업 사례로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찾아가는 다문화 학습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센터가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학동기 아동이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좋을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인적, 물리적 환경이나 여건이 취약하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 등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다문화아동 지원을 연계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해당 아동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다섯째, 멘토와 아동간의 유기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연계 및 관리,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 사업중 멘토 사업을 한다는 센터는 많고, 또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도 많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와 또래, 대학생 등과의 멘토는 일회성 연결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한번 연결된 멘토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센터가 주도하는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 2010년에 약 2억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 멘토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 중도입국자녀 지원 방안

1) 배경

중도입국자녀의 규모는 2015년에는 200,942명, 2020년에는 302,69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하는 중도입국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없고, 무지개 청소년센터에서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일부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소극적 연계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10% 정도만이 중도입국자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중도입국자녀가 일정 수 이상 있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은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안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중고생이거나 비재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중도입국자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도입국자녀는 연령대가 다양한데, 특히 한국어와 학교 청소년의 학업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어 습득이 가장 큰 과제인데 취학연령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 일반학교로 진학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국어를 몰라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을 힘들어 한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센터 내에서 실시하거나 방문지도로 한다. 센터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집단교육이 될 것이나, 집단 안에서도 멘토 등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사실상 1:1 집중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마다 연령대가 다양하고 배경이 다르므로 획일적 집단교육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자녀 방문지도는 일반 부모 대상 방문지도사와는 다른 별도의 중도입국자녀 전담 인력이 담당하도록 한다. 센터에서도 교육 수단으로는 가정방문을 선호한다.

한국어 교육은 센터내 교육이건 방문교육이건 주당 교육 빈도를 늘려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은 출신국 강사가 바람직하고, 사

전 평가를 통한 교육 수준 결정과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 등이 한국어교육 시 동일하게 필요한 요인들이다. 이중언어 교육도 고려 대상이다.

둘째, 학교에 다니는 입국자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학습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학생, 또래, 기관 전문가 등이 1:1로 멘토 역할을 하여 학습, 한국어 등을 배우도록 하자는 방안으로, 센터가 멘토를 적극 추진하고 관리한다. 방과 후나 주말에 센터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이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도입국자녀 중 연령이 많은 경우, 입국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에 다녀도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다.

넷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지원도 주요한 과제이다. 멘토, 또래 동아리 모임 구성, 또래 적응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서 지원,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 스웨덴처럼 권투 등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한 발달 지원 사례도 모형을 될 수 있다.

다섯째, 센터에서 지역내 기관들과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연계사업을 강화한다. 학생들 봉사단체와의 자매결연, 청소년 기술교육과 연계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스포츠 활동 지원도 관련 단체나 기관과의 연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중도입국자녀 지원센터」로 지정, 거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 단위 이상의 센터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중도입국 자녀가 분포하는 센터를 사업주체로 지정하고 중도입국자녀 지원 예산을 배정하여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나) 기타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사업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중도입국자녀가 일정 규모 이상되는 학교 등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특별 학습」을 만들어서 전반적 학습을 보충해 주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학습을 돌보아 주기가 어려우므로 학교가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때 멘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일반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한국문화, 역사를 교육하고 학습, 정서, 문화적응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기적응 및 중도 복귀 프로그램 전문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일부를 지정하여 중도입국 자녀 전문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이외 다문화청소년센터, 다문화청소년 컴퓨터의 배치,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등 한국생활 준비를 마친 후 대안학교나 제도권 학교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통합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제도권 학교에서 소외된 아동의 학습을 돕는 방법의 모형 또한 필요하다. 국제학교 형태의 전문학교가 모형이 된다. 오프라인 이외에 온라인 교육이나 관리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⁴⁴⁾

3. 부모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가. 배경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차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선 자녀양육에서 자녀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 언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외 친인척 인식과 지원, 아버지의 양육 참여 등이 문제가 되고, 이민자, 배우자, 가족을 중심으로 정체성, 자신감, 부모에 대한 인식, 다문화 수용성이 필요하며, 또한 자녀발달요구에 따른 출산, 산후조리, 육아방법, 취원 및 입학 등의 구체적 지원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별 우선순위로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한국어교육 6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육아관련 정보제공이 14.8%,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2, 3순위에서는 육아관련 정보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정서지원과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순이다. 이러한 사업은 대체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녀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성인 대상 지원

44) 제천 간디학교 부설 '학교 너머' 프로그램 참조.

과 자녀의 성장과 학업,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대상의 지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고안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언어교육 지원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성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취업 등을 위한 한국어 습득 지원은 구분하여 구체적 내용을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방안

이러한 기본 방향들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정책 건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내 방문교육, 파견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부모의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의 차이 및 가족이 처한 환경과 요구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사실상 개별 맞춤형교육이 되도록하여, 다문화가족 취약부문 지원이 개별가정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한국어 교육이며, 이 사업의 효과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한국어 교육이 일시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교육내용과 수준, 기간의 측면에서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대상별로 초·중·고급 단계별 세분화된 수준을 갖추고, 이러한 순차적 단계 이수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이수제」 또는 「한국어 포인트 이수제」 또는 「한국어 교육 수료증제」를 도입하여 공인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급수 취득 또는 취업활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제공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자체 「한국어능력인증제」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의 확대가 다문화가족의 지원 수혜율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형 지원프로그램의 마련이며,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이주민대상 언어능력시험(통과) 의무제에 대한 고려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을 언어교육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해지는 부모역할에의 요구를 다문화가족 부모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시키기, 초등학교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 읽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사항 파악, 그리고 담임교사와의 대화 등 학부모로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한국어

교육 등으로 구체화하여 자녀연령 및 발달요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중도입국자녀의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상황과 요구별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육아정보 나눔터 및 놀이그룹(play group) 모임」을 마련하여 어머니들이 영유아자녀와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육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한다. 자녀양육을 하는 다문화 부모들의 또 다른 고충이 영유아기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고립감과 사회적 교류의 단절, 그리고 학동기 자녀에 대한 교육 정보의 부재이므로, 다문화가족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정보 제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또래와 어울리며 건전한 지역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지자체 육아지원센터 또는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안 마련도 바람직하다.

셋째, 가족 지원 강화와 더불어 친구 및 자조 모임 등 인적지원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동시에 이러한 오프라인 교류와 활동이 온라인상으로도 확대되어 접촉 기회가 증가되도록 한다. 앞서 제언한 「다문화 육아정보 나눔터 및 놀이그룹(play group) 모임」이 일정기간과 장소에 국한된 프로그램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교류와 또래와의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자생적으로 발전되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 네트워크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정보포털」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육아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아동 지원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 기능 및 이의 다국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친구 및 자조 모임과 같은 활동도 온라인 상으로 확대되도록 한다.

다섯째, 문화 행사,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및 상호 교류를 돕고 정서지원을 도모한다. 일반 부모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기관 중심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한 부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이 근로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일자리창출프로그램에 다문

화 영역을 확보하거나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련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부모가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의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부모가 지원수혜자의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원서비스 제공자로 순환되어 그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순환프로그램」의 사례 개발을 통해 부모지원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아홉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가족지원 서비스가 다문화가족대상으로도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예비부부교육이나 예비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이 일반가족 외에 다문화가족 대상으로도 특화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서비스 내용과 대상에의 확대가 요구된다.

4. 맺는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의 양육실태와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 기구 및 단체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사업 관련 요구를 조사하여, 다문화가족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양육 세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 수준은 일반 아동 평균에 미달되며,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 부모 역량 부족 등으로 초등학교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습 부진, 또래 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가족 특성상 사교육 기회도 제한적이다. 중도입국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사업은 아동 발달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이외 부수적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단편적 사업 위주로 실시된다. 이보다는 전반적 계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동은 발달단계별로 욕구가 다르므

로 대상 하나하나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은 센터가 재량적으로 실시할 뿐 정부의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데, 해당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므로 구체화된 사업의 마련이 시급하다. 중도입국자녀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 지원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아동 관련 사업은 관련 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의 허브로서 관련 기관을 연계하고 지역 사회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아동 대상 사업 담당 인력은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 상시 인력과 다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부모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육아관련 정보제공,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체로 현재도 추진하는 사업들이지만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자녀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성인 대상 지원과 자녀의 성장과 학업,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대상의 지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대책
-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현황.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95-124.
-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선희(2003). 한국 아동의 인쇄물 개념 습득과 언어 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2008).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정해숙·이미화(200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역량 분석 및 지원방향. 한국교육개발원·여성정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진(20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동기와 읽기이해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가족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나정·박은실(2003).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7(4). 95-11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8). 다문화가족사업 결과보고서
 _____(2009). 다문화가족사업 결과보고서
 _____(2010). 다문화가족사업 결과보고서(내부자료)
- 무지개청소년센터 (2006). 독일의 이주청소년 정책
 _____(2006). 미국의 이주청소년 정책
 _____(2007).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교육
 _____(2009). 스웨덴의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_____(2009). 캐나다의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_____(2009). 호주의 이주·난민청소년 정책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한국아동학회
 지 28(5). 91-108.
- 박성혁·곽한영(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41(2). 97-127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
 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
 도 지자체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_____(2009).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_____(2009). 지자체 2009년 특수보육시책.
 _____(2010). 보육통계 2009.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
 구조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미래인력연구원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설동훈·이혜영·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신유정(2005). 가정의 소득 수준과 교실 문해환경이 아동의 인쇄물 개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조혜영·이수정(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윤자(2008). 여성 결혼이민자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63-77
- 오은순·강창동·진의남·정진웅·김선혜·김수연·박선종·최광락·정원영(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26(2). 147-68.
- 이삼식·최효진·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이선주·민무숙·신현옥·이태정(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성애(2003). 아동의 읽기 태도와 이해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 농촌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 이용승(2003).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승(2004).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비교: 제2부 외국; 호주; 다문화주의 바련과 양질의 노동인력 수입. 민족연구 12. 96-108
- 이재분·강순원·김혜원·이해영·서유미(2008).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강순원·김혜원(2008).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실태 연구-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 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김혜원·오성배(2009).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열(2007).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한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123-144.
- 이종열·황정원·노지영(2008). 세계화와 문화교류;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접근-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행정연구회 하계학술대회 2008. 3. 77-95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2(6)..21-42.
- 이혜경·설동훈·김명아(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도 측정. 법무부.
- 임진숙(2008).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 관계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청구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구정화·이혁규(2009). 다문화가족 학생DB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전혜정(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정지연(2005). 아동의 가정 문해 환경과 인쇄물 개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정대현·김경숙·김현주·채영란·김지예(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비교. 유아교육학회지 19(4). 351-369.
-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 유아교사교육의 방향 모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9-53.
- 한유미 외(2006).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 황현이(2005).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언어능력 및 가정문해환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in Canada and research themes on Canadian multiculturalism 2008-2010

UN Doc. CRC/C/5(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 1(a), of the Convention.

USA-Patriot(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n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2001).

<http://fwr.jinbo.net/>

<http://liveinkorea.mogef.go.kr/>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사이트 '다누리')

<http://premier-ministre.gouv.fr/iminico>

<http://www.bvillage.org/> ('국경없는 마을')

<http://www.cde.ca.gov/sp/me/mt/mess/asp>.

<http://www.childcarecanada.org>

<http://www.cic.gc.ca>

<http://www.immi.gov.au>

<http://www.kosian.or.kr/> ('코시안의 집')

<http://www.rainbowyouth.or.kr/> ('무지개청소년센터')

부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 설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와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양육지원 방안 연구: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및 자녀 대상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문희 연구위원 02-398-7711, suhnh@kicce.re.kr

조혜주 연구원 02-398-7715, thgid@kicce.re.kr

※ 귀하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 름	
성 별	남 () 여 ()
센터이름	
직 위	

1. 현재 영아,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업여부에 v표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구분	사업여부	사업내용	담당자	장소	실시 횟수 및 1회당 시간
영아대상					주 ___ 회, 1회당 ___ 분
					주 ___ 회, 1회당 ___ 분
유아대상					주 ___ 회, 1회당 ___ 분
					주 ___ 회, 1회당 ___ 분
초등학생 대상					주 ___ 회, 1회당 ___ 분
					주 ___ 회, 1회당 ___ 분

2.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있는대로 표시해 주세요

구분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는 사업(복수 응답)			
유치원	① 없음	② 통번역서비스	③ 인력 파견(예시:)	
	④ 프로그램 지원	⑤ 사례관리	⑥기타(무엇:)	
보육시설	① 없음	② 통번역서비스	③ 인력 파견(예시:)	
	④ 프로그램 지원	⑤ 사례관리	⑥기타(무엇:)	
초등학교	① 없음	② 통번역서비스	③ 인력 파견(예시:)	
	④ 프로그램 지원	⑤ 사례관리	⑥기타(무엇:)	
지역아동센터	① 없음	② 통번역서비스	③ 인력 파견(예시:)	
	④ 프로그램 지원	⑤ 사례관리	⑥기타(무엇:)	
기타	적어주세요			

3. 귀 센터에 중도입국자녀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파악한 숫자만 적어주세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미취학 학령기 청소년 (19세 이하)	20세 이상

4.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또는 지원사업이나 연계 및 관리 사례가 있습니까?

- ① 정규 사업 실시 ② 정규 사업은 없으나 간헐적 지원, 연계 및 관리
 ③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음 ④ 기타(무엇:)

5. (중도입국자녀 대한 지원 사업, 연계, 관리 등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지원, 사업, 연계, 관리 등이 무엇인지, 어디하고 연계하는지 등 자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구분	지원, 연계, 관리 내용 등
지원사업	
연계	
관리	
기타	

6.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교육,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나는대로 다 기술해 주세요.

구분	필요한 지원 내용 및 방법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비재학 학령기 아동·청소년 (7-17세)	

7. 귀 센터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혹은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0-66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처 여성가족부
주 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실 다문화가족과
전화: 02) 2075-4500
팩스: 02) 2075-4780
<http://www.mogef.go.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17-01